§ Knowledge & Culture §

Chung, Byung Heo
A viewpoint and direction to see Pansori of Joonggojen

Hong, Tea Han
The Presence of Gutpan as a Way to Express Desires

§ Knowledge & Society §

Min, Woong Ki
The Social Functions of the City Culture Based on Ecological Knowledge

Cha, Sun Jeong
A Study on Writing Education for Core Competencies :
Focused on Liberal education

§ Knowledge & Human Science §

Oh, In Geun • Kim, Dong Ki
Disability and ancillary equipment: Meaning of life

Yon, Yong Ho
Introduction to Formal Concept using Complete Lattices

ISSN 2671-5473

Knowledge & Liberal Arts

지식과 교양 Vol. 3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Knowledge & Liberal Arts

Vol. 3

지식과 교양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지식과 교양

Knowledge and Liberal Arts

통권 제 3호, 2019년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본 학술지는 목원대학교 학술연구지원에 의하여 발행되었음.

차 례

[섹션 1: 지식과 문화]

▌정 병 헌 ▌
"중고제(中古制)" 판소리를 바라보는 관점과 지향 ····· 9

▌홍 태 한 ▌
욕망의 표현으로서 굿판의 존재 ····· 25

[섹션 2: 지식과 사회]

▌민 웅 기 ▌
생태학적 지식에 기반을 둔 도시문화의 사회적 기능 ····· 51

▌차 순 정 ▌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글쓰기 교육 연구: 대학 교양교육과정을 중심으로 ····· 83

[섹션 3: 지식과 인간과학]

▌오 인 근 · 김 동 기 ▌
장애와 보조기기: 삶의 의미 ····· 93

▌연 용 호 ▌
완비격자를 이용한 형식개념의 소개 ····· 125

• 교양교육혁신센터『지식과 교양』논문투고 규정 ····· 141
• 교양교육혁신센터『지식과 교양』논문심사 규정 ····· 152
• 교양교육혁신센터『지식과 교양』연구윤리 규정 ····· 155
• 교양교육혁신센터『지식과 교양』편집위원회 규정 ····· 164

Knowledge & Liberal Arts

VOL 3. 2019

liberal Arts Innovation Center, Mokwon University
DAEJEON, KOREA

TABLE OF CONTENTS

[Section 1: Knowledge & Culture]

▌Chung, Byung-Heon ▌

A Viewpoint and Direction to see Pansori of Joonggoje ····· 9

▌Hong, Tea-Han ▌

The Presence of Gutpan as a Way to Express Desires ····· 25

[Section 2: Knowledge & Society]

▌Min, Woong-Ki ▌

The Social Functions of the City Culture Based on Ecological Knowledge ····· 51

▌Cha, Sun-Jeong ▌

A Study on Writing Education for Core Competencies : Focused on Liberal education ····· 83

[Section 3: Knowledge & Human Science]

▌Oh, In-Geun · Kim, Dong-Ki ▌

Disability and ancillary equipment: Meaning of life ····· 93

▌Yon, Yong-Ho ▌

Introduction to Formal Concept using Complete Lattices ····· 125

중고제(中古制) 판소리를 바라보는 관점과 지향*

정 병 헌**

목차
1. 머리말
2. 실체(實體)로 본 중고제 판소리
3. 속성(屬性)으로서의 중고제 판소리
4. 활동(活動)으로서의 중고제 판소리
5. 중고제의 정체성(正體性) 확립을 위하여

1. 머리말

국립민속박물관이 발간한 『한국민속문화사전』(국립민속박물관, 2013. 11)에서 중고제 판소리를 언급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김창룡, 이동백 등이 불렀던 중고제 〈춘향가〉는 전승이 끊어졌고, 일제강점기에 취입된 유성기 음반에 중고제 〈춘향가〉의 일부가 전하고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B1018548)
** 전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있다.

② 『조선창극사』에는 '만복사 불공 대목'을 공주 출신의 중고제 명창 황호통의 더늠으로 소개하고 있어서 옛날 더늠임을 알 수 있지만, 현대 판소리에서는 대부분 불리지 않는다.

③ 이해조가 중고제 명창으로 알려진 심정순의 창본을 바탕으로 사설을 산정(刪定)하여 매일신보에 연재하고 활자본으로 출판하면서 제목을 〈강상련〉으로 바꾼 것은 〈심청가〉의 구성에서 이 대목('심청 환생')이 가장 특징적이기 때문이다.

④ '토끼욕설' 부분이 염계달의 더늠으로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염계달은 현재 전승되지 않은 중고제의 명창이었으므로 이들 사설을 통해 중고제 〈수궁가〉의 존재와 계보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⑤ 『조선창극사』에 의하면 이 대목('삼고초려')은 김창룡 명창의 더늠이다. 김창룡은 김성옥-김정근-김창룡으로 이어지는 중고제 명창이다. '삼고초려' 대목은 중고제의 전승 경로 속에서 형성되어 내려오다가 20세기에 들어와 '민적벽가'로 불리던 바디에도 수용된 것으로 보인다.

⑥ 이 대목('장판교대전')의 옛 녹음은 이동백, 김창룡, 심정순, 방진관 등 이른바 중고제 명창들의 유성기 음반에서 주로 발견되고 있으며, 정광수 창본에도 '삼고초려'와 '박망파전투', '백하전투' 대목을 이동백의 소리제로 기록하고 있다. '삼고초려'를 녹음한 정정렬 역시 충청도와 인접한 익산 출신이다.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삼고초려'와 '박망파전투', '장판교대전'은 비슷한 시기에 적벽가로 편입되었고, 중고제 혹은 경기 충청 지역의 판소리에서부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⑦ '원조타령'은 민요나 잡가, 단가, 줄고사소리 등 당대 유행하던 가창물의 영향을 받아 19세기 이전 중고제의 전승 경로를 통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⑧ 『조선창극사』에 의하면 이 작품을 잘 부른 명창은 19세기 후반기 중고제 계통의 명창 김정근이었다고 한다.

⑨ 판소리에 깊은 감식안을 가졌던 김택수는 『이선유 오가전집』 서문에서 이선유의 소리를 '거의 당세 독보'라고 일컬을 정도로 높은 평가를 하였다. 또한 범례에서 "본 전집은 오가 전부를 고조(古調)와 중고조(中古調)와 신조(新調) 중 가장 현대 적절한 원문을 수집하였삽"이라 하여 중고제의 의미를 해석하는 근거를 제시한 것은 중요한 학술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⑩ 〈심청가〉로는 정응민바디, 박동실바디, 김연수바디, 김창진바디 등이 전한다. 이 중 정응민바디, 박동실바디는 서편제에 속하고 김창진바디는 중고제에 속한다. 김창진바디는 박동진에게 전수되었다.

⑪ 〈적벽가〉로는 박동실바디, 정응민바디, 유성준바디, 송만갑바디, 김연수바디, 조학진바디 등이 전하는데, 조학진 바디는 중고제에 속한다. 조학진바디는 박동진 등으로 전수되었다.

⑫ (『조선창극사』에서) 중고제에 대해서는 동편제도 아니고 서편제도 아닌 그 중간인데, 비교적 동편제에 가까운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실제에 적용해서 중고제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보기에는 미흡하다. 그래서 '제'에 관한 논의는 동편제와 서편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 그런데 중고제와 호걸제 판소리의 창법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지금까지도 이 둘의 특성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많지 않다. 따라서 중고제와 호걸제는 개념적으로는 독자성을 갖지 못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⑬ '제'는 이제 실존하는 판소리를 분류하는 개념으로서는 유효성을 상실하고 말았다. 그러나 판소리를 동편제, 서편제, 중고제로 나눌 수 있었던 시절에는 '제'가 판소리를 재단하는 중요한 틀이었기 때문에 판소리 이해에 상당한 도움을 주었던 게 틀림없다.

위에 뽑은 항목들은 대체로 『조선창극사』에 기반하여 이루어진 연구 결과를 정리한 것인데, 중고제에 대한 현재의 일반적인 인식을 객관적으로 정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중고제는 판소리의 한 유

파로서 존재했지만, 현재는 그 명맥이 끊겨 역사적 존재로만 남아 있을 뿐이다.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중고제는 그 명칭상 신제(新制)와 구별되는 유파라고 할 수 있지만, 명확하게 그 독자성을 밝힐 수 없다는 점도 대체로 용인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많은 명창들이 경기와 충청을 바탕으로 그 소리제를 이어왔고, 지금도 그러한 흔적들은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한 문화의 성장과 쇠퇴는 그 터전이 되는 지역과의 밀접한 연관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유독 중고제의 존재만이 문제되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 우리는 중고제를 처음 언급하여 기록한 정노식의 식견과 문화 이해를 인정하면서도, 중고제의 개념을 정치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바꾸어 말하면 중고제의 정의를 보다 분명하게 제시함으로써 그 실상을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가장 올바른 정의(定義)는 정의에 의하여 정의하고자 하는 대상을 남김없이 포괄하면서 동시에 정의하고자 하는 대상 외의 것을 남김없이 제외시켜야 한다. 사람을 '걸어 다니는 동물'로 정의한다면, 그 정의를 통하여 걸어 다닐 수 없는 갓난아이가 제외되고, 걸어 다니는 침팬지 등이 인간에 포함되니 올바른 정의가 될 수 없을 것이다. 또는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정의한다면, 생각이 정지(停止)되었다고 할 수 있는 환자가 인간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더구나 사람 이외의 동물들이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확증되지 않았으니 이 또한 올바른 정의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완벽한 진공상태의 정의는 개념적으로만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중고제에 대한 설명이 완벽한 정의가 되기에는 상당히 먼 지점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중고제에 대한 정의의 관점을 다시 정리함으로써 그 논의를 심화시키고자 한다. 이는 정의를 위한 정의가 아니라, 정의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그 대상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함을 인식한 결과이다. 대상에 대한 이해는 그 대상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

보고 정리할 것인가로 귀결된다. 이러한 관점을 우리는 실체(實體)로서의 관점, 속성(屬性)으로서의 관점, 활동(活動)으로서의 관점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1]

2. 실체(實體)로 본 중고제 판소리

실체란 '현실적·구체적으로 존재하는 대상'을 뜻한다. 따라서 "코끼리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살아 있는 코끼리를 제시하고, "사과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사과를 보여주면 그 대답은 충분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중고제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는 중고제라는 구체적 실상을 제시하면서 "이것이 중고제이다."라고 대답하면 되는 것이다.

이처럼 실체를 설명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예시(例示)와 지정(指定)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이의(異意)를 제기할 수 없는 분명한 것으로 예를 들어 보여주고 지정해 주기 때문에 그 대상을 확연하게 드러낼 수 있다는 점이 실체 중심으로 정의를 하는 이유일 것이다.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중고제'는 실제로 전승되어 전하는 구체적인 문화로서의 존재를 의미한다. ③에서 이해조의 〈강상련〉이 '중고제 명창으로 알려진 심정순의 창본을 바탕으로 사설을 산정(刪定)한' 것이라는 점, ⑤에서 '삼고초려' 대목이 김성옥-김정근을 이어받은 중고제 명창 김창룡 명창의 더늠이라는 점, ⑥에서 '장판교대전' 대목이 중고제 명창인 이동백, 김창룡, 심정순, 방진관 등의 유성기 음반에서 주로 발견되고 있다는 점이 바로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증거들은 구체적이며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1) 대상을 정의하는 세 가지 관점은 여기에서 정의하고자 하는 중고제와 마찬가지로 추상적일 수밖에 없는 문학의 정체성을 드러내고자 한 연구를 인용한 것이다. 여기에서 말한 다음의 글은 중고제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문학이라는 것이 설명의 저편에 있다고 해야 할 만큼 거대하고, 또 거대한 만큼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문학을 설명하는 어떠한 노력으로도 문학을 완전하게 다 드러내 보이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김대행 외, 『문학교육원론』(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9-20쪽.

는 점에서 실체적인 정의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정노식의 『조선창극사』나 박황의 『판소리소사』와 같이 역사 기술을 지향할 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실체를 제시하면서 이해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체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또 하나의 방식으로 우리는 정의하고자 하는 대상을 분류(分類)하거나 구분(區分)하는 방식, 그리고 명확하게 대조되는 것과의 비교(比較)나 대조(對照)를 통하여 정의의 대상을 뚜렷하게 부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가령 중고제는 "경기도·충청도 지역에 전승되어 오는 소리제이다. 이에는 두 축이 있는데 순조 때부터 시작하여 김성옥 · 김정근 · 황호통 · 김창룡으로 전해지는 소리제에, 아울러 순조 때의 명창 염계달로부터 고수관·한송학·김석창으로 전해지는 소리제가 있다."는 설명은 대상을 분류하여 이해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동편제 소리는 우조를 많이 쓰고 발성을 무겁게 하고 소리의 꼬리를 짧게 끊고 굵고 웅장한 시김새(소리꾼의 목소리가 매우 예술적으로 세련된 상태)로 짜여 있어 청중에게 시원스러운 맛을 가져다주며, 서편제 소리는 비교적 계면조를 많이 쓰며 발성을 가볍게 하는 데다 소리의 꼬리를 길게 늘이고 정교한 시김새로 짜여 있다. 그런데 중고제는 소리는 동편제에 가까우며 고박한 시김새로 짜여 있다."고 설명하는 것은 비교나 대조를 통하여 중고제의 특성을 드러내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예를 들기, 분류·구분하기, 비교·대조하기 등에 의하여 그 실체를 명확하게 하는 방식은 사실 자체를 분명하게 알게 하고, 또 체계적으로 이해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상을 정의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된다. 그러나 이렇게 알게 된 지식은 살아 있는 판소리를 박제화(剝製化)시켜 이해한다는 점에서 구체적 존재가 아니라 개념만의 이해에 머무른다는 혐(嫌)을 피할 수가 없다. 더구나 비교나 대조, 또는 예시나 지정에 사용된 설명에 대한 의문의 제기가 있을 때, 그 설명은 공허한 결과를 초래하기 쉽다. 김창룡이나 이동백의 유성기 음반 소리를 동편제나 서편제와 비교하여 보아도, 그 명확한 실상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의문은 여전히 해소

되지 않는다. 그들의 소리를 동편제나 서편제를 대표한다고 생각하는 송만갑이나 정정렬 등의 명창들이 차별되는 소리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좌(證左)는 쉽사리 발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⑩이나 ⑪에서 '중고제의 김창진 바디는 박동진에게 전수되었고, 중고제의 조학진 바디가 박동진 등으로 전수되었다'고 하였지만, 정작 박동진은 자신의 소리를 중고제로 표방하지 않았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3. 속성(屬性)으로서의 중고제 판소리

실체를 드러냄으로써 대상의 정의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추상적 대상을 설명함에 있어 일정한 정도 한계를 가진다는 점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속성을 중심으로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될 것이다. 중고제가 가지고 있는 속성은 동편제나 서편제의 소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어서, 그러한 속성을 가진 것이면 '중고제'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각각의 명창이나 구체적인 작품의 대목보다는 중고제가 가지고 있는 본질을 주목한다는 점에서 이는 추상적인 대상을 설명할 수 있게 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속성은 '사물이나 현상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을 가리키므로 '그것이 없이는 그 사상(事象)을 생각할 수 없게 하는 조건'이 된다. 따라서 속성은 중고제와 중고제 아닌 것의 구별을 가능하게 해주며, 중고제의 본질을 드러내 이해하게 해주며, 나아가 중고제가 가지는 의미를 깊이 있게 파악할 수 있게 한다. 그런데 문제는 중고제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있을 것이다.

속성을 설명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그 대상을 가리키는 말의 어원을 설명함으로써 그 근원적 본질을 드러내고자 하는 일이다. "예로부터 시조, 중시조라는 표현을 사용하듯이 고제, 중고제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고제는 아주 오래된 소리, 중고제는 중간 '중'자 옛'고'자를 써

서 중간쯤 오래 된 소리이고, 동편제와 서편제는 신제에 해당하는 소리라고 할 수 있다."거나, "유파로서의 개념은 동편제의 태두, 즉 송흥록 명창이 금강 유역을 떠나 운봉에 자리 잡으면서 시작되었을 것으로 본다. 즉 송흥록이 중고제의 한 법통을 이루고 있던 김성옥의 곁을 떠나 일가를 이루면서 동편제 스타일의 소리가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는 판소리를 집대성한 공로가 있으며, 김성옥이 창시한 진양조를 본격적으로 판소리에 도입해서 부른 최초의 명창이라 할 수 있다. 송흥록이 있고 나서 비로소 그 이전의 소리는 '중고제'나 '고제'가 되어 역사적이면서 동시에 변별성이 가능한 유파적 개념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와 같은 설명은 용어의 어원을 밝힘으로써 그 속성을 드러내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고제를 이렇게 설명함으로써 중고제의 범위와 속성이 드러나고, 그러한 개념이 어떻게 역사적 전환을 이루게 되었는가를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중고제 소리가 동편제나 서편제의 소리보다 다 연원이 깊다는 설명은 여기에서 유래될 수 있었던 것이다.

중고제의 속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그 용어의 어원을 밝히는 방식과 함께 중고제의 요소나 맥락을 분석해 볼 수도 있다. 중고제 "소리의 내두름은 비교적 낮은 음정에서 시작하여 차츰 높은 음정으로 들어 올려 창하는 사람의 성량이 한계점에 달하였을 때에 다시 음정을 낮추어서 부르는 기교"라고 함으로써, 중고제 소리의 창법에 나타나는 요소를 밝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공간적 요소인 경기·충청지역을 중고제 전승의 핵심 맥락으로 설정하게 되면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언어적 특성이나 역사적 성격, 그리고 이에 따라 형성되었을 인성(人性)까지도 중고제의 설명에 관여하게 된다.

이처럼 속성 중심으로 중고제를 정의하게 되면 중고제 판소리의 문화가 지역이나 인간과 긴밀한 연관 속에서 형성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충청도의 언어나 역사 등 문화적 맥락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중고제 판소리를 대함으로써 중고제와 중고제 아닌 것, 같은 중고제

라 하더라도 보다 더 중고제의 본질에 다가간 소리와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별은 그 자체의 내포(內包)를 지극히 좁힐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른바 선택과 배제라는 현상을 초래함으로써 중고제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역동성을 함몰(陷沒)시킬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중고제가 가지고 있는 창법이나 언어 운용의 속성을 하나하나 드러내 보임으로써 전체를 통하여 유지할 수 있는 유기체적 성격을 도외시하고 각각의 속성이라는 부분만을 강조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 결과는 중고제가 도달하거나 추구한 문화적 정점(頂點)보다는 창법이나 언어의 기교에만 매달림으로써 그 생명력을 저해할 수 있을 것이다.

4. 활동(活動)으로서의 중고제 판소리

활동은 '움직임, 즉 행위'를 뜻하지만 단순한 움직임에서 벗어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벌이는 행위'라는 뜻도 함축하고 있다. 따라서 활동의 관점에서 중고제를 바라보면 중고제의 지향하는 의도와 이를 실현하는 방법, 그리고 그에 도달하는 과정의 특성까지도 아우르게 된다. "〈원조타령〉은 민요나 잡가, 단가, 줄고사소리 등 당대 유행하던 가창물의 영향을 받아 19세기 이전 중고제의 전승 경로를 통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거나, "음악적 스타일이 정가와 비슷하며, 담담하고 고졸한 소리로 부르는 것을 중고제라고 한다."는 등의 설명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방법이나 과정까지 설명함으로써 살아 있는 생명체로서의 중고제를 드러내 보이고자 한다.

본래 판소리는 청중과 마주하는 현장의 예술이기 때문에 공간이나 청중의 다름에 관계없이 따박따박 자신이 연마한 소리를 전달하는 사진(寫眞)소리가 아니었다. 흔히 중고제의 소멸을 매번 달리 부르는 명창들의

임기응변성을 제자가 따르기 힘들었기 때문이라고도 하지만, 이는 판소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기 때문에 합당한 설명이라고 할 수 없다. 제자가 선생에게 배우는 기간이란 길어봐야 2,3년을 넘어서지 않았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바탕에 선생의 지침(指針)이 작용할 뿐, 선생의 소리를 사진처럼 받아들이는 것은 그 본질상 허용되지 않았던 것이 판소리인 것이다. 그렇게 되면 중고제 판소리 전승이 계속되지 못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건 그 전승 통로를 왜곡하거나 차단하는 외적인 요인이 있었음을 인식하게 된다. 말하자면 판소리의 생명력을 저해하는 외적 요인이 작용하면 현재의 판소리 또한 얼마든지 도태(淘汰)될 수 있음을 중고제의 성쇠 변화는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중고제를 활동 중심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중고제 문화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요인들에 주목할 수 있게 된다. 농악이나 민요, 무가와 같은 저층 문화의 활성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청중의 적극적인 참여 등이 야말로 중고제가 살아 있음을 드러내게 해주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다. 근래 공연장에서 보여주는 '떼창'의 문화는 바로 공연을 통한 '일체(一體) 되기'와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활동의 관점에서 중고제를 정의하면 중고제가 전수되는 현장을 삶의 중심으로 끌어들이고, 생명력을 부여한다는 의미를 갖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에 머물게 되면 중고제는 기교 등에서 상당한 승화를 이루었다고 평가되는 여타 유파와의 예술적 우열(優劣) 논쟁에 빠져들 수 있다. 활동 중심으로 중고제를 정의하다 보면 방법이나 절차, 또는 자신의 텃밭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 특성 등에 지나치게 매몰(埋沒)되어 판소리 일반이 추구하는 예술성의 심화나 지식의 전승에서 소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른바 창작판소리가 예술적 우열 논쟁에서 자유롭지 못한 현실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청중의 반응과 관계없이 자신의 성취를 드러냄으로써 예술적 자존감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 현재의 판소리의 공연이나 전수 현장이기 때문이다.

5. 중고제의 정체성(正體性) 확립을 위하여

실체 중심으로 중고제를 바라보게 되면, 현실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놓여 있는 동편제나 강산제 명창들의 장벽이 앞에 놓여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중고제의 판소리는 어쩔 수 없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판소리 명창의 문하에 들어가 자신의 다름을 숨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한 문화가 지속된다면 충청·경기라는 지역성과 이것이 초래한 역사성과 언어적 특성, 나아가 인성적 차이는 열성(劣性)의 요소로 계속 남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앞의 실체적 관점에서 언급한 대로 중고제 명창으로서의 위상을 확실하게 보장받고 있는 명창들의 소리가 가지고 있는 실체와 속성, 그리고 활동을 포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한 실체나 속성, 활동은 동질적인 바탕을 이루고 있는 이 지역 명창들이 손쉽게 터득할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하다. 말하자면 자신의 소양과 바탕이 중고제에 가장 적합한 것이라는 자존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현재의 중고제 소리가 가지고 있는 단계를 보다 확연하게 설정하여야 한다. 미래에 활동할 중고제 판소리 명창을 양성하기 위하여 중고제 판소리의 학습 단계를 위계화(位階化)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우리 전통 예술, 특히 판소리의 학습에서 보편적으로 시도되지 않았다. 그래서 초등학생이나 대학생이 같은 선생 앞에서 〈춘향가〉나 〈심청가〉를 목이 터져라 부르는 비인간적 행태가 계속되었던 것이다. 초등학생이 해야 할 소리, 대학생이나 일반인이 수련할 수 있는 소리 등을 차별화함으로써 중고제 판소리 학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평가의 공정성이 이루어질 때, 중고제 판소리는 단순히 지역성을 넘어 판소리 전반에 혁신(革新)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문화 현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포괄적이고 위계성을 지닌 중고제 판소리가 제대로 전수될 때 초

등학생이 부르는 판소리나 명창이 부르는 수준 높은 판소리가 모두 중고제 판소리를 이루는 문화가 되어 전 국민의 소리로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⑬에서 언급한 대로 "판소리를 동편제, 서편제, 중고제로 나눌 수 있었던 시절에는 '제'가 판소리를 재단하는 중요한 틀이었기 때문에 판소리 이해에 상당한 도움을 주었던 게 틀림없다. 그러나 '제'는 이제 실존하는 판소리를 분류하는 개념으로서는 유효성을 상실하고 말았다." 각각의 유파는 자신의 터전이 되는 지역의 기층문화를 기반으로 하여 스스로에게 가장 합당한 방식으로 예술을 발전시킴으로써 우리 문화의 다양성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문화사전』, 국립민속박물관, 2013.

김대행 외, 『문학교육원론』,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배연형, 「판소리 중고제론」, 『판소리연구』 5, 판소리학회, 1994.

서종문・김석배, 「판소리 중고제의 역사적 이해」, 『국어교육연구』 24, 경북대 국어교육학회, 1992.

이보형, 「유파 개념 중고제와 악조 개념 중고제」, 『판소리연구』 23, 판소리학회, 2007.

정노식(정병헌 교주), 『조선창극사』, 태학사, 2015.

정병헌, 「중고제 판소리의 대중화 방안」, 『공연문화연구』 36, 한국공연문화학회, 2018.

최혜진, 「충청지역 중고제 판소리의 역사성과 지역성」, 『판소리연구』 32, 판소리학회, 2011.

국문초록

이 글은 판소리 중고제의 역사적 실체를 밝히기 위한 전제 작업으로, 그 정의를 분명히 하고자 기획되었다. 알려진 대로 중고제는 판소리 발생 초반 그 형성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음에도 그 실체 여부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실체로서의 중고제, 속성으로서의 중고제, 활동으로서의 중고제로 그 정의 영역을 설정하고 보다 깊이 있는 논의의 방향을 설정하고자 한 것이다. 대상에 대한 이해는 그 대상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정리할 것인가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실체로서의 중고제를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제는 다른 유파와의 구체적 차별성을 명확하게 드러내 보이는 것인데, 아직 그러한 작업이 착실하게 이루어졌다고는 할 수 없다. 또한 속성으로서의 중고제를 설명하기 위하여 중고제를 나타나게 한 공간과 시대, 그리고 여기에서 활동한 사람들의 성격까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추상적인 중고제의 설명은 이러한 구체적 작업의 집합에서 찾아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활동으로서의 중고제가 깊이 논의되어야 하는 까닭은 중고제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그 역사가 쌓인다는 점에 있다. 이는 동편제와 서편제의 확립에서도 이미 보아왔던 일이다.

중고제 판소리의 위상 확립을 위하여 중고제로 인식되는 인물과 음악의 구체적 연구 축적, 그리고 중고제 학습의 단계 설정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중고제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역사적 현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주제어 ● 판소리, 중고제, 형성, 정의,

▌Abstract

A viewpoint and direction to see Pansori of Joonggoje

Chung, Byung-Heon

This article was planned to make sure the definition of Joonggoje of Pansori as the prework to reveal the historical truth. Although Joonggoje played a crucial role of its formation at the initial period of Pansori, as known previously, it had been debated continuously on its true nature. In this regard, it was defined as Joonggoje with the true nature, its nature, and its activity, and tried to establish its direction of discussion in detail. Because the understanding on the subject results how the subject are viewed and summarized.

Prerequisite to explain Joonggoje as the true nature is to show the objective differences from other schools clearly, which has not been considered to be realized sincerely. In addition, to explain Joonggoje as the nature, it is necessary to check the space, times to demonstrate Joonggoje,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ose who performed in this area. Because the abstract explanation of Joonggoje can be found in the group of these objective works. The reasons for Joonggoje to be discussed as the activity are to accept it as the reality and to build up the history upon its dynamic activities. These are the cases of Dongpyunje and Seopyunje with their establishments. To build up the position of Joonggoje Pansori, it was suggested to accumulate the objective studies on the characters and music

perceived as Joonggoje and to establish the steps of learning Joonggoje. With these works, Joonggoje will play a role that nobody can replace historically.

Keyword ● Pansori, Joonggoje, formation, school, position

▌논문투고일 : 2019. 04. 17. ▌심사완료일 : 2019. 05. 07 ▌게재확정일 : 2019. 05. 14

욕망의 표현으로서 굿판의 존재*

홍 태 한**

목차
1. 머리말
2. 굿판1 – 가족주의와 저주굿
3. 굿판2 – 혼사굿을 통한 가족의 결성
4. 굿판3 – 축원굿과 비디오굿, 병굿
5. 결론 – 욕망의 표현, 굿의 존재 이유

1. 머리말

서울굿은 지금도 왕성하게 연행된다. 불경기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굿당[1]에 가면 다양한 양태의 서울굿이 연행되고 있다. 대략 한 해 10만 건 이상의 굿이 열린다고 추정한다. 서울 근교의 영업용 굿당이 100여 개

* 이 글은 2016년 한국민속학자대회에서 의뢰받아 발표한 글을 수정한 것이다. 주최측은 굿판의 모습을 논문 형식이 아닌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형식으로 기술해달라고 하여 논문의 틀을 따르지 않고 글쓴이가 생각하는 민속 현장으로 굿판의 나날들의 모습을 사례 중심으로 기술한 글이다. 자칫 굿판이 진지한 학문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흥미와 호기심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저어하지만, 눈밝은 분들은 행간의 의미를 알 것이라고 생각하여 조심스럽지만 글을 전개한다. 깊은 혜량을 부탁드린다.

**전북대학교 무형유산정보연구소 연구교수,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

1) 지금은 일반집에서 굿을 연행할 수 없다. 그래서 서울이나 대도시 근교에서는 굿하는 장소를 빌려주고 사용료를 받는 곳이 있는데 이를 일러 굿당이라고 한다.

라고 가정하고, 각각의 굿당에 굿방이 평균 4개라고 가정한다면 굿방은 400개가 된다. 이 굿당에서 1년에 200여 굿이 열린다고 하면 대력 8만 건 정도의 굿이 열린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개인 신당에서 열리는 굿의 숫자를 더하면 10만 건이 된다고 보는 것이다. 더욱이 불경기로 인해 굿보다 앉은 치성을 찾는 재가집[2]이 많은 것을 감안하면 이 숫자는 더 늘 것이다. 치성[3]은 굿보다 2-3배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 무속인을 찾아 점을 본 이들 중 굿을 하거나 치성을 하는 비율이 대략 10%이내임을 감안하면 서울에서만 한 해 무속인을 찾아 상담하는 재가집의 숫자가 대략 나온다. 추정치보다는 숫자가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정확한 계산은 애당초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굿판은 공개하기보다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글쓴이는 서울굿판을 다니며 여러 무속인들을 대상으로 대략 1500여 건 이상의 굿을 조사했는데, 이 과정에서 거침없이 드러나는 사람들의 욕망을 볼 수 있었다. 개중에는 감추어야 마땅할 욕망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었고, 의도하지 않게 드러난 욕망 때문에 당황하는 경우도 잦았다. 때로는 드러난 욕망을 숨김없이 보여주면서 글쓴이와 담담하게 이야기를 나눈 재가집도 여럿 있었으니, 굿판의 나날들은 참으로 즐거웠다. 많은 이들이 똑같은 굿을 왜 그렇게 자주 보느냐고 묻는데, 굿거리 순서나 짜임, 연행하는 무속인은 같을 수 있겠지만, 굿을 요청한 재가집의 경우는 굿마다 달랐고, 동일한 재가집이라고 하더라도 굿의 목적이 다르다보니 드러내는 욕망 또한 매우 달랐다. 사람들의 은밀한 욕망이 드러나는 굿판의 모습은 재가집만큼이나 다양하여 그들의 욕망을 살피는 과정은 참으로 흥미진진했다.

이 과정에서 여러 번 굿판에서 만나 친밀해진 재가집도 여럿 있다.

---

2) 서울굿판에서 굿을 의뢰한 신도를 재가집이라 한다.

3) 굿은 무속인 여러 명이 악사와 결합하여 연행하는 굿이다. 치성은 무속인 혼자서 앉아서 기원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는 약식 무속의례이다.

그 중에는 사회 지도층 인사도 있고, 저명한 이들이 가족도 있었다. 굿을 보는 과정에서 그들의 내밀한 가족사를 알게 되어 약간은 당황한 경우도 있었지만, 신기하게도 그들은 개인사를 글쓴이가 아는 것 자체에 거부감을 보인 경우는 많지 않았다. 굿판에 오는 순간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감추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드러내려 했다. 그래서 굿이 끝나게 되면 술잔을 함께 기울이며 굿 이야기, 인생 이야기, 세상 이야기를 나눈 재가집도 많았다. 굿판에서 서로 입장이 다른 채 만났지만, 같은 공간에서 굿을 통해 소통했다고나 할까. 이러한 소통은 굿의 속살을 이해하는 좋은 방편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모든 재가집이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의심하는 눈초리로 글쓴이의 모든 장비를 치울 것을 요청하기도 했고, 어떤 경우는 아예 굿판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다. 무속인과 아무리 친하다고 하더라도, 재가집이 싫다고 하면 굿판을 떠나는 것이 불문율. 그래서 글쓴이는 대략 10번에 1-2번은 굿판에 갔다가 돌아와야만 했다. 놓친 물고기가 더 크다더니, 참관도 못하고 쫓겨난 굿판의 실상이 더더욱 궁금했지만, 굿 끝난 후 무속인을 만나 묻게 되면 그들은 이미 끝난 굿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으려 했다. 어쩌면 재가집은 굿을 하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굿판에 드러난 자신의 욕망이 부끄러웠던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욕망을 거침없이 드러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 욕망의 솔직함에 자신들도 계면쩍었을 것이리라.

그래서 글쓴이는 그동안 만난 무속인들이 얼마나 난감했을까 생각하니 굿을 보러 다닌 게 정말 행운이었지만, 무속인들을 괴롭힌 것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재가집이 다 나간 굿청에서 1시간 이상 바리공주 무가를 부르는 무속인 앞에 녹음기를 켜고 덩그러니 혼자 앉은 글쓴이가, 무속인은 얼마나 야속했을까[4]. 캠코더나 카메라를 들고 와 굿을 조사하는 글쓴

4) 서울 망자천도굿인 진오기굿에서는 장편 무속신화인 바리공주 무가를 무당이 혼자 1시간 이상 구송한다. 다른 무속인들과 악사, 재가집은 굿청 밖에서 쉬고 있어 바리공주 무가를 부르는 무당도 구송을 빨리 마치려 한다. 그런데 글쓴이가 녹음기를 놓고 앞에 앉아 있으니 진땀을 흘리면서 제대로 바리공주 무가를 부른 **무속인의 심정**

이에게 그동안의 정리로 차마 나가라는 말은 못하고, 굿을 연행하면서 무속인들은 또 얼마나 영상기기를 의식했을까. 이제는 영상기기가 있어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굿을 연행하라고 글쓴이가 말하기도 하고, 무속인들 중에서는 글쓴이의 처지와 입장을 잘 알아 영상기기가 없는 듯이 굿을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부담을 느꼈을 무속인들에게 글쓴이야 말로 수비 영산[5]이 아니었을까. 굿판에 갈수록 점점 카메라를 꺼내기 어려운 것은 글쓴이의 양심의 발로일까, 아니면 내부자의 시선으로 동업자 의식을 가졌기 때문일까.

오늘 이 글에서 전달하려고 하는 사례 몇 가지는 이처럼 어려운 조건 속에서 글쓴이가 보았던 굿중에서, 인간의 욕망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애써 골라낸 사례들이다. 글쓴이가 고른 사례들은 학술적 가치가 높다거나, 굿의 짜임새가 옹골지게 차지거나, 굿을 연행하는 무속인들의 기량이 뛰어난 것은 아니다. 단지 인간 욕망이 얼마나 적나라하게 굿판에 드러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이를 통해 굿판이 지금까지도 존속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지만, 그 또한 헛된 기대일 수도 있겠다.

2. 굿판1 – 가족주의와 저주굿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는 굿당이 여럿 있다. 산신당, 산제당, 천제당, 천신당 등이 오랫동안 성업 중인데 이 중에서 천신당은 정릉 지역 굿당 중 규모나 찾는 무당의 숫자로 볼 때 대표적인 굿당이다. 지금은 내부순환도로가 바로 옆을 지나고 있고, 북악터널을 나오면 바로 옆에 있어 접근성이 좋지만, 초창기는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었다. 글쓴이는 이곳에서 굿을 여러 차례 보았다. 서울을 대표하는 무속인들을 주로 만난 곳이 이

을 이제야 헤아려보는 것이다.

5) 수비와 영산은 굿판 마지막에 들어오는 잡귀 잡신으로 물리쳐야 하는 존재이다.

곳이다.

굿은 가족의 평안을 위해, 자신이 바라는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행한다. 문제는 자신이 바라는 소망의 내용일 것이다. 자신이 바라는 소망이 부정적인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남을 해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목적은 '결국 자기가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중심에 가족주의가 있다. 대부분의 재가집들은 자신의 가족을 위해 굿을 한다. 서울굿에서 〈조상거리〉가 의미 있는 굿거리가 된 것도 이러한 가족주의의 반영 때문이다.

그런데 가족을 위한 굿판에서, 가족의 해체 내지는 확산을 보는 경우가 여러 차례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대부분은 재가집으로 온 사람들의 부적절한 인간관계 때문이다. 부적절한 인간관계라고 하지만, 재가집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적절한 인간관계이니, 굿을 보면서 그들의 인간관계에 시비를 걸 수는 없는 법이었다.

한 가지 사례는 사업가가 사업이 잘되라고 기원하는 재수굿[6]이다. 글쓴이가 굿판에 들어갔을 때 재가집은 단 두 사람이었다. 한 명의 남자와 여자였는데,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상당했다. 그래서 부녀지간이라고 생각했다. 부녀가 가족의 평안을 위해 굿을 하러 왔으니 얼마나 보기 좋은 모습이랴. 그런데 굿이 시작되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대단히 모호한 관계임이, 좀 더 굿이 진행되자 두 사람이 내연의 관계임이 드러났다. 그것도 젊은 여자는 나이 든 남자의 3,4번째 여자였다. 두 사람은 굿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가벼운 애정행각을 드러냈는데, 그것은 이 글의 흐름과는 관계가 없으니 기술은 하지 않는다. 글쓴이는 〈조상거리〉에 각별한 관심이 생겼다. 여러 선대 조상들이 들어오는 〈조상거리〉에는, 재가집이 들려준 이야기를 바탕으로 할 때 재가집을 매우 아낀 할머니 혼령이 들어올 텐데, 조상들은 내연의 관계인 이들에게 어떤 말을 할 것인가 궁금한 것이었다. 〈조상거리〉 앞서 진행된 〈불사거리[7]〉, 〈산거리[8]〉 등에서 무당

6) 산 사람들이 재수가 좋으라고 하는 굿으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다.

은 부부 간에 금슬이 좋을 것이라고 공수를 주었고, 부부 간에 금전 운이 있어 사업이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물론 이때 말하는 부부는 오늘 오지 않은 남자 재가집의 정식 부인을 지칭한다. 따라서 〈조상거리〉에 들어온 할머니 혼령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가 궁금했다.

〈조상거리〉가 시작되었다. 여러 선대 조상들이 들어와 재가집에게 공수를 주고는 나갔다. 드디어 할머니 혼령이 들어와 공수를 주기 시작했다. 부부 간에 금슬이 좋을 것이라는 말, 앞으로 사업이 번창할 것이라는 의례적인 말이 이어진 후, 무당은 옆에 따라온 젊은 처자를 바라보았다. 좀 전까지 부부간 금슬이 좋을 것이라고 말한 무당은, 일순 멈칫했지만 공수를 이어나갔다. 그래 네 팔자가 나쁘지는 않구나, 전생에 인연이 있어 이리 만났으니 앞으로 좋은 일이 있도록 인연 잘 지으라는 공수였다.

그 순간 공수를 준 이는 무당인데, 그 공수는 무당의 말 즉 인간의 말이었을까, 아니면 들어온 조상의 말 즉 신령의 말이었을까 글쓴이는 아직도 모른다. 다만 가족주의가 해체된 굿판에서 놀랍게도 가족주의의 확산을 가져온 이 말로 인해 굿판의 분위기가 일순 부드러워진 것은 사실이다. 두 사람은 웃으면서 공수를 들었고, 신명이 난 재가집은 별비를 제법 많이 썼고, 〈대감거리[9]〉가 끝난 후 남은 굿거리는 무당에게 일임한 후 굿청을 떠났다. 재가집의 욕망이 거침없이 굿판에 드러났지만, 그 욕망은 외면당하지 않고 인정되면서 굿이 끝났다. 이는 욕망을 드러내는 굿판이어서 가능했다고 본다. 그리고 그 욕망을 기꺼이 받아준 서울 무속인의 포용력 또한 신을 모시는 사제답다고 생각했다.

또 한 가지 사례도 흡사하다. 이번 굿판의 재가집은 여자이다. 굿청에 갔을 때 굿은 한창 진행되고 있었는데, 굿청 밖에는 양복을 잘 차려입은 젊은 남자가 들어가지 않고 서있었다. 굿판이야 구경꾼이 넘치는 곳이

7) 서울굿거리의 하나로 천신 계통의 여러 신령들을 불러 모셔 복을 청하는 거리이다.
8) 서울굿거리의 하나로 산신, 부군신, 도당신 등 여러 지역신령들을 불러 모셔 복을 청하는 거리이다.
9) 서울굿거리의 하나로 대감신령을 청해 재물과 복을 달라고 청하는 굿거리이다.

니 글쓴이는 아무 생각 없이 그 남자를 지나 굿청으로 들어갔다. 이날 굿 역시 재수굿이었는데, 남편은 사업 관계로 외국 출장을 가는 바람에 부인 혼자 굿청에 와있었다. 굿의 속도가 조금 빠른 느낌을 주었는데 알고 보니, 굿이 끝나자마자 부인은 공항으로 남편 마중을 나가기로 되어 있었다. 여러 굿거리가 진행되면서 일반적인 공수가 내렸다. 가족 화목, 건강할 것이라는 것, 사업 잘 될 것이라는 것 등의 공수가 내렸다. 문제는 〈대감거리〉 텃대감[10]을 노는 데서 생겼다. 텃대감을 놀던 무녀는 재가집에게, 멈칫 멈칫하더니 그런데 인간은 정리하라는 말을 했다. 인간을 정리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그러자 재가집은 고개를 주억거리며 그런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인간을 정리해야 사업이 잘되고 무탈할 것이라는 공수가 계속 내리자, 재가집은 마지못해 그리 한다고 답을 했다. 〈대감거리〉가 끝나자 재가집은 굿청 밖으로 나가 기다리고 있던 젊은 남자를 굿당 한쪽으로 끌고 가 여러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궁금한 글쓴이에게 무당들은 밖에 기다리던 남자가 재가집의 젊은 애인임을 알려주었다. 사업차 외국 나간 남편을 공항으로 마중 갈 여자가 굿을 하러 오면서 젊은 애인을 데리고 왔다고 한탄했다. 남편의 성공을 비는 굿판에 정인을 데리고 왔으니, 무당들이 당황하는 것은 당연했다. 문제는 재가집이 여기에 대해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는 것, 굿판에 데리고 오면서도 당당했다는 것이다. 이는 가족주의를 지키는 것인가, 가족주의의 해체인가 글쓴이는 한동안 혼란스러웠다. 그러면서 서울굿판이 욕망의 직접적인 표현이 가능한 곳임을 다시 한 번 느꼈다.

여기 한 장의 공개할 수 없는 사진이 있다. 성글게 만들었지만 사람의 형상을 한 제웅, 허수아비를 촬영한 사진이다. 십자가 모양의 나무에 옷을 걸쳐 사람의 형상을 한 후 온 몸에 붉은 색 글자를 적었다. 글자의 내

10) 텃대감은 대감거리에 들어오는 대감 신령의 하나로 터, 지신의 하나로 복을 주는 집터를 관장하는 신령이다.

용은 '○○○ 죽어라, 차에 치어 죽어라, 떨어져 죽어라.'는 무시무시한 문구이다. 이 사진은 엉겁결에 경기도 안산 모 굿당에서 찍은 것이다. 굿당에서 찍었으니 굿 조사를 가 찍은 것인데 엉겁결에 찍은 것은 또 무슨 말인가. 사연은 이러하다.

저녁 무렵 글쓴이는 오랫동안 만나고 있는 악사의 전화를 받아 안산 굿당으로 굿을 조사하러 갔다. 그런데 굿당에 도착하니 악사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일은 좀체 없는 일로 글쓴이는 그날 굿이 예사롭지 않은 굿판임을 직감했다. 악사는 재가집이 촬영을 금지했으니 촬영장비는 모두 차에 두고 오라고 했다. 처음부터 알았다면 글쓴이를 굿판에 부르지 않았을 것인데, 글쓴이에게 오라고 연락을 한 후 글쓴이가 굿당에 도착할 무렵에야 촬영을 할 수 없고 외부인은 들이지 않겠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 다행히 이날 굿을 연행한 무당들은 글쓴이가 오랫동안 만나고 있는 이들이어서, 이들도 글쓴이가 왔으니 굿은 보게 하자라고 동의했다고 한다. 장비를 차에 두러가던 글쓴이는 그때 굿방 밖에 서있던 허수아비 모양의 물건을 보았고 가까이 가서 실체를 확인하자마자 급하게 사진을 찍었다. 이는 누군가를 해코지 하려하는 저주굿의 신물이었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죽으라고 하는 저주굿이 21세기 경기도에서 열리고 있는 것이다. 영화나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보았던 저주의 현장에 글쓴이가 참석하게 된 것이다.

잠시 후 모든 장비를 두고 굿청에 들어간 글쓴이는, 놀라울 정도의 미모를 가진 젊은 재가집을 만난다. 지금 얼굴은 거의 잊었지만 불타오르던 눈빛은 지워지지 않는다. 재가집은 들어서는 글쓴이가 누구냐고 물었고, 악사는 미리 준비한 대답, 제금[11]치는 것을 도와주러 온 무속인이라고 했다. 의심의 눈을 거두지 않은 재가집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라도 글쓴이는 제금을 열심히 쳐야 했고, 다행스럽게도 재가집은 곧 굿에 몰두하면서 글쓴이의 존재를 잊게 되었다.

11) 서울굿판의 악기의 하나. 심벌즈 모양으로 생긴 것으로 바라라고도 한다.

굿이 진행되면서 글쓴이는 저주굿의 실체를 알게 되었다. 이날 굿은 내연의 관계를 가진 여인이 내연남의 본부인이 죽으라고 하는 굿이었다. 저주라는 것이 사극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알았던 글쓴이는, 실제 저주굿이 연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그러면서도 일체의 기록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느꼈다. 모든 굿거리의 공수는 걱정하지 마라, 네 소원 이뤄진다, 백년해로한다는 식이었다. 그러다가 〈대감거리〉 연행 후 밖에 세워 둔 허수아비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다. 빠른 장단에 맞춰 춤을 추던 재가집은 허수아비 위에 걸터앉아 칼을 들고 '아무개 죽어 죽어.'하면서 허수아비를 찌르기 시작했다. 저주의 현장을 글쓴이는 본 것이다. 한참을 그러던 재가집은 허수아비를 문밖으로 던져버렸다. 그러면서 굿이 끝났는데 재가집은 만족한 얼굴로 돌아갔다.

굿이 끝난 후 글쓴이는 무당들에게 이런 식의 굿을 하게 된 연유를 책망과 함께 물었다. 그러자 무당들은 자신들이 하지 않으면 저이는 더 큰 일을 꾸밀 것이라면서 할 수 없이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서를 붙이길, 본부인이 첩 떨어지는 굿을 하면 효과가 있는데, 첩이 본부인 떨어지라고 굿을 하면 효과가 없으니 걱정마라고 했다. 가족주의의 해체를 꿈꾸는 이를 위한 굿을 하면서도, 가족은 지켜질 것이라고 애써 위안하는 굿판의 모습. 자신의 욕망을 숨김없이 드러내어 반드시 이루겠다고 다짐하는 굿판의 모습. 이게 굿판의 나날들이다.

글쓴이는 이날 찍은 사진을 인형 연행을 연구하는 허용호 선생12)께 보냈다. 허용호 선생은 이 사진을 어떻게 이용할지 궁금하다. 아직 이 사진을 활용한 연구 성과물이 나오지 않았으니, 인형의 저주가 그렇게 했을까. 굿을 한 후 그 재가집은 소원을 이루었는지 궁금하여, 다시 그날 굿을 한 무당들을 만나 후일담을 물었지만 답은 듣지 못했다. 재가집의 소원이

12) 허용호 선생은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교수이다. 그이의 학위 논문이 『전통연행예술과 인형오브제』 이다. 그래서 그는 인형 관련 모든 자료를 모으고 있다.

이루어졌다면 무서운 일이니 감출 것이고,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능력 없는 무당이라고 자인하는 형국이니 감출 것이라고 글쓴이는 생각한다. 욕망의 표출에 초점을 맞추어 굿을 해준 그 자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무속인들의 입장을 헤아리면서, 지금도 이런 식의 굿이 여러 곳에서 연행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3. 굿판2 – 혼사굿을 통한 가족의 결성

굿중에서 가장 가슴 아픈 굿은 혼사굿이다. 사혼굿이라고도 하는 혼사굿은 글자 그대로 혼인을 하는 굿이다. 산 자들의 혼인식은 예식장에서 하고 있으므로, 혼사굿은 죽은 자들의 혼인굿이다. 혼인도 하지 못하고 죽은 자식을 위해 올리는 눈물의 잔치굿이다.

혼사굿은 혼인하지 못하고 죽은 젊은 남자나 여자의 가족이 자식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무당에게 의뢰하면서 준비가 시작된다. 무당은 의뢰받은 망자에게 어울릴 만한 배필을 찾는데, 산 자들처럼 궁합을 보기도 하지만 일반적이지는 않다. 망자와 짝이 될 다른 망자의 죽을 때 나이와 죽음의 동기 등을 살펴 맞춤한 상대를 구한다. 맞춤한 짝이 있으면 그쪽 부모에게 조심스럽게 사연을 전달하여 동의를 받는다. 동의가 되면 전통혼례의 순서를 따라, 사주 주고받기, 함팔기 등을 진행하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고 곧장 혼사굿을 거행할 굿당을 정한다. 굿당이 곧 혼인식장이 되는 것이다. 혼사굿이라고 하여 특별한 굿거리로 구성되는 것은 아니다. 서울에서는 망자천도굿을 진오기굿이라고 하는데 진오기굿의 일반적인 흐름에 혼사굿거리를 추가하는 식으로 굿을 진행한다.

과거 서울굿판에서는 혼사굿을 매우 꺼림칙하게 생각했다. 그래서 강남이 개발되기 이전에는 지금의 봉은사 근처에 있는 굿당인 '화주당'에 가서 혼사굿을 거행했다. 혼사굿을 거행한 후 곧장 뒤도 안돌아보고 강을

건너왔는데 그러면 귀신이 물을 건너지 못해 따라오지 않아 안심했다고 한다. 화주당에는 그동안 혼사굿을 거행하면서 사용한 신랑 신부의 사진이 여럿 있었다고 한다. 맞춤한 배필을 구했으면 정상적으로 혼사굿이 이루어지겠지만, 맞춤한 배필을 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화주당에 있는 사진 중에서 적당한 것을 골라 배필감으로 활용했다고 한다. 그래서 화주당에 있는 어떤 영혼들은 죽은 다음이지만 혼인식을 여러 차례 하기도 했다고 구대인[13]들은 전언한다.

일반적인 서울진오기굿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굿판을 정화하고 부정한 것 물리기 : 1)주당물림[14] 2)부정청배 3)가망청배[15] 4)진작[16]

나. 이승의 여러 신령 청하여 산 자들의 복을 빌기 : 4)불사거리 5)산거리 6)조상거리 7)대안주거리[17] 8)성주거리 9)창부거리[18]

다. 망자가 이승에서 떠나 저승으로 가기 : 10)뜬대왕거리 11)사재삼성거리[19] 12)말미 13)도령돌기[20] 14)베가르기 15)상식[21] 16)시왕

13) 서울굿판에서 무속에 종사한 지 오래된 무속인들을 부르는 명칭이다.
14) 주당살은 물리쳐야 할 나쁜 살로 이를 물리는 굿거리이다.
15) 부정청배는 부정한 것을 물리는 굿거리이고 가망청배는 굿판에 여러 신령을 청해 들이는 거리이다.
16) 진작은 굿판에 모신 여러 신령에게 인사를 드리는 굿거리이다.
17) 장군, 별상, 신장, 대감 등 여러 인물신에게 복을 비는 거리이다. 큰 안주를 바치는 중심거리라고 하여 대안주거리라 한다.
18) 집안의 여러 신령을 모시는 거리가 성주거리이고 액을 막는 창부신령을 모시는 거리가 창부거리이다.
19) 뜬대왕거리는 저승의 십대왕을 모시는 거리이고 사재삼성은 망자의 혼령을 저승으로 인도하는 저승사자를 모시는 거리이다.
20) 말미는 망자를 저승으로 인도하는 바리공주 일대기를 구송하는, 장편 서사무가를 부르는 거리이다. 도령돌기는 바리공주를 따라 **망자가 저승으로 가는 과정을 춤으로 보여주는 거리이다.**
21) 베가르기는 저승길을 상징하는 삼베천과 무명천을 몸으로 갈라 망자가 저승으로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리이고, 상식은 저승으로 떠나 비로소 조상신이 된 망자에게 올리는 첫 제사이다.

군웅거리[22]

라. 굿의 마무리 : 17)뒷전[23]

이승의 여러 신령을 청하는 거리가 끝난 후 망자가 저승으로 떠나가는 여러 거리가 이어지는데 이 중간에 혼인거리를 진행한다. 혼인거리는 전통혼인식을 그대로 재현한다. 신랑과 신부는 죽고 없으니 이를 대신할 인형을 준비한다. 과거에는 짚으로 인형을 만들었으나 지금은 만들어서 팔고 있는 신랑 신부 인형을 사용한다. 주례를 맡은 이가 신랑 신부 입장이라 외치면 인형을 든 두 무당이 굿청이자 혼례청인 예식장으로 들어온다. 신랑과 신부가 맞절이라고 외치면 인형을 들어 앞으로 숙여 인사를 시킨다. 합환주를 마시게 한다면서 술잔을 신랑 인형 입에 대었다가, 신부 인형에게 옮겨 역시 입에 댄다. 미리 준비한 목걸이, 반지, 시계 등도 인형에 걸쳐준다. 목걸이와 반지, 시계는 혼사굿 용으로 제작하여 판매하는 것을 사용한다. 국수를 나눠 먹는 시늉을 하기도 한다. 뒤이어 폐백 드리기가 이어진다. 신랑의 부모, 신랑의 형제 등이 차례로 나와 폐백을 받는다. 신랑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밤과 대추를 신부 인형에게 던져주며 저승에서나마 아들 딸 많이 낳고 잘 살라고 기원해준다. 이 과정을 보는 모든 이들이 울고, 촬영하면서 조사하는 글쓴이도 운다.

자식이 죽으면 부모 가슴에 묻는다는 옛말이 진실임을 아는 때이다. 죽은 자식이지만, 그 자식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부모는 혼사 굿을 열고 눈물과 슬픔 속에 혼인식을 거행하는 것이다. 혼사굿거리가 끝나면 신랑과 신부 인형은 미리 준비한 신방에 모셔 비단 이불을 덮어준다. 첫날밤 잘 보내라고 덕담을 하고 소등한 후 모두 밖으로 나온다. 그리고 눈물의 잔치가 이어진다. 혼인식에 참석한 이들은 미리 준비한 음식을 나눠먹으

22) 시왕군웅거리는 저승의 여러 신령이 굿판에 들어왔기에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부정을 가시기 위해 시왕군웅신령을 청하는 거리이다.

23) 뒷전은 잡귀 잡신을 불러 대접하는 굿판의 마지막 거리이다.

며 서로를 위로한다. 자식을 잃었다는 공통의 아픔을 가진 신랑과 신부 부모는 서로를 위해주고, 보듬어 준다. 비록 살아있는 사위와 살아있는 며느리를 맞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어엿하게 사돈지간이 된 두 부모는 이후 오랫동안 사돈의 예를 지켜가며 왕래한다. 자식을 가슴에 묻은 두 부모는 서로를 만나면서 아픔을 헤아리고 의지하면서 그 고통의 시간을 감내하면서 넘어가는 것이다.

잔치 음식을 나눠 먹은 후 다시 본격적인 굿이 이어진다. 신방의 신랑과 신부는 기척이 없고 망자는 저승으로 떠나간다. 일련의 과정을 거쳐 바리공주를 따라 마침내 망자는 저승으로 가서 조상신이 되었다. 첫 제사인 상식을 올리면서 망자가 무사히 극락왕생했음을 느낀다. 그제야 신방의 인형을 이불째 싸가지고 나와 땅에 묻거나 불에 태운다. 살아서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두 사람이지만 이제 부부가 되었으니 이들의 인연이야말로 죽음을 넘어선 것이다.

글쓴이가 조사한 혼사굿은 그렇게 많지 않다. 굿을 보러갔다가 문전박대를 당하고 돌아온 굿의 대부분이 혼사굿이었다. 허용호 선생과 혼사굿을 보러 갔다가, 재가집이 모 대학 교수여서 밥만 먹고 굿은 보지도 못하고 돌아온 적도 있다. 다 같이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인데 한 쪽은 굿을 하러 왔고 한 쪽은 굿을 조사하러 왔으니 재가집 입장에서는 참으로 난감했을 것이다. 동생의 아픈 죽음을 위로하기 위해 준비한 혼사굿에 청하지도 않은 이들이 왔으니, 그리고 잔치임에는 틀림없지만 눈물의 잔치여서 날것 그대로 보여줄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충분히 이해했다. 그래도 미안했는지 준비한 식사는 대접해주었다. 혼인식은 보지도 못하고 식사 대접은 받았으니 잔치에 참석은 한 셈이다.

이십대 초반에 죽은 친구 혼사굿에 찾아온 젊은 친구들을 여럿 만난 적도 있다. 가족들보다 더 슬퍼하는 것이 친구들이어서, 가족들은 '그래도 그 아이가 사회생활은 잘했구나.'라면서 안도했다. 사진 속의 신부는 참으로 싱그럽고 예쁜 얼굴이었다. 신랑도 미남은 아니지만 준수한 편이

었는데, 신부의 친구들이 신랑이 못생겼다고 타박을 했고, 그러자 신랑 쪽에서 자기네 아들이 뭐가 못생겼냐고 응대하면서 작은 실랑이가 일기도 했다. 혼사굿거리가 시작되자, 갑자기 무당은 글쓴이에게 주례를 서 줄 것을 부탁하였다. 주례를 서 본 적인 한 번도 없는데 황망했지만 진행을 해야 했다. 전통 혼인식 순서에 맞춰 식을 진행하였고, 신랑과 신부 맞절을 시킨 후 예물 교환도 시켰다. 그리고 덕담을 한 마디 하라는데 그만 울컥해서 잘 살아라는 말만 겨우 했다. 글쓴이의 딸보다 더 어린 영혼들의 잘생긴 얼굴의 사진들을 보고, 그들이 저승에서나마 짝이 된 것을 보니 감정이 이입되어서인지 한참을 주저했다. 휴대전화를 주면서 기념사진 찍어달라고 하여 인형과 사진을 가운데 두고 사진을 찍어주었다. 신방을 차려놓고 음식을 나눠먹으면서, 그래도 혼인식이라고 웃고 떠드는 청춘들을 보면서 혼사굿이 죽은 자의 혼인이면서 산 자들의 위로연임을 거듭 느꼈다.

이제는 요령이 생겨, 혼사굿이라면 글쓴이는 미리 준비해간 축의금 봉투를 내민다. 그래도 '혼인식인데...'라며 건네 준 봉투를 엉겁결에 받은 재가집은, 그 후 굿을 보는 글쓴이를 박대하지 못했다. 울고 있는 재가집들을 촬영해야 하는 글쓴이의 역할이 못마땅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잔치에 찾아와 축의금을 준 글쓴이를 구박하지는 않았다.

혼사굿은 지금도 많이 열린다. 대부분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보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인지 무당들도 혼사굿이 있어도 글쓴이에게 잘 알리지 않는다. 부탁을 미리 해두거나, 우연히 찾았다가 보기도 한다. 혼사굿이 이렇게 많이 열린다는 것은 혼인식을 해야 자식에게 해 줄 것은 다 해주었다고 느끼는 우리나라의 부모 마음 때문이리라. 그래서 혼사굿은 부모의 따뜻한 마음과 함께 자식의 죽음이 준 슬픔이 교차하는 만 가지 감정이 넘치는 현장이다.

4. 굿판3 – 축원굿과 비디오굿, 병굿

굿판의 나날은 매일 흘러간다. 이러한 과정에서 만난 축원굿도 기억이 새롭다. 좋은 짝을 만나 잘살기를 바라는 젊은 처자가 올린 축원굿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굿이었다. 하지만 굿거리 중간에 들은 재가집의 실상은 축원굿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이날 재가집은 강남 대형 주점에 근무하는 젊은 처자였는데, 손님 중에 상당한 재력을 가진 단골이 있어 그 단골과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굿이었다. 젊은 나이에 강남 대형 주점에 근무하게 된 재가집은 현재의 생활을 청산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그 직업을 그만두고 다른 직업을 택하기에는 여러 장애가 있었던 듯하다. 그래서 그녀는 탈출구로 재력가를 선택하여 후원을 받고 싶어 한 것이다. 여러 사정으로 보아 단골은 재가집 처자보다 나이가 제법 많은 것으로 보였는데, 축원은 이루어졌는지 궁금하다.

망자천도굿은 망자를 천도하는 굿과 함께 산 자들의 재수 소망을 기원하는 축원굿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다. 자신이 하는 일이 하도 안 풀려서, 남편처럼 의지하고 살다가 죽은 망자를 위한 굿을 연 중년의 여성 재가집도 기억난다. 처음에는 죽은 남편을 위한 천도굿으로 알았는데, 굿이 진행되면서 내연의 관계에 있다가 죽은 남자의 천도를 위한 굿임이 드러난다. 두 사람은 내연의 관계를 유지했는데, 여자를 만나고 귀가하던 남자가 교통사고로 죽음으로써 관계가 끝났다. 아픈 기억을 잊고 생업에 전념하던 여자는 신기할 정도로 일이 풀리지 않아 이웃의 소개로 무속인을 만나게 되고, 점사[24]로 과거에 인연이 있던 남자의 죽음이 온전하게 매듭되지 않아 그것을 풀어야 함을 알게 되어 굿을 연 것이다. 망자의 혼령이 들어오는 〈망자대내림거리〉에서 망자는 구슬피 울면서 두 사람이 작별의 인사도 없이 헤어져 너무 슬프고 아프다면서 넋두리 했다. 그리고 이렇게 만났으니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다고 작별의 인사를 했다. 재가집 여자는 통곡을 했는데, 그것은 세상을 등진 남자에 대한 슬픔의 울음이기

24) 점을 치는 과정에서 무당이 일러주는 말을 점사라고 한다.

도 하고, 자신의 신세를 되돌아보며 탄식하는 울음이기도 했다. 굿이 끝나고 나서부터는 그 여자의 생업이 잘 풀렸다는 후일담을 들었다. 굿을 통해 그 남자가 천도되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굿을 통해 쌓인 그 여자의 설움이 풀린 것 때문인지는 단정할 수 없지만 굿의 효험을 확인한 사례이다.

친정어머니의 천도굿에서 갑자기 따라 들어온 이상한 남자 혼령도 기억난다. 그 남자는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살아간 친정어머니와 자주 만나던 사이로 딸은 그 남자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굿판에서 무당들에게 그러한 사정을 속속들이 이야기할 수는 없어 함구했다. 〈조상거리〉에 여러 선대 조상들이 연이어 들어와 친정어머니를 좋은 곳을 데려가겠다고 하여 재가집은 안도했다. 그런데 갑자기 무당은 미처 준비하지 못한 조상옷을 한 벌 더 가져오라고 했다. 재가집은 더 이상 들어올 조상이 없다고 했지만 무당은 조상옷을 준비시켰다. 준비한 조상옷을 든 무당은 '미안해. 내가 오면 안 되는데 왔네 그려.'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자 재가집은 그 조상의 정체가 누구인지 단번에 알아차려 '여기를 왜 와요?'라며 쏘아붙였다. '그러게 오면 안 되는데 왔어. 잠깐 왔으니 금방 갈게.'하면서 가볍게 춤을 추고 금방 사라졌다. 궁금한 글쓴이가 내막을 묻자 재가집은 하는 수 없다는 듯이 전말을 이야기해주었고, 자신이 감추었음에도 그 사정을 알아차리고 조상옷을 준비해 놀아준 무당의 신통력에 놀라워했다.

비디오굿도 있다. 이는 굿 비용만 보내고 막상 재가집은 굿판에 오지 않는 경우이다. 재가집은 굿하는 장면을 촬영하여 보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래서 글쓴이가 오랫동안 만난 무속인이어서 캠코더를 들고 굿판에 간 것이다. 굿은 격식을 갖추어 진행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무속인들이 카메라 앞에 와서 카메라를 보면서 공수를 준다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비디오카메라가 재가집이 되었다. 촬영 후 DVD로 만들어주면 이를 재가집에 보내 굿을 했음을 증명하면서, 굿판에서 나온 공수를 전달한다고 했다. 나중에 확인하니 재가집은 그 영상물을 집에서 돌려보면서 굿판의 공

수를 정리하였고, 그래서 굿덕을 입었다고 한다.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과거에는, 무거운 병에 걸리면 그 병을 귀신의 장난이라 여겼다. 따라서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병귀(병을 가져온 귀신)를 물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 그래서 열리게 된 것이 병굿이다. 병굿이라고 말은 하지만 지역에 따라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으니, 황해도에서는 퇴송굿, 또는 하직굿이라 했고,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치병굿, 충청지역에서는 주당풀이굿이라 했다. 전염병이 돌게 되면 여는 굿을 손님마마굿이라고 했는데, 손님과 마마는 모두 과거 사람들을 무척 힘들게 했던 천연두를 이르는 말이었다. 실제로 천연두에 걸리게 되면 탈 없이 병이 지나가기를 빌어 손님신을 멀리 잘 가시라고 빌어 보내는 손님배송굿을 하기도 했다.

이처럼 병굿은 병을 치료하는 대표적인 굿이었다. 병을 병귀의 장난으로 간주한 우리 조상들은 병을 관장하는 여러 신령들이 있다고 생각했다. 우리나라 모든 지방에서 찾을 수 있는 '손님신'은 천연두신을 가리키면서, 의미가 넓어져서 모든 질병을 의미하기도 했다. 그래서 호남의 씻김굿이나 동해안의 별신굿은 병굿은 아니지만, 손님을 각별하게 불러 모시는 굿거리로 '손님굿'을 했으니 이 역시 병굿에 포함될 수 있다.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천연두에 걸려 죽은 처녀신을 '호구신'이라고 했는데, 천연두에 걸려 얼굴이 얽어 죽은 처녀여서 부끄러운 마음에 굿판에 들어올 때에는 붉은 치마로 얼굴을 가린다. 그러면서 너울(치마)을 벗고 가야 복을 받는다면서 분 값과 거울 값을 요구하고, 사람들은 얼른 돈을 주어 병을 물리려고 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서울의 마을당[25]에는 따로 호구신령을 그림으로 그려 모신 후 병에 걸리지 않고 무사히 병을 이겨내기를 간절하게 빌기도 했다. 서울 용문동부군당에는 호구신령을 호구아씨라고 부르면서 여러 점의 무신도로 그려 봉안했다. 인천 강화도의 여러 섬에서는 질병을 관장

25) 서울에서 마을을 수호하는 여러 신령을 모신 곳으로 대개 부군당이라고 부른다.

하는 신령을 '별성신'이라 불렀는데 욕심이 많고 탐심이 많아 평소에도 눈치를 보며 잘 모셔야한다고 생각했다. 이처럼 곳곳에서 질병을 관장하는 신령을 여러 상징물로 모시고, 그를 잘 모셔 병을 피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므로 우리 조상들은 병이 돌았을 때에도 병굿을 했지만, 평소에도 재수굿이나 진오기굿을 할 때 질병신을 호구, 별성, 손님 등으로 관념화하여 받들어 모셨다. 늘 항상 조심하면서 생활했고, 굿을 할 때마다 질병과 관련이 있는 굿거리를 연행하여 미리 병을 예방했던 것이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 치병굿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세종시에 있는 주당풀이굿이다. 병귀가 들어와 사람을 아프게 했다고 간주한 무당은 아픈 이를 눕혀 놓고 여러 도구로 병귀를 눌러 쫓는 시늉도 하고, 천으로 덮은 후 신령의 힘으로 병귀를 몰아내려 하기도 한다. 진지하게 굿을 하는 무당이나, 믿음을 가지고 병귀가 물려갈 것을 기원하는 환자 가족 모두 병굿에 대한 효과를 믿고 있다.

과학이 발달한 지금도 이러한 병굿이 곳곳에 열린다는 것은 사람의 운명이, 사람의 힘으로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커다란 힘이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병굿이 지금도 남아있다면, 병을 치료한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겸손하게 절대적인 힘을 믿고 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다.

이처럼 다양한 굿들이 매일 이어진다. 이 과정 속에서 신비로운 일들도 여러 번 체험했고, 설명할 수 없는 일도 여러 차례 겪었다. 전국 곳곳에서 굿을 보았다. 서해 강화군 교동도부터 멀리 남쪽의 목포까지 다니며 포구굿을 보았고, 동해안에서도 강원도 고성부터 남쪽의 부산까지 별신굿을 보았다. 서울굿과 황해도굿, 충청도굿 등 여러 지역의 굿을 보명서 기록하여 현재 글쓴이가 가지고 있는 사진(파일 형태) 20여 만 장, 동영상 파일 6천여 점 등 상당하다. 이러한 자료가 활용될 수 있는 길이 있기를 희망해본다.

5. 결론 – 욕망의 표현, 굿의 존재 이유

무엇보다도 한국에서는 누구나 죽어서 신령이 될 수 있다. 조상신이 그것이다. 살아서 수명을 다 누리지 못했어도, 진오기굿 한 번으로 한이 풀리면 그는 저승으로 가서 조상신으로 좌정한다. 심지어는 어려서 죽은 아이도 동자신이나 선녀신이 되어 무당의 몸주[26]로 내려와 사람들의 앞날을 예언한다. 외국에서 들어온 장군도 누구나 신령이 될 수 있다. 맥아더 장군을 몸주로 모신 무당, 관우를 중요한 신령으로 받드는 무당들이 있음이 그러한 예이다.

이러한 신령에 대한 인식은 모든 것을 수용하는 자세여서 남에 대한 태도가 배타적이지 않다. 자신만이 옳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남과 대립각을 세우기보다는 화합을 추구하고, 자기 것만이 옳다고 여기지 않는다. 남의 것과 자기 것을 슬쩍 결합시키기도 한다. 한국처럼 종교 갈등이 없는 나라는 드물다. 기독교와 천주교, 그리고 불교가 들어와 있고, 한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에 종교가 달라도 아무런 탈이 없는 나라이다. 이는 한국인의 관념 속에 오랫동안 대립하지 않는 무속적인 신령관념이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알게 모르게 무속적인 사고관을 가지고 있다 보니 다양한 종교를 받아들여 무리 없이 소화시킨 것이다. '부처님 오신 날'과 '예수님 오신 날', 그리고 '단군님 오신 날(개천절)'이 모두 공휴일인 나라가 한국이다.

자격을 갖추어야만 신령이 될 수 있다고 하면, 그 신령은 예사존재가 아닌 비범한 능력의 소유자이다. 하지만 한국의 굿에서는 누구나 신령이 될 수 있다. 특히 미약하고 힘없는 존재까지 신령이 될 수 있어 처녀귀신, 해산하다 죽은 해산귀, 장님 등이 신령으로 모셔진다.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최영 장군[27], 남이 장군[28], 임경업 장군[29]이 지금 굿판에서 매우

26) 무당이 모신 여러 신령 중에서 점사를 내거나 굿을 연행할 때 가장 먼저 들어오는 신령으로 몸의 주인이라는 의미에서 몸주라고 한다.

중요한 신령으로 받들어지고 있으며, 몇몇 마을에서는 자신들을 수호해 주는 마을지킴이로 모신다. 이는 자신들이 가진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국가로부터 반역자로 몰려 제명대로 살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은 존재라도 신령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한 존재들이 사람들을 수호해준다는 것은 한국의 굿이 사회의 질서를 이끌면서 지배 이념에 부합하는 존재 중심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에서 거부당하고, 온전하게 자신의 능력을 펴지 못하여 지배층의 이념과 부합하지 않는 존재가 오히려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의미로 보게 되면 굿판을 찾는 재가집의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것은 매우 함축적이다. 옛말에 '굿하고 싶어도 며느리 춤추는 것 보기 싫어 못한다.'라는 말이 있다. 며느리가 춤을 추는 것은 평상시에 억눌린 며느리가 활개를 치는 것이다. 평소 엄한 시부모 밑에서 억눌린 생활을 하던 며느리는 굿판에서 거리낌 없이 자신의 신명을 풀 수 있다. 현실에서 약한 존재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곳이 굿판이다. 버림받은 바리공주가 망자를 저승으로 인도하는 신령이 되고, 사회에서 천대받는 무당이 망자를 저승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고, 평상시에 남성중심주의로 홀대받는 여성들이 굿판의 주인이 된다. 이처럼 한국 굿에는 부족한 존재들만이 있다. 그러나 그들이 굿을 통해 오히려 강한 힘을 낸다. 굿을 통해 망자를 불러내어 맺힌 것을 풀게 하고, 굿을 통해 사회에서 천대받은 아픔을 털어낸다. 평소 숨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하던 며느리는 굿판에서만큼은 주인공이 되어 신명의 춤을 출 수 있다. 그동안 드러내지 못한 내면의 욕망을 과감하게 드러낼 수 있다.

---

27) 고려시대의 무장으로 서울, 경기도의 강신무들은 최영 장군을 자신들의 뿌리 신령으로 인식한다. 제주자치도 추자도에도 최영 장군을 마을 수호신으로 모신다.

28) 조선 예종 때 병조판서를 지낸 장군으로 28세에 반역자로 몰려 죽음을 당했다. 현재 서울시 용산구 용문동에서 마을의 수호신으로 모신다.

29) 조선 인조 때 죽음을 당한 장군으로 서해안 일대에서는 조기잡이를 관장하면서 풍어를 주는 신령으로 모신다.

한국의 굿은 그동안 많은 시련을 겪어 왔다. 조선시대에는 유교중심주의로 인해 천대받았다. 삼국시대에 국가의 중요한 정책에 관여하던 무속은 하층민 중심의 기복신앙으로 변화했다. 일제 침략기에는 조선의 정신이 담긴 것이라 하여 박대받았다. 일제는 조선무속이 조선 정신의 기본임을 알고 이른 시기에 무속의 실태를 조사한 후, 이를 왜곡하면서 무속이 가진 가치를 폄하하였다. 새마을 운동이 전개되면서 굿은 미신타파의 대상이 되어 파괴되었다. 마을신을 모신 마을당들이 미신의 장소라 하여 파괴되었고, 굿을 하게 되면 소음공해라 하여 잡아가서 벌금을 매겼다. 가끔 잊을만하면 무당이 사람들을 어떻게 속이고 있는가를 알려주는 신문기사가 나와 사람들에게 무속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는다. 그럼에도 굿은 이어진다. 자신의 내밀한 욕망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굿에 대한 수요는 계속 이어진다.

사람들은 욕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욕망을 이루기 위해 많은 일을 벌이고 그를 향해 자신을 불사른다. 그런데 현실에서 이러한 욕망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더욱이 그 욕망이 가족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면 더더욱 안타까움은 커질 것이다. 이러한 때 사람들은 굿판을 찾고, 그 판에서 자신의 욕망을 거리낌 없이 드러낸다. 어쩌면 그 욕망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일 수도 있다. 욕망이 이루어진다는 기대감보다도 그 욕망을 드러냈다는 자체가 재가집에게 희열을 주는 것이 아닐까 한다. 감추기보다는 드러내기, 무시당하기보다는 인정받기, 자신의 욕망이 이렇게 인정받고 드러낼 수 있다면 굿도 할 만하지 않은가.

금기의 위반, 그리고 그를 통한 희열. 이것이 굿판의 나날에서 글쓴이가 느낀 굿의 존재 이유 중의 하나이다. 어쩌면 글쓴이가 동일한 굿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욕망의 표출정도가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 요즘 글쓴이는 수륙재, 예수재, 영산재 등의 불교의례 판을 주로 다닌다. 그러면서 글쓴이는 굿판이 오히려 더 정직한 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 아무튼 굿판의 나날은 대단히 재미있게 흘러간다. 이 재미있는 일에 민속학

을 연구하는 후학들의 동참을 기대한다.

▌참고문헌

허용호, 『전통연행예술과 인형오브제』, 민속원, 2005.
홍태한, 『서울굿의 양상과 의미』, 민속원, 2007.
홍태한, 『우리 무당굿의 세계』, 민속원, 2009.
홍태한, 『서울굿의 다층성과 다양성』, 민속원, 2012,
홍태한, 『서울 마을굿의 현장』, 민속원, 2014.
홍태한, 『우리 무당굿의 다양성』, 민속원, 2018.
홍태한, 『서울굿의 다양성과 변화』,민속원, 2018.

국문초록

이 글은 글쓴이가 그동안 조사한 여러 굿중에서 몇 가지 사례를 '욕망 표현의 의미'로 살핀 글이다. 현재 서울 지역에서는 한 해 10만 건 이상의 굿이 열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굿판에서 자신들의 내밀한 욕망을 드러낸다. 이 중에서 글쓴이가 주목한 것은 가족주의이다. 가족의 해체가 보이는 굿판에서 오히려 가족의 결속을 가져오기도 하고, 가족의 영역을 넓혀 부적절한 관계까지 용인한다. 혼인식을 하지 못하고 죽은 자식을 위해 여는 혼사굿은 가족에 대한 아픔의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기도 하면서 새로운 가족을 결성하기도 한다. 개인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축원굿이 열리기도 하고, 굿판에 오지 않는 재가집은 굿의 전 과정을 촬영해 보내줄 것을 요청하여 무당들이 카메라를 보면서 굿을 하기도 한다. 사람들은 욕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욕망을 이루기 위해 많은 일을 벌이고 그를 향해 자신을 불사른다. 그런데 현실에서 이러한 욕망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더욱이 그 욕망이 가족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면 더더욱 안타까움은 커질 것이다. 이러한 때 사람들은 굿판을 찾고, 그 판에서 자신의 욕망을 거리낌 없이 드러낸다. 욕망이 이루어진다는 기대감보다도 그 욕망을 드러냈다는 자체가 굿판이 재가집에게 주는 효용이다. 감추기보다는 드러내기, 무시당하기보다는 인정받기, 자신의 욕망이 이렇게 인정받고 드러낼 수 있는 굿은 오늘도 지속되고 있다.

주제어 ● 굿판, 서울굿, 욕망, 재가집, 가족주의

▌Abstract

The Presence of Gutpan as a Way to Express Desires

Hong Tea-Han

This article has examined one of the aspects of gut (shaman ritual), which is to express desires based on many cases of gut investigated so far. Today, Seoul sees more than 100,000 guts held every year where many people reveal their intimate desires. Among those desires, this article has paid particular attention to familism. A performance of gut that implies the destruction of family often results in rebuilding the family unity or expanding the scope of family and accepting inappropriate relationships. Honsa gut or wedding ritual for a deceased child without getting married reveals pain of losing a loved one and often establishes a new family relationship. Various forms of chukwon gut or celebratory ritual are performed in a bid to realize individual wishes, and in the jaga gut held in the absence of client, the shaman is requested to perform the ritual in front of a camera as the client want to see the entire process of gut. People live with desire in them. They engage in a lot of work or burn their passion to accomplish their desires. The reality, however, does not guarantee the fulfillment of such desires. Furthermore, any desires set against familyism will make things even more pathetic. It is when people start to seek gut performance and reveal their true desires in the process. It is the fact of revealing such desires rather than the expectation of fulfilling them that deliver utilities and benefits to the jaegajip or the client. The gutpan or shamanic ritual performance lives on today as it is where people can reveal instead of concealing their desires and have them recognized

instead of being ignored.

Keyword ● gutpan, Seoul-gut, desires, client, familyism

▌논문투고일 : 2019. 04. 18. ▌심사완료일 : 2019. 05. 07 ▌게재확정일 : 2019. 05. 14

생태학적 지식에 기반을 둔 도시문화의 사회적 기능

민 웅 기*

목차
1. 머리말
2. 생태환경적 논의에 근거를 둔 도시문화의 비판적 고찰
3. 생태도시의 공생 가치와 융합적 도시문화
4. 맺음말

1. 머리말

현대사회 구성원들의 주요 터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도시 공간 내에서 추구해야 할 공동체 문화의 유형은 다양하다. 최근 들어 산업화 시대를 지배한 효율성 중심의 사회질서를 넘어 그 구성원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생태학적 가치가 주목받고 있다. 자연을 중요시하는 공공성의 가치에 입각한 지역공동체의 기능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과거 근대사회의 산업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은 도시로 이주하게 되었고, 그렇게 이동한 도시민들은 특정 지역 공동체 내에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면서 생

* 목원대학교 교양교육원 교수

활하게 되었다. 근대사회를 주도한 삶의 주요 가치는 개인화된 인간의 합리성에 근간을 두고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본격적인 탈근대사회로의 시대적 전환에 따라 사회 구성의 하위 범주에 속한 모든 개체들이 공존해야 한다는 사회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 현상은 시장 논리에서 비롯된 공동체 해체 과정에 대한 대안적 생활양식의 구축 과정이라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도시공동체가 지닌 사회문화적 순기능에 대한 가치가 재발견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한 지역 내 다양한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환경친화적 공간 구조 재편 현상은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지구 정상회담' 이후에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현재도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간생활의 환경을 생태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산업적 노력들이 강구되고 있다. 특히 리우 회의 이후에 환경과 개발에 관한 주제로 세계위원회의 보고서에서 제안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ESSD: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그 이후 본격적으로 세계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공동체의 패러다임이 갖추어지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환경친화적 가치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행동 계획이라 할 수 있는 「Agenda 21」의 채택으로 환경문제에 대응하여 적극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지구촌 사람들의 인식이 확산되었고, 마침내 1994년 영국 맨체스터에서 개최된 지구환경회의에서는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한 「Local Agenda 21」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1)]

상술한 과정을 통해 세계 각 주요 도시에서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한 수많은 대안적 개발 방식들이 운영되기 시작했다. 그 주요 개념이기도 한

1) 김영수, 「생태적 도시를 위한 신도시개발과 재개발」, 『지역사회발전학회 논문집』, 30권 3호, 2005, 23-36쪽.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미래에 다가올 세대가 그들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환경을 유지하면서 현 세대가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하는 개발'을 의미한다.[2] 도시 내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통상적 의미의 생태학적 통합에 의해 생명 다양성이 갖추어진 생태계를 보전하는 것은 물론 기존 도시문화가 지닌 효율성의 원리를 대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공동체 기반의 형평성 가치를 융합적으로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 도시재생과 같은 새로운 공간에 대한 재구조화 과정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통합, 균형, 조화의 원리를 통해 성장 중심의 생태파괴에 대응할 수 있는 전통문화의 보존은 그 구체적인 주요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3]

이처럼 세계 각 도시들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세계 각 국가가 주목하고 있는 생태도시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생태도시란 환경정의를 달성하기 위한 생태적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도시의 구조와 기능을 고려하여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공생적 도시를 의미한다.[4] 생태도시는 환경문제의 개선에 대한 시공간적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도시는 하나의 문화상품 및 서비스가 직접 반영된 구현물로서 시장에서의 경영 논리가 빠르게 유입되고 있기도 하다. 도시에 대한 경영학적·경제학적 고려는 장소마케팅과 장소성 기반 문화콘텐츠 산업으로 구체화되고 있음을 분석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기업내부의 의사결정과 외부의 이해관계자 집단 간 장기적인 전략경영의 관점에서 도시는 하나의 상품과 서비스의 중심 거점으로 중요한 사회적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그리고 바로 이 전략경영의 관점에 자연환경 문제에 대한 논의가 추가적으로 진행되고

2) Hall. C. M. & Lew, A.,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 C. M. Hall and A. A. Lew(Eds.), Sustainable Tourism: A Geographical Perspective, New York: Longman (1998).

3) 고선영, 「한국 생태관광의 현황과 과제: 농촌관광을 중심으로」, 『지리교육논집』, 48권, 2004, 157쪽.

4) 김영수, 앞의 논문, 24-26쪽.

있는 것이다. 전략경영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적 차원의 환경경영이란 기업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환경 부하를 축소하거나 예방하기 위해서 기업의사결정의 전체 과정을 고려하는 경영활동을 의미한다.[5] 이 환경경영은 경제적 효율성의 원리와 생태적 형평성의 가치를 함께 추구한다.

최근 탈근대시대로 전환되면서 한 도시 공간의 환경경영이 생태학적 지식에 기반을 둔 도시문화콘텐츠 산업에서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하고 있다. 이 도시 공동체의 연대를 위한 산업들은 해당지역의 도시재생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도시재생이란 도시에 내재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지역경제와 사회 환경을 장기적으로 개선하려는 목적을 지닌 종합적인 계획과 활동을 의미한다.[6] 특히 생태학적 관점에서 도시재생은 다양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 도시재생 가치는 결국 공동체적 삶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게 되는 지역사회에서의 경제문제와 연동하게 된다. 따라서 도시재생은 생태학적 지식에 근거한 도시문화의 구체적인 재현 과정이 잘 드러나는 비즈니스 모델 중 하나임에 틀림없다.

산업화를 겪으면서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연환경을 가공하기 위한 여러 행위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면서 도시 내 생태적 삶의 기본적이 양식들을 훼손시켜왔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앞서 말한 도시재생을 생태학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같은 이유에서이다. 이제 인간과 환경의 대립적·구분적 세계관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인식 주체로서의 내적 자아와 객체로서의 타자 간 대립적 관계성을 넘어선 공생적 관계에 대한 윤리의식은 생태학적 지식에서 그 원류적 가치를 지향하고 있다. 생태환경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인간의 삶에서 형성된 관계망

5) 남상민, 「생태환경보호 지향의 기업경영을 위한 통합 컨셉: 전략적 그리고 시장 지향적 및 마케팅 지향적 접근」, 『경상논총』, 25호, 2002, 5쪽.

6) 정재영, 교회가 참여하는 지역 공동체 운동으로서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신학과 실천』, 34호, 2013, 530쪽.

의 구현 공간은 결국 그들을 아우르는 재구조화된 또 다른 생태환경을 이루게 된다. 다양한 이질적 집단들이 삶을 함께 영위하는 도시공간에서는 도시 전체의 사람들을 위한 집합적 가치를 구성원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기보다 구성원 각자의 개별성에 대한 포용의 철학이 요구된다.[7] 이 소통의 철학은 현대 융합사회의 개별적 존재가 독자성을 보장받음과 동시에 전체 구성원들의 통일성이 구조화되는 윤리적 당위성을 보장해주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윤리적 당위성의 근간을 이루는 가치는 구성원들의 삶을 포용하는 환경친화적 행위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된다.

이제 현대사회의 도시문화는 산업사회를 주도한 합리성에 근거한 개발과정을 넘어 생태학적 지식에 기반을 둔 인간과 자연환경의 공존 윤리를 실천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도시문화의 특성과 변화 과정을 고찰하고, 생태학적 지식에 기반을 둔 대안적·융합적 도시문화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논의를 탐색적 수준에서 진행하고자 한다.

2. 생태환경적 논의에 근거를 둔 도시문화의 비판적 고찰

1) 이원론적 세계관의 변화와 탈근대적 도시문화의 확산

인류 역사상 대부분의 사회 질서 속에서는 시장성과 공공성의 가치가 공존해왔다. 한 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생활공간에서는 경쟁과 상호호혜의 생존원리가 함께 존재해왔고, 지속적인 분화와 균형, 재구조화의 질서 속에서 다양한 사회적 자원의 획득을 위한 자유와 책임의 질서가 인간에게 동시에 영향을 미쳤다. 최근에는 신(新)자유주의의 세계경제 질서가 수많은 인간 삶의 가치에 유입되고 있기도 하다.

시장경제 질서는 산업화 시대를 거쳐 보편적인 인간 삶의 터전으로 자

7) 정륜, 「도가의 자연관과 환경윤리」, 『범한철학』, 31집, 2003, 299-300쪽.

리 잡은 도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도시성은 도시공간 속에서 생활하는 구성원들이 추구하는 고유의 집합적 속성들이 표현된 사회적 사실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도시공간에서 구축된 문화는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의 이성적·감성적 상호작용의 결과로 정착된 원초적인 수렴 과정을 통해 정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찍이 간스(Gans)는 도시와 같은 특정 공간에서 구성원들은 이질적·동질적 속성을 공유한 상태로 불안정화된 유동적인 문화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았다.[8] 따라서 도시 내 공간개발 과정은 그 도시 내 하위문화의 고유성을 고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산업사회를 거치면서 진행된 인간 중심적 세계관에서 자연이라는 존재는 인간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객체화된 대상물이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같은 시각에 대한 사람들의 상반되는 관점 역시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연에 대한 가치를 논의할 때 전통적으로 등장하는 개념이 개발과 보존의 원리이며, 이 개념들은 각각 대립적인 상반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생태환경의 가치는 그 보존 과정 역시 인간의 풍요로운 삶을 담보로 한다는 점에서 산업사회에서 바라보는 자연의 가치와는 또 다른 사회적 의미가 내재해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환경의 가치는 그 효용성을 논의함에 있어 인간 중심적 관점에서 제기된 문제의식에서 시작했다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을 둘러싼 현상을 인간과 자연의 대립적 관점에 근거한 이분법적 논리에 의해서만 파악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인간과 자연의 융합적 사고는 산업사회에서 지속되어 온 기존의 이원론적 세계관에 대한 인식 변화를 통해 사회적 실천 행위로 표현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실천적 행동은 인간이 자연에 대해서 갖추어야 할 시

8) Gans, H., Urbanism and suburbanism as ways of life, In A. M. Rose(Eds.), Human Behavior and Social Processes(pp. 625-648), Boston: Houghton Mifflin (1962).

대적 덕목의 하나로 사회구성원들에게 수용되어야 한다.

이 같은 이유로 탈근대적 도시문화는 융합적 가치를 품고 다양한 이론적 논의를 기반으로 그 방향성을 다양화시키고 있다. 과학기술 중심의 삶에서 벗어난 자급자족적 생활양식과 최소한의 소비욕구 충족을 강조한 심층생태주의, 자연에 대한 정복과 지배가 아닌 생태적 합리성과 자율적 공동체를 보장하여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사회구현의 필요성을 주장한 사회생태주의, 인간사회의 돌봄의 윤리를 부각시켜 이를 환경문제와 연계시킨 생태여성주의 등이 그 대표적인 이론적 논의라 할 수 있다.[9)]

탈근대적 도시문화의 대표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는 융합문화는 반드시 사회에 기능적 역할을 이행하면서 확산되는 것은 아니다. 융합문화의 성립과정에서 사회구성원 간, 지역 간 여러 가지 갈등 문제 역시 야기되고 있다. 환경가치에 근거한 도시문화가 누군가에게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체험할 수 있는 진정성 추구의 장(field)이 될 수 있지만, 다른 이에게는 자연체험의 미학적 원시성이 불편함과 혐오의 대상이 되어 부정적 감수성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이 같은 도시문화 체험의 양면성 때문에 도시문화의 가치를 고유성과 편리성에 대한 관점에서 그 양가적 의미를 동시에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인식 과정이 환경론자들이 거부하는 과학기술에 의해서 해결될 수도 있다는 기술의 이중성에 대한 역설적인 상황까지 고려해야 한다. 최근 이 문제로 인해 탈근대적 도시문화를 둘러싼 인간과 자연의 공생문제에 대해서 여러 사회 하위부문들의 공론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본격적인 가치의 융합시대에 주목해야 할 문화적 지향성의 변화 중 하나는 합리성을 주요 가치로 지향하는 시장질서에 대한 성찰이다. 이 현상의 근본적인 방향성은 생태적 지식에 기반을 둔 친환경적 삶의 가치로 이어지는 사회구성원들의 탈근대적 인식으로의 전환이라고도 할 수 있다. 물론 인간 존재의 의미를 파악할 때, 인간을 문

9) 김용환, 「생태환경 정의에 관한 연구」, 『윤리연구』, 55권, 2004, 101-102쪽.

화적 존재임과 동시에 생태학적 존재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이론가들 사이에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10)

더 나아가 인간이 실질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는 도시공간 내의 문화는 인간에 의해서만 창조되고 그들의 미시적 행위에만 효용적 가치를 부여하여 구현되는 안정된 사회질서라고만 볼 수 없다. 이 문화는 거시적인 인류 역사에 대한 고찰과 지식 학습을 통해서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지식 학습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인간이 자연에 포함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이 존재론적 의미는 다시 인간의 도덕적·윤리적 책무를 강제하고, 그 책임성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회구성원들의 시공간에서 구현되어야 할 중요한 삶의 원칙이자 본원적인 가치로 사람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2) 협력적 네트워크 구조와 공유의 문화

현대사회를 규정하는 주요 개념 중 하나는 디지털 네트워크에 의해 발현된 융합문화일 것이다. 이 융합문화로 인해 사람들은 연결망에 의한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의 교환과 공유가 가능해졌다. 또한 그러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소비 체계에 있어서도 효용성과 공공성의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탈근대적 상호작용에 근거한 생산 및 소비의 경제체계가 등장하고 있다. 개체 간 실질적 의사소통 과정에서도 인간과 인간 뿐 아니라 인간과 사물이 연계되고,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까지 경쟁과 호혜적 관계를 아우르는 복잡한 형태의 초연결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이 같은 초연결사회를 맞이하여 최근 사회과학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행위자네트워크이론(Actor-network theory)'은 주목할 만하다. 이 이론은 사회 속에 존재하는 '인간-비인간' 사이에서 이루어

10) 김성진, 「환경 미학과 썩음의 미학: 자연미 체험의 양면성은 극복될 수 있는가?」, 『환경철학』, 6집, 2007, 37쪽.

지는 그들 간 네트워크를 가정함과 동시에, 인간이 아닌 비인간 행위자에게도 그 행위의 본질에 대한 당위성을 부여함으로써 '인간-비인간' 간 네트워크의 결합, 재결합, 해체를 통한 사회의 본질적 관계망 형성을 간명하게 설명해준다.[11][12]

이처럼 네트워크 사회의 도래를 맞이하여 최근 많은 도시공동체에서는 마을만들기 운동 등의 모습을 통해 도시공동체 발전을 위한 네트워킹 방식의 조직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그러한 집합적 시도를 시도할 수 있는 이유 역시 복잡해진 초연결사회의 네트워크 구조를 통해 도시 내외부의 가치의 연대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네트워크 구조는 협력적 가치에 근거한 공유의 문화를 확장시키는 수단이 되고 있다. 각 도시들은 공동체 활동에 대한 참여 주체의 범위를 확장하여 그들 간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는 등 도시 내 공동체 문화의 사회문화적 연결망 구축을 고려함으로써 사회 개체 간 관계의 회복을 도모하고 있다.[13]

전술한 네트워크 구조는 지역 내 공간의 한계를 극복함과 도시에 활동 공간의 범위를 넓혀줌으로써 지역공동체 구성원들이 삶의 공간에 대해서 더욱 많은 경제적·문화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와 관련하여 일찍이 로간과 몰로치(Logan & Molotch)는 상품으로서의 장소가 가지는 의미를 연구했는데, 현대사회의 도시 공간을 상품화시키는 과정에서 특정 장소의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는 각각의 고유한 발전 경로를 통해 확대 또는 축소되고 있음을 논의했다. 그리고 그러한 발전 과정과 함

11) Callon, M., Actor-network Theory: The Market Test(draft), Actor Network and After Workshop, Centre for Social Theory and Technology(CSTT), UK: Keele University (1997).

12) Latour, B., The powers of association, In J. Law(Ed.), Power, Action and Belief: A New Sociology of Knowledge(pp. 264-280),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86).

13) 이재민, 「마을만들기의 전개를 통한 아파트 마을공동체의 성장 단계 연구 - A군 드림아파트와 육아아파트의 사례」, 『지역과 문화』, 5권 2호, 2018, 79-98쪽.

께 자연스럽게 파생되는 사회적 책임, 그리고 구성원들의 가치의 향유 과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을 수 있음을 연구했다.[14]

한편 도시 내외를 넘나드는 이 복잡한 교환관계의 네트워크 체계는 다양한 서비스 산업군에서 실현되고 있다. 네트워크 시스템이 다양한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 적용되는 과정 속에서 관광산업 및 문화콘텐츠 분야는 특히 주목할 만하다. 네트워크 원리에 의해 구축된 문화관광콘텐츠는 정보공유플랫폼을 통해 문화자원의 시장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협력적 소비(collaborative consumption) 체계를 중심으로 개발, 공급, 공유, 소비의 과정 내에 놓이게 되었다.[15][16] 사람들에게 널리 회자(膾炙)되고 있는 이 공유경제시스템은 재화 및 서비스 형태로 스스로 자신의 소유물을 타인에게 공급하는 사람들이 그들 간 호혜적 관계에 의해 서로 협력적 소비의 형태로 연결되는 경제시스템을 의미한다.[17][18][19]

이 공유경제시스템은 기술적, 사회적 네트워크를 이루면서 더욱 확산되고 있는데, 기존의 인간 간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과 그 인간을 둘러싼 다양한 사물과의 연결망 체계를 포함하여 관계맺음의 결합구조로 실현되었다. 이제 이들 관계를 포괄할 수 있는 총체적인 생태학적 지식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공유경제네트워크는 개별 인간 중심의 삶이 아닌 공존하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실천하고, 인간 주변의 다양한 환경

14) Logan, J. R. & Molotch, H. L., Urban Fortunes: The Political Economy of Place,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7).

15) 팻치 힐리, 『협력적 계획: 분절된 사회의 협력과 거버넌스』, 권원용·서순탁 역,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4.

16) Botsman, R. & Rogers, R., "What's Mine is Yours: The Rise of Collaborative Consumption", New York, NY: HarperCollins Books (2010).

17) Belk, R., "Sharing",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 36, no. 5 (2010), pp. 715-734.

18) Belk, R., "You are what you can access: Sharing and collaborative consumption online",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vol. 67, no. 8 (2014), pp. 1595-1600.

19) Lessig, L., Remix, New York, NY: Penguin Books (2008).

을 고려하는 연결의 원리에 기초를 둔 삶의 가치 실현을 추동하고 있다.

최근까지도 이 공유경제에 관한 개념 규정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져왔다. 이 새로운 경제체계에서는 설혹 그 교환관계에서 화폐가 매개되더라도 사회적·공공적 가치가 창출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효용성 중심의 시장경제와는 다소 간의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이 공유경제체계에서는 주로 인터넷 네트워크 플랫폼에서 교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시 내 다양한 문화상품과 서비스가 도시 밖 외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홍보되어 소비되기도 한다.[20] 정보융합혁명 속성 중 하나인 네트워크에 의한 접속과 공공성에 근거한 가치 교환은 자신과 타인 모두의 편익에 대한 협력적 교환관계를 이끌어왔다. 그리고 도시 내 공유경제체계가 지속가능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시민과 외지인들의 신뢰관계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이 정보네트워크 시스템은 도시의 구조와 문화 전반에 영향을 주어 총체적 도시환경의 외형적·내재적 변화를 가져왔다. 일찍이 푸트남(Putnam)이 논의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역할과 신뢰에 근간을 둔 공동체 문화의 위상은 안정적으로 구축되어야 할 도시문화구조의 미래상을 암시해줄 수 있다. 그리고 시민들의 연대와 함께 신뢰를 기반으로 도시 내에서 조성될 사회적 자본은 기업환경에 있어서도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21]

한편 제 3, 4차 산업혁명을 통해 발전해 온 정보기술은 소비자와 기업, 공공영역인 국가 간 상호작용을 강화시키고, 문화자원의 거래 비용을 감소시키는 등의 변화를 가져왔다.[22] 소비자들 간, 소비자와 기업 간 신뢰구조에 대한 효과적인 기업 대응이 이루어짐으로써 협력적으로 소비하는

20) Lessig, L., op. cit.

21) Putnam, R. D., "The prosperous community: Social capital and public life", The American Prospect, vol. 13 (1993), pp. 35-42.

22) Castells, M., The Rise of the Network Society, Oxford, UK: Wiley Blackwell (1996).

과정에서의 상호의존성과 상호연관성에 대한 효과적인 기업 전략경영 운영이 가능해졌다. 더 나아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까지 동시에 추구하며 공공선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23] 이처럼 특정 공동체 내 협력적 소비의 근간은 공존의 가치 공유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융합적 네트워크 구조의 가치 확산은 도시의 문화자원에 대한 공유과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한 예로 특정 도시의 문화관광자원 개발에 대해서 외부방문객들의 관심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것은 가치의 확산과정 중 한 부분이라 볼 수 있다. 특히 특정 도시에 내재된 역사문화자원은 그 도시를 관광공간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지금도 각 도시는 지역 내 문화시설과 예술 공간을 문화자원화하기 위해서 그 활용방법과 협력적 네트워크망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24] 일단 특정 도시 내 안착된 생태학적 문화자원들은 그 신기성(novelty) 경험의 확보를 통해 외지인들과의 교류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 또한 관광산업과 연계해서도 도시 내 문화자원을 둘러싼 교통시설, 편의시설, 서비스 체계 등의 다양한 공간 개발 수단들의 개발을 독려하여 장기적으로는 도시 내 시장 가치를 증가시키는 중요 기능 역시 담당할 수 있다.

이처럼 도시 내 지역문화산업의 주요 수단이 되는 각 지역의 문화적 산물들은 그 지역의 텍스트화된 역사적 사실, 자연환경, 생활양식 등의 모습으로 다양하게 존재한다. 도시 내 지역문화를 활용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민해야 할 부분은 도시외부 문화와 도시 내 지역문화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연결해줄 것인가의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리고

23) Robertson, R., Globalization: Social Theory and Global Culture, London, UK: Sage (1992).

24) 송호정·이석환, 「역사문화공간으로서 서촌의 지역 활성화 방안」, 『지역과 문화』, 4권 4호, 2017, 103-119쪽.

그 구체화된 방법론의 하나로 공유경제체계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현재 도시의 공유경제 체계는 산업사회를 주도한 단일품종의 대량생산 체계와 소유를 통한 소비방식의 변화를 의미한다. 대여, 맞바꾸기, 증여 등의 원리를 통한 이 새로운 탈근대적 소비경제 원리는 즉시성을 중시하면서 빠른 일상적 삶의 속도를 살아가는 도시민들에게 중요한 실천 문화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공유문화는 결국 재화를 소유하여 소비함으로써 발생하는 생태계 파괴, 환경오염 등의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고, 생태계 전반에서 상생하는 관계의 회복을 위해 중요한 사회문화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제 탈근대사회를 맞이하여 사회구성원들은 도시간 인류의 공동이익을 추구함으로써 그 삶의 가치가 지구적 수준의 계획된 공동체로 확장될 수 있는 공동선의 공유문화에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볼 수 있다.[25]

3. 생태도시의 공생 가치와 융합적 도시문화

1) 생태도시의 문화적 특성과 공동체로서의 기능

앞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생태도시의 구조는 단순히 자연지향적인 철학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 내 자연과 연관된 환경을 고려한 여러 지형들과 주요 시설을 구조화시켜 접근성까지 확장시킨 이동체계의 범주를 모두 포함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 도시문화는 균형의 원리를 실현하면서도 동시에 생산성을 추구하는 사회 발전과정에 상당부분 기여할 수도 있는 것이다. 결국 생태도시는 도시계획과 경제발전을 사회정의, 공공성 등의 개념과 어떻게 연결시켜줄 수 있는가의 문제에 따라 그 구현의 성패가 결정된다.

---

25) 권선형, 「독일 생태공동체와 유토피아」, 『독어교육』, 32집, 2005, 511-512쪽.

일반적으로 환경과 관련하여 생태도시의 사회구성원들은 도시 내 공간을 유기적 복합체로 인식하게 된다. 도시 자체의 구조에 생태학적 속성인 다양성, 자립성, 순환성, 안전성 등을 포함하는 인간과 자연의 공존 가치가 투입되며, 각 조직 구조는 환경친화적인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26] 또한 그 조직의 구성원들은 도시환경 유지 및 관리를 위한 다양한 사회문화적 노력을 경주하게 된다. 환경친화적 가치에 입각하여 폐기물처리, 에너지 이용효율을 위한 효과적인 관리체계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계획 등을 수립함은 물론 생태계 원리에 기초한 하천관리 등의 생태자원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흥미로운 사실은 결국 생태도시는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적절한 지역환경 개선을 일정 부분 그 개념 속에 포함할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세계적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에너지 자립과 관련한 도시공동체의 집합적 노력들은 기술에 기반을 둔 생태도시 구현 가능성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생태도시를 구성하는 하위요소들은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의 지속가능성에 근간을 두고 나타난다. 환경적 지속가능성은 자연환경의 생명 유지체계의 지속성을 의미하며, 생태적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개발과 환경용량의 제한을 중요시한다.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다양한 인간의 역사문화적 산물의 지속성을 의미한다. 이 개념은 사회 가치 중 정의, 평등, 형평성의 문제 등과 연계되어 실천된다. 경제적 지속가능성은 자연환경과 사회를 바탕으로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고용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성장의 지속성을 추구한다.[27]

상술한 바와 같이 생태도시가 추구하는 다양한 가치에 입각한 공간 조성을 위해서 사람들은 도시 내에서 다양한 공학기술을 적용하여 환경을

---

26) 최지용, 「자원순환형 생태도시의 건설」, 『국토』, 296권, 2006, 17쪽.

27) 변병설, 「지속가능한 생태도시계획」, 『국토지리학회지』, 39권 4호, 2005, 494쪽.

보전하는 토지이용계획을 구축하기도 하며, 사회과학적 지식을 동원하여 도시 내 인간과 자연이 공생할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을 고려한 개발 사업을 진행하기도 한다. 친환경적 이동경로를 확보할 수 있는 대중교통 간 연계성, 공원·녹지 등의 확보, 도심 내 대기·토양·수질 오염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관리체계의 구축,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환경친화적 건축 등도 그러한 사례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생태적 가치를 실천하는 생태도시의 융합적 구성은 지역공동체의 안정과 발전에 기능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도시공동체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역에서 지속가능하게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메니티(amenity)를 통해 지역가치의 확장을 유도해야 한다. 어메니티는 생태적 관점의 전반적인 환경, 생물종의 다양성, 지역문화 고유의 문화적 특성, 건축물, 토지 및 경작지, 공동체 고유의 문화, 전통 등을 포함한다.[28] 따라서 어메니티는 생태학적 관점에 근거한 자연·문화의 지속가능한 개발 및 지역공동체의 신뢰관계와 가치의 보전 원리를 연계하는 문화구성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안정적인 사회적 자본을 도시 내에 내재화시킬 수 있는 기능을 완수할 수 있는 물리적·문화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안정적인 사회적 자본의 구축을 위한 지역공동체 운동이 활성화되고 있다. 특히 한국사회의 경우, 과거 산업화 과정을 통해 공동체 가치가 많이 훼손되어 경쟁을 통한 개인화된 가치에 의한 시장경제 질서가 주류 문화로 자리잡아왔다. 인간관계 역시 신뢰를 기대하기 어렵게 폐쇄적으로 단절되고 있으며, 관료화된 조직 질서는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사회질서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 산업화 논리에 의해서 왜곡된 환경공동체로서의 생태도시의 주요 기능들을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각 도시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중소도시들은 마을기업 등을 통해 여러 경로의 마을만들기 운동을 실천하고 있기도 하다.

---

28) 정재영, 앞의 논문, 531-532쪽.

생태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도시공동체의 활동은 정책의 수혜자가 도시 주민 스스로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통해 구체적인 실천적 사회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마을단위의 사업은 지역공동체가 소유한 조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 수요가 발생하거나 수익을 지역 단위 조직에 재투자하여 지역공동체의 경제적·문화적 이익을 도모하는 거래 형태로 활성화되고 있다.[29] 더 나아가 생태도시에서의 환경친화적 공동체 구축 과정에서 각 도시민들은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공공성과 수익성 모두를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생태도시 공동체로서의 기능 회복을 위해 많은 사회구성원들이 노력하는 이유는 산업화 과정을 급속하게 경험한 많은 국가에서 도시 공동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제 지역문화에 기반을 둔 공공의 가치를 통한 도시경제의 활성화를 추진해야 하는 구조적 압력에 직면해 있다.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산업의 성장가능성을 타진하고, 도시 내 다양한 생태적 가치를 추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 내·외부에서의 활발한 이해관계망의 교류가 요구된다.

이제 도시공동체는 거버넌스(governance) 네트워크에서 하나의 결절 지점으로서 지속적인 관계망을 위한 주요 공간이 되었다. 거버넌스는 국가 주도의 정책 패러다임에 변화가 생겨 나타나게 된 국가, 시장, 시민사회의 협력관계 형성을 통한 협치 체계를 총칭한다. 현 시대에는 통치체계의 변용(變容)을 가져온 거버넌스의 재구조화 현상으로 인해 정책환경의 변화가 야기되었다. 그리고 그 정책환경 변화에 직면한 도시 간 관계망은 일상적 삶의 필요에 의해 문화적으로 축적된 새로운 공간을 재창조할 수도 있다.[30] 물론 도시공동체의 문화는 주로 도시민들의 자발성에 의해서 운영될 필요가 있다. 자발성은 개인적 주체들의 자기실현을 위한

29) 정재영, 앞의 논문, 520-524쪽.

30) 박주형, 「도구화되는 '공동체' -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비판적 고찰」, 『공간과 사회』, 23권 1호, 2013, 4-43쪽.

욕구와 선택에 의해서 구현된다.[31] 그리고 지역 주체의 자발성은 외부집단과의 다양한 대응력을 강화시킴과 동시에 공동체 역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

도시공동체의 물리적 주거환경 개선 및 시설 구축을 통한 도시 재개발 및 정비뿐만 아니라 마을의 자족성 회복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지역공동체 주민 주도의 마을만들기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도시공동체의 공생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소통과 관계성 회복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32] 요컨대 생태학적 지식에 근거한 고유성에 기반을 둔 도시문화의 구조화 과정은 물리적 측면의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사회적 측면의 교육과 문화체험을 통한 정체성 형성, 경제적 측면의 일자리 창출 등을 함께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구성원 모두가 주목해야 할 사회변화라고 할 수 있다.

2) 융합적 도시문화의 기능과 가치

앞서 살펴본 생태도시의 융합적 공생가치에 기반을 둔 지역공동체 관련 산업의 전형 중 하나는 지역문화에 기반을 둔 체험형 문화관광 산업이라 할 수 있다. 도시 내 체험관광은 유무형 문화를 서비스 상품으로 특성화시켜 이를 통해 본격적인 활동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 과정은 도시의 경제 활성화를 추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생태관광과 같은 대안관광 유형은 자연환경에 기반을 둔 공동체에서 지역문화의 중요성을 부각시킬 수 있다. 지역주민 공동의 생활방식을 통해서 그들 간 공유가치에 입각한 의사소통이 이루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생활비용에 대한 개인의 부담을 낮춰주기 때문에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구성원들 간 협력적

31) 최조순·강병준·강현철, 「한국 공동체 정책의 비판적 논의 – 통치성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29권 1호, 2015, 50쪽.

32) 여관현, 「주민학습과 실천을 통한 마을만들기의 지속가능성 연구 – 성북구 장수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9권 3호, 2015, 31쪽.

소비 형태로 일체감을 조성하는 공동체의 새로운 가치를 추구할 수 있게 된다. 사회구성원들의 지역화폐 운동, 공유경제 플랫폼 구성 등의 새로운 공동경제시스템의 구성은 환경적 책임성을 내재화 한 통합적 인간관의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융합적 도시문화의 구조이자 기능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도시들은 지금도 지역적으로 특화된 문화산업 활성화 과정에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는 마케팅을 시도하기 위해서 국토와 환경의 보전을 도모하고, 지역 고유의 전통과 민속을 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33] 다양한 지역문화를 위한 역사문화자원 등은 결국 생태적 가치에 기반을 둔 환경 보전을 통해서 가능해지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지역 소득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 생태자원에 기반을 둔 경관관광, 먹거리 관광 등은 지역문화에 근거한 여가 수요를 충족시키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게 해준다.

이처럼 생태도시에서 추구하는 융합적 도시문화의 산업화 과정은 환경경영의 원리가 도시 내에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새로운 전략경영 원리를 통해 시장과 시민사회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물론 반대로 도시개발을 보는 서로 다른 관점 때문에 사회갈등의 증폭과 같은 새로운 위험사회로 진입할 수도 있다. 바로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생태환경과 같은 공공재를 둘러싼 이해관계자 집단 간 신뢰와 관용적 가치 수용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도시 내 집단 간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규범적 환경경영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34] 기업 경영의 주요 과제가 제도화되기 위해서도 도시문화 전반에 그 복합적 경영원리를 감시, 관찰, 통제, 조정, 혁신하는 생태적 집단과 조직이 확산되어야 한다.

---

33) 김성후, 「새로운 테마 관광시설로서 펜션업 개발과 J 프로젝트 -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산업경제연구』, 18권 1호, 2005, 390-391쪽.

34) 남상민, 앞의 논문, 11쪽.

생태학적 지식에 근거한 도시문화의 철학은 산업사회를 주도한 경제적 합리성의 가치를 정치사회학적으로 고려하여 생태적 사회형성의 가치와 어떻게 결합시킬 수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고찰할 수 있어야 한다. 생태학적 지식에 근거한 철학의 분배적 가치의 보장은 인간의 삶의 기회에 대한 다양한 보장 논리와 관련되며, 계급·계층의 탈분절화된 사회적 연대의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35]

한편 사회구성원들 간 호혜적 공생관계를 회복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국가 존재의 필요성은 현재 다양한 정책 발현으로 방증되고 있다. 산업화 시대를 주도한 근대 국민국가 형성에서 나타난 정책실현과정은 지역 생태계 속에서의 삶의 양식이 해체되고, 권력에 의한 중앙집권 체제 속에서의 자본축적 과정을 그 특징으로 진행되어왔다. 이 같은 국가 중심의 사회질서가 추구한 축적 잉여의 극대화는 결국 자연에 대한 인간 착취를 정당화시켜주었다.[36] 그런데, 최근 탈근대사회를 맞이하여 새롭게 실현되고 있는 도시문화의 자원 공유 및 분배의 가치는 집단에 의해 주도된 삶의 가치를 어떻게 다시 인간 개인의 생명을 중시하는 정책 실현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라는 점에서 축적 중심의 경제 원리와는 차이가 있다. 이는 새로운 대안적 정책 실행과정을 통해 실천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권력 층위의 이양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다.

최근 세계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환경 및 자원 복원 문화는 생명중심적 삶을 잘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라 할 수 있다. 복원은 어떤 대상을 원래의 상태·위치로 복구하는 일을 의미한다. 즉 물리적·화학적 변화의 원형 연구를 위해 원래의 모습을 찾아서 복구하는 과정을 포함한다.[37] 복원의 가능성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생명중심적인 가치에 근

35) 권정임, 「현대 생태사회론과 생태철학」, 『시대와 철학』, 17권 4호, 2006, 33-35쪽.

36) 조명래, 「국가론의 녹색화를 위한 시론」, 『한국정치학회보』, 36권 2호, 2002, 56쪽.

37) 조석용, 「생태복원의 환경윤리적 분석 - 청계천 복원을 중심으로」, 『윤리연

거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상충된 의견 대립에서의 우선성의 원칙 적용을 통해 생명중심적 환경윤리의 가치관의 실천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 복원의 가치를 사이에 두고도 서로 다른 의견이 대립구조를 보일 수 있다. 복구된 자연은 인간의 생태적 가치를 구체적인 실천행동으로 강화시켜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복원된 자연은 결국 인간 스스로에게만 만족감을 주는 인공적 모조품, 모조 예술품 등의 모습으로 그 가치가 평가절하될 수도 있다.[38] 결국 도시 내 다양한 문화적 산물의 복원 문제는 복원의 결과물에 대한 인식과 복원 과정에 대한 가치 부여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 한 예로 도시 내 오래된 문화재에 대한 복원의 경우, 대부분의 그러한 복원 과정에서 공공선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사회구성원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어 그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도시 내 지역공동체가 관심을 가지는 주요 부분 중 하나는 도시 내 생태적 가치를 실천하면서 지역경제를 진흥시키고, 전통문화를 보전하는 과정이다. 도시민들이 다양한 문화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도시 내 다양한 문화 자산들을 개발하고 보전하는 과정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도·농간 문화적 교류와 함께 해당 지역의 소득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문화, 관광산업이 자연스럽게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이 지역공동체 기반 비즈니스는 최근 도시 내 생태자원을 바탕으로 하는 산업적 관광자원의 확대로 이어지게 되었다. 산업적 관광자원은 전통적인 환경적 자원, 농업자원, 산업자원, 첨단시설 등이 관광대상이 되어 관광객들의 견학, 시찰, 체험 등의 관광형태로 이어지는 제반 사업시설을 총칭해서 말한다.[39] 도시 내 생태자원의 보전은

구』, 65권, 2007, 221쪽.

38) Katz, E., The big lie: Human restoration of nature, In A. Light and H. Rolston(Eds.), The Environmental Ethics: An Anthology(pp. 390-397), Cambridge, MA: Blackwell Publishers (2003).

39) 김종은·이상춘, 『관광지리자원론』, 서울: 백산출판사, 2009.

이 같은 제반사업 시설의 확장을 통한 체험 가치를 사람들에게 배가시킬 수 있다.

더 나아가 도시 내에서 이루어지는 낚시, 수영, 캠핑, 마리나, 등산 등의 여가활동 역시 잘 보전된 자연환경에 기반을 두지 않으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위락형 여가·관광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자연지형지물을 바탕으로 하는 여가활동은 육상·수상 문화체험 프로그램의 융합화를 통해 사회구성원들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복합적인 프로그램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처럼 도시 공간 내 지역문화에 기반을 둔 여러 문화, 관광산업은 인적 서비스를 바탕으로 하는 노동영역이 집약된 산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역공동체에 기반을 둔 내수시장 활성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대안적 산업군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최근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이루어진 정보통신기술, 로봇기술 등의 급속한 발전은 새로운 문화체험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욕구를 가상현실(virtual reality),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과 같은 가상콘텐츠 체험을 통해 임의적으로 실현시킴으로써 새로운 문화체험에 대한 시장 영역의 유치 경쟁을 유발시키기도 했다. 그런데, 이처럼 발달된 과학기술을 통한 가상체험콘텐츠의 개발과는 별개로 도시 내 진정성을 추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의 향유를 도와주는 역사문화자원들이 존재한다. 이 자원들을 이용한 관광산업의 개발은 도시문화의 순기능을 이행할 수 있는 좋은 사례로 이어질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생태관광이란 과거와 현재의 현존하는 모든 문화적 상물과 경관 등을 감상하는 관광유형으로서 자연환경보호와 지역 방문자를 친환경지식에 의해 교육할 수 있고, 관광목적지 지역사회의 복지증진과 자연환경보존에 긍정적인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40] 생태문화자원의 개발 과정은 생물 다양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자연환경과 생물자원과의 상호

40) 고선영, 앞의 논문, 158쪽.

관계 파악을 통해 유무형의 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한 문화콘텐츠를 개발하여 환경친화적인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41) 따라서 이러한 생태관광은 도시문화의 생태적 가치와 사회적 책임성을 함께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사회문화적 위상을 지니고 있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의 기술적 변화는 한 도시의 문화콘텐츠의 향유 수단을 다양화하여 사회구성원들의 새로운 문화체험 욕구를 실현시키는 기능을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그와 동시에 지역 문화산업이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자연환경 훼손과 같은 사회적 역기능을 완화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자본과 신뢰체계에 대한 도시문화의 기능을 부각시키게 되었다. 도시문화의 기능이 거점 체계에서의 경쟁원리를 넘어 상호호혜적 원리를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기능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그러한 도시문화 기능의 기저(基底)에는 생태학적 지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지식정보의 생태론적 가치는 도시 내 개별 주체들의 정보교류와 상호의존성을 높이면서 도시공간의 물리적 체계를 변화시키며, 관련 도시계획의 전반적인 재순환을 야기하게 된다.

한편 생태학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도시공동체의 문화산업 활성화 과정에서 과학기술학 및 인문학의 가치가 융합될 수 있다. 특히 그 매개체가 되는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특정 시공간 영역의 문화콘텐츠가 연계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기도 했다. 각 도시의 시간자원에 근거를 둔 역사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자원은 이야기(story)를 바탕으로 최첨단 미디어 기술을 통해 더욱 다양하게 빠른 속도로 개발되고 있다. 특정 도시를 방문해야만 볼 수 있는 인문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역사박물관에 내재해 있는 문화콘텐츠나 한정된 특정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패러글라이딩, 패러세일링 등의 여가프로그램은 과학기술을 통해 다른 지역이나 가상공간에서도 체험 가능하게 확대되고 있다.

---

41) 홍선기, 「도서해양의 생태·문화자원의 활용과 지역 활성화」, 『농촌계획』, 13권 3호, 2007, 63-66쪽.

이제는 특정 도시의 문화콘텐츠가 체험프로그램 과정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시공간 내 생태적 가치를 그대로 유지·보전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즉 도시의 자연미에 기초한 미학적 관점이 정책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도시 내 생태학적 창조물에 보전 정책 역시 병행되어야 한다. 그 하나의 예로 도시 내 존재하는 문화재 체험은 생태환경에 대한 지식을 함양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될 수 있다. 문화재는 역사학, 문학, 예술, 과학 등 다양한 학문분과에서 중요하게 인식되는 사회적 하위 범주이며, 그 존재가치만으로도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다. 문화재는 진귀한 수집품, 동물군·식물군, 고고학적 관심물체, 역사와 관련한 재산, 중요 문건, 고고학적 발굴과 발견의 산물, 유적지, 골동품, 역사·예술·과학적 측면에서의 특별한 관심사가 되는 귀중한 필사본, 고서 등을 모두 포함한다.[42]

결국 이 같은 문화콘텐츠 자원들에 대한 체험은 생태도시환경의 보전이 전제되지 않으면 실현되기 어렵다. 특정 도시문화가 세계유산 등으로 등록·공표되면 국가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그와 동시에 국가는 그것을 보전·관리해야 하는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게 된다. 또한 도시 내 다양한 문화, 관광산업을 확장시켜 실제 도시 내 수익 및 고용 창출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기여 역시 기대할 수 있다. 이처럼 지역 내 생태학적 지식에 근거한 도시문화의 보전과 관리는 효율성과 형평성의 원리를 함께 고려한 효과적인 도시기능을 융합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을 것이다.

4. 맺음말

도시의 자연적, 생태학적 가치에 기반을 둔 문화연구는 인간과 자연의 융합적인 관계에 대한 인식 구조 속에서 진행될 필요가 있다.[43] 이 같은

42) 김종은·이상춘, 앞의 책.

사고 체계의 흐름은 지금까지 삶의 행위주체를 둘러싼 인간과 자연의 이원론적 논리를 극복할 수 있게 해준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총체론적 시각은 생태학적 가치를 둘러싼 문제의식을 강화시켜 인간 삶의 터전 중 하나인 도시공간의 새로운 대안적 가치를 부각시킬 수 있다. 최근 나타난 융합시대로의 도래로 인해 도시문화에 내재한 인간과 자연의 공존문화와 관련한 사회적 기능에 대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사회적 기능의 근저에 위치한 생태학적 지식은 공생적 삶의 가치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을 필요로 하고 있다. 도시문화를 둘러싼 물리적 공간 및 행위 교류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은 결국 인간, 자연, 사회가 상호의존적인 관계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이제 어떤 위계적 가치에 입각한 논증이나 배타적 관계성에 대한 이데올로기를 통해 고착화된 이분법적 사고를 경계해야 한다. 인간, 자연, 사회를 둘러싼 각각의 제한된 범주화를 넘어 이들을 융합할 수 있는 포괄적인 다차원적 사고가 필요한 것이다. 더불어 도시문화를 이루는 생태적 실천행동은 지속가능한 개발 과정에서 나타나는 환경오염의 심각성 이외에 어떤 실용적 유효성을 추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융합적 논의와도 연결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앞으로 다가올 융합 시대에는 도시문화가 인간과 자연 존재의 가치를 함께 실현시킬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그것이 곧 도시문화의 중요한 대안적인 사회적 기능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사회구성원 각자의 입장을 존중하는 차이의 윤리를 실천하고, 시민으로서의 보편적 윤리 문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다원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세계관 함양이 필요하다. 공공성이라는 보편적 윤리에 의한 삶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문화적 차이가 공존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 역시 요구된다.

이질적 사회구성원들의 개별적·집합적 인식 작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43) 강용기, 「자연과 문화의 중첩: 헨리 쏘로우의 자연관과 그 생태비평적 조망」, 『영어영문학』, 46권 3호, 2000, 758-760쪽.

지고 있는 도시문화는 집단 구성원들에게 공유·통합의 가치를 재생산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며, 그 과정에서 유기적으로 현재의 보편적 문화유형으로 적층되어 왔다. 또한 생태학적 가치에 근거를 둔 도시문화는 역사적으로 누적된 문화콘텐츠들을 통해 타 지역과 차별화된 상대적 가치를 지닌 특수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기도 하다. 자연환경을 고려한 도시문화 활성화 과정은 결국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 전략과 연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이제 특정 시공간을 공유하는 사회구성원들의 인간적인 감성문화를 문화산업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탈근대 사회의 해체적 다양성과 동시에 통합적 정체성을 함께 고취시켜야 할 것이다. 추후 도시문화의 더욱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 역시 이 같이 복합적 성격을 지닌 사회구조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보편적이면서도 특수한 성격을 지닌 생태학적 가치가 내재된 도시문화의 기능적 확산을 위해서는 관련 문화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산업사회를 주도한 문화적 거대담론이 붕괴되고, 분산화·소규모화되고 있는 포스트모던 사회에서 문화집단 간 갈등관계의 정도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인식 주체와 객체 사이의 존재를 인정함과 동시에 특정 시공간 세계의 문화적 산물을 체험하고, 지식을 획득하는 상징적 해석 및 이해 과정이 필요하다.[44]

결국 생태학적 지식에 근거한 도시문화를 통해 실현될 수 있는 생태철학의 근본적인 가치는 관계의 회복으로 정리할 수 있다.[45] 인간과 자연, 외지인과 지역사회 구성원, 개발과 보존, 물질과 정신, 사용과 재생 등의 단절된 문화적 영역의 의사소통방식은 결국 생명윤리의 도덕적 사유로 그 논의의 근원에 대한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공생적 가치가 중심이 된 생태학적 지식은 미래의 도시문화에 포함되어야 할 실존적 의미를 체계

44) 오만석, 「21세기 한국문화교육의 새 패러다임 탐색」, 『문화의 세기: 한국의 문화정책』, 김복수 외, 서울: 보고사, 2003, 185-219쪽.

45) 이상호, 「맹자의 인간관계론에 드러난 생태적 함의」, 『동양철학연구』, 51집, 2007, 91-122쪽.

적으로 부여해줌으로써 구성원들이 인간-자연과의 상호호혜적 관계를 지속가능하게 유지,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강용기, 「자연과 문화의 중첩: 헨리 쏘로우의 자연관과 그 생태비평적 조망」, 『영어영문학』, 46권 3호, 2000, 747-762쪽.

고선영, 「한국 생태관광의 현황과 과제: 농촌관광을 중심으로」, 『지리교육논집』, 48권, 2004, 153-166쪽.

권선형, 「독일 생태공동체와 유토피아」, 『독어교육』, 32집, 2005, 507-532쪽.

권정임, 「현대 생태사회론과 생태철학」, 『시대와 철학』, 17권 4호, 2006, 7-40쪽.

김성진, 「환경 미학과 썩음의 미학: 자연미 체험의 양면성은 극복될 수 있는가?」, 『환경철학』, 6집, 2007, 35-75쪽.

김성후, 「새로운 테마 관광시설로서 펜션업 개발과 J 프로젝트 -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산업경제연구』, 18권 1호, 2005, 387-408쪽.

김영수, 「생태적 도시를 위한 신도시개발과 재개발」, 『지역사회발전학회 논문집』, 30권 3호, 2005, 23-36쪽.

김용환, 「생태환경 정의에 관한 연구」, 『윤리연구』, 55권, 2004, 101-128쪽.

김종은·이상춘, 『관광지리자원론』, 서울: 백산출판사, 2009.

남상민, 「생태환경보호 지향의 기업경영을 위한 통합 컨셉: 전략적 그리고 시장 지향적 및 마케팅 지향적 접근」, 『경상논총』, 25호, 2002, 1-31쪽.

박주형, 「도구화되는 '공동체' -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비판적 고찰」, 『공간과 사회』, 23권 1호, 2013, 4-43쪽.

변병설, 「지속가능한 생태도시계획」, 『국토지리학회지』, 39권 4호, 2005, 491-500쪽.

송호정·이석환, 「역사문화공간으로서 서촌의 지역 활성화 방안」, 『지역과 문

화』, 4권 4호, 2017, 103-119쪽.
여관현, 「주민학습과 실천을 통한 마을만들기의 지속가능성 연구 - 성북구 장수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9권 3호, 2015, 29-51쪽.
오만석, 「21세기 한국문화교육의 새 패러다임 탐색」, 『문화의 세기: 한국의 문화정책』, 김복수 외, 서울: 보고사, 2003, 185-219쪽.
이상호, 「맹자의 인간관계론에 드러난 생태적 함의」, 『동양철학연구』, 51집, 2007, 91-122쪽.
이재민, 「마을만들기의 전개를 통한 아파트 마을공동체의 성장 단계 연구 - A군 드림아파트와 육아아파트의 사례」, 『지역과 문화』, 5권 2호, 2018, 79-98쪽.
정륜, 「도가의 자연관과 환경윤리」, 『범한철학』, 31집, 2003, 289-311쪽.
정재영, 「교회가 참여하는 지역 공동체 운동으로서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신학과 실천』, 34호, 2013, 519-544쪽.
조명래, 「국가론의 녹색화를 위한 시론」, 『한국정치학회보』, 36권 2호, 2002, 47-68쪽.
조석용, 「생태복원의 환경윤리적 분석 - 청계천 복원을 중심으로」, 『윤리연구』, 65권, 2007, 219-237쪽.
최조순·강병준·강현철, 「한국 공동체 정책의 비판적 논의 - 통치성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29권 1호, 2015, 45-64쪽.
최지용, 「자원순환형 생태도시의 건설」, 『국토』, 296권, 2006, 16-25쪽.
팻치 힐리, 『협력적 계획: 분절된 사회의 협력과 거버넌스』, 권원용·서순탁 역,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4.
홍선기, 「도서해양의 생태·문화자원의 활용과 지역 활성화」, 『농촌계획』, 13권 3호, 2007, 61-72쪽.
Belk, R., "Sharing",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 36, no. 5 (2010), pp. 715-734.

Belk, R., "You are what you can access: Sharing and collaborative consumption online",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vol. 67, no. 8 (2014), pp. 1595-1600.

Botsman, R. & Rogers, R., "What's Mine is Yours: The Rise of Collaborative Consumption", New York, NY: HarperCollins Books (2010).

Callon, M., Actor-network Theory: The Market Test(draft), Actor Network and After Workshop, Centre for Social Theory and Technology(CSTT), UK: Keele University (1997).

Castells, M., The Rise of the Network Society, Oxford, UK: Wiley Blackwell (1996).

Gans, H., Urbanism and suburbanism as ways of life, In A. M. Rose(Eds.), Human Behavior and Social Processes(pp. 625-648), Boston: Houghton Mifflin (1962).

Katz, E., The big lie: Human restoration of nature, In A. Light and H. Rolston(Eds.), The Environmental Ethics: An Anthology (pp. 390-397), Cambridge, MA: Blackwell Publishers (2003).

Hall. C. M. & Lew, A.,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 C. M. Hall and A. A. Lew(Eds.), Sustainable Tourism: A Geographical Perspective, New York: Longman (1998).

Latour, B., The powers of association, In J. Law(Ed.), Power, Action and Belief: A New Sociology of Knowledge(pp. 264-280),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86).

Lessig, L., Remix, New York, NY: Penguin Books (2008).

Logan, J. R. & Molotch, H. L., Urban Fortunes: The Political Economy of Place,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7).

Putnam, R. D., "The prosperous community: Social capital and public life", The American Prospect, vol. 13 (1993), pp. 35-42.

Robertson, R., Globalization: Social Theory and Global Culture, London, UK: Sage (1992).

▌국문초록

현대도시의 문화콘텐츠들은 그 도시가 겪어온 오랜 시공간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생산과 소비 과정에 노출되어 있다. 지금까지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바라보는 수많은 세계관들에 의해 도시문화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들이 존재해왔다. 최근 들어 기존 산업화시기를 지배해 온 진보이데올로기에 근거한 도시문화의 활용방안을 넘어서는 융합적 논의가 진행 중이다. 성장과 개발 중심의 생산능력과 함께 생태학적 지식을 통한 도시문화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탈근대사회의 특징을 나타내는 생태사회에서의 문화콘텐츠는 환경윤리적 측면에서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운영 시스템 자체가 한 도시의 핵심적인 브랜드 가치로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있다. 이처럼 생태학적 지식에 기반을 둔 도시문화는 도시 공간 및 서비스 체계의 상품화를 촉진시키는 기능과 함께 현지인들의 일상적 삶의 질적 향상과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사회적 기능 과정에서의 주요 매개체가 될 것이다.

주제어 ● 생태학적 지식, 도시, 문화콘텐츠, 환경윤리, 융합

Abstract

The Social Functions of the City Culture Based on Ecological Knowledge

Min, Woong-Ki

In modern society, cultural contents have been exposed to the different processes of production and consumption by spatiotemporal characteristics that cities have had for a long time. Many perception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d nature have brought about different opinions on the social functions of city culture. Recently, new convergent discussion on schemes for dealing with city culture is in progress beyond the previous scheme using the ideology based on the concept of progress that dominated the industrial age. Especially there is a rising interest on the functions of city culture based on ecological knowledge, not the production capacity of cities focusing growth and development. Cultural contents of an eco-city that feature in post-modern society serve important social functions in a specific space in terms of environmental ethics. Furthermore, the operating system of the cultural contents is perceived as the core brand value of a city. The city culture based on ecological knowledge is expected to turn into the medium for enabling convergently social functions that local residents can improve the quality of life in their daily life as well as economic revitalization through marketing the urban space and service system.

Keyword ● Ecological knowledge, City, Cultural content, Environmental Ethics, Convergence

▌논문투고일 : 2019. 04. 17. ▌심사완료일 : 2019. 05. 10 ▌게재확정일 : 2019. 05. 14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글쓰기 교육 연구 : 대학 교양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차 순 정*

목차
1. 들어가며
2. 교양교육의 의미와 글쓰기 교과의 목표
3. 역량 강화를 위한 글쓰기 수업 모형
4. 맺음말

1. 들어가며

대학은 설립이념을 바탕으로 인재상을 수립하고 인재가 갖추어야할 핵심역량 함양으로서의 교육 목적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교양교과과정은 핵심역량을 함양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은 대학의 교양교육의 학문적 목적과 교양교과과정의 편성기준은 제시하고 있으나 핵심역량 함양 및 강화에 따른 교과 편성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 대학은 핵심역량 함양에 대한 자의적 해석에 따라 교양교과과정

* 순천향대학교 강사

의 설계, 이론적 배경도 뚜렷한 모형도 없이 교양교과과정을 개편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역량강화 사업 또는 대학자율역량강화 사업 등 교육부 사업 지원을 위해 대학들이 4차 산업혁명 대비를 위한 핵심역량 함양이라는 목적으로 교양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있으나 대학의 핵심역량과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위한 고민, 즉 개편과정이나 개편방법에 대한 논의와 연구 없이 개편 결과만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글쓰기 수업 역시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교과목 중 하나로 대부분의 대학에 개설되어 있으나 실제 대학 내 교육과정과의 연계나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글쓰기 과목 자체의 체계적인 교육과정 설계는 여전히 미비한 실정으로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

2. 교양교육의 의미와 글쓰기 교과의 목표

교양교육에 신자유주의 교육관에 기반을 둔 역량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것은 교양교육의 근본적인 목적보다는 도구적 실용성에 가치를 둔 논의이다. 교양교육의 한 과목으로서의 글쓰기 역시 이 논의에서 예외일 수 없다. 대학의 글쓰기 수업이 도구적 가치에 치중되어 교과가 운영된다면 글쓰기 자체가 갖는 가치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교양교육과정의 이론적 배경과 관점을 분명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교양교육은 취업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지식이나 기술 습득이 목적이 아니라, 인간의 주체성을 강화하고 자기 목적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목적이 있다(손종현, 2014). 즉, 자아를 발견하고 자신의 삶의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활동인 것이다(정철민, 2014). 교양교육의 근본적 목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Hutchins(1978)에 의하면 교양교육의 목적은 이해와 판단, 위대한 대화, 훈련된 지성, 지혜, 자유정신 등을 이끄는 것이다. 즉 인간교육, 주체적 삶으로서의 인간을 형성하는 것이다. '주체적 삶'이란 주체

적이고 이성적으로 사고하여 행동에 옮기며 감정에 치우치거나 외부적 힘에 휘둘리지 않도록 자신의 삶을 가꾸는 것이다. 교양교육은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지식과 지혜, 즉 앎을 형성하도록 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가꿀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해야 한다. 그러나 시장주의 교육이념에 기반을 둔 현재의 역량 개념화는 고급인력의 양성이라는 사회적 요구의 충실한 추종을 통해 학생을 비주체적 삶으로 이끌고 있다고 비난받을 수밖에 없다(손종현, 2014: 142).

둘째, 교양교육은 질문과 탐구를 통한 넓은 안목과 통찰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보편교육이다. 손종현(2014: 142)은 자각 형태의 앎의 형성, 인간의 열정, 삶의 태도는 특별한 과정을 거쳐 얻어지는 것이며, 그 특별한 지도 과정이 바로 교양교육이며 인간의 성장과 발달에 관여하려는 교양교육은 언제 어디서나 보편적이고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지식의 전문화가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체적 인간으로서의 삶은 어떠해야 하며, 주체적 인간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은 어떠해야 하는지, 이러한 자질과 능력은 어떠한 형태의 교양교육으로 형성될 수 있는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교양교육의 근본적인 목적은 전문적인 지식을 함양한 지식인으로서 그 지식을 주체적인 삶을 가꾸고 형성하는 데 활용할 수 있으며 지식인으로서의 삶의 태도와 인간의 내면적 성장과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과과정이 되어야 한다. 즉 현대 시장 경제 중심의 대학에서 역량 강화란 도구적 실용성에 가치를 둔 교양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교양교육의 근본적 목적을 접목한 주체적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지식인 양성을 의미한다. 현재 교양교육으로서의 글쓰기 교육은 취업을 위한 전문 지식 및 실용 지식을 강조하며 도구적 가치에 치중된 교과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글쓰기 교육은 이 두 가지 가치를 갈등적 관계로 보거나 선택적 접근으로 볼 것이 아니라, 양립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런데 Sen(2013: 62)에 따르면 교육은 공적 토론과 대화로써 도구적이고 사회적인 역할하고, 사람들의 지평을 확대하여 도구적이고 과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취약하고 주변화 된 사람들이 힘을 갖출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변혁적이고 분배적인 역할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교육은 도구적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자유와 잠재가능성을 확대하는 역할도 수행하는 것이다(정윤경, 2015: 145). Sen의 잠재가능성 접근으로 보면 교육의 수단적 가치와 내재적 가치는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직업교육과 자유교육 간의 구분도 없다. 이런 점에서 Sen의 논의는 교육의 내재적 가치와 외재적 가치를 인간다운 삶 속에서 포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기존 역량 중심의 외재적 가치 지향성과 교양교육의 내재적 가치 지향성을 한 지점에서 만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역량 강화를 위한 글쓰기 수업 모형

역량 중심의 외재적 지식과 주체적 삶을 위한 내재적 지식의 접합점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 모둠별 글쓰기 수업 모형 “액션플랜(Action Plan)”을 제안한다. 액션플랜은 각 개인이 지닌 전문지식과 문제를 찾고 찾은 문제를 탐구하고 해결해 나가는 활용 지식, 모둠원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의사소통 능력 및 의견 관철 및 모둠원 통솔을 위한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는 방법이다.

액션플랜은 5~7명으로 구성된 모둠조가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탐색하고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아가는 수업으로 지역사회 및 교내 현안 문제에 대한 수행 중심의 수업을 통하여 사회 현안 문제에 대한 이해 및 자기주도적 학업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수업은 액션플랜(기획안 작성)을 통해 모둠 중심의 문제해결학습 과정을 운영한다.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로 구성하는 것이 보다 융합적 주제

를 발굴하고, 다방면으로 문제를 분석하며, 문제 해결 전략을 도출하여 문제 해결 전략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전공이 같거나 비슷할 경우에는 전공 지식을 깊이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수업의 과정은 다음 그림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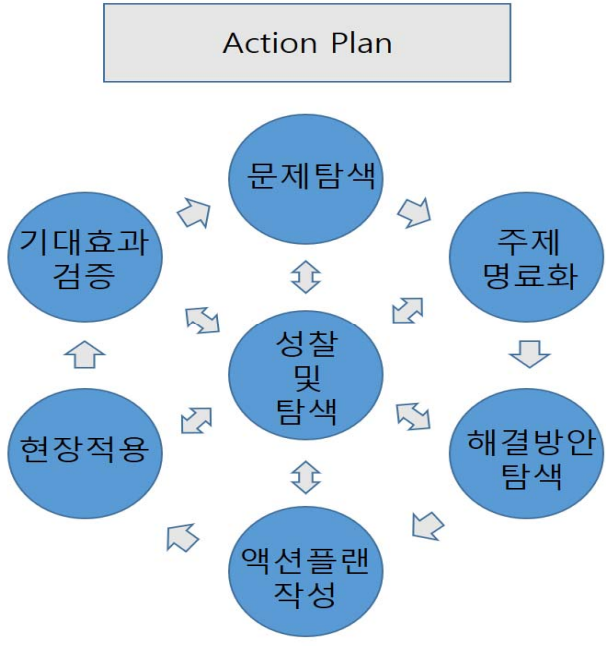

〈그림1〉 액션 플랜 전략

다음은 토목공학과와 건설환경공학과 학생들이 액션플랜을 제작한 사례이다.

목차

- 싱크 홀의 정의
- 우리나라의 싱크 홀
- 싱크 홀의 사례
- 싱크 홀의 다양한 예방 방법

싱크 홀이란 무엇인가?

- 광의적인 개념: 지반침하의 한 형태로 지반 내 공동(Cavity)이 발생하여 표층지반이 갑작스럽게 가라앉으면서(Sink) 지반에 발생된 구멍(Hole)

- 이해하기 쉬운 개념: '가라앉다'는 뜻의 '싱크(sink)'와 '구멍이(hole)'가 합쳐진 글자로, '가라앉아 생긴 구멍'

싱크 홀의 구분

자연적 원인에 의한 싱크 홀

인위적 요인에 의한 싱크 홀

도심지 지반 함몰로 주제를 정하게 된 계기

최근 발생현황

도심지 싱크 홀 지역별 분포비율

자연적으로 지하 매설물이 많고 복잡한 도심부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

도심지 지반 함몰의 인위적 요인

㉠ 상하수도의 노후화와 파손으로 인해 누수로 흙이 유실되게 되면서 갑자기 생기게 지반 함몰

㉡ 지하구조물 건설 중 관리 부실에 의한 지반 함몰

㉢ 지하수 변화에 의한 지반 함몰

상하수도 노후화의 의한 지반 함몰 사례

- 40년 가까이 된 [illegible] 창원의 싱크 홀

지하 구조물관리 부실에 의한 지반 함몰 사례

- 지하철 터널 공사 과정에서 생긴 석촌동 지반 함몰

지하수 변화에 의한 지반 함몰 사례

- 지반 굴착 공사 중 임시 흙막이 벽체 설치가 부실하여 토사 및 지하수 유실에 의해 발생한 영종하늘도시 지반 함몰

지반 함몰에 대응 하기위한 과학 기술

비파괴 물리 탐사

장점

- 도심의 도로의 포장을 손상시키지 않고 탐사를 수행한다.

단점

ⓐ심도가 얕다.

ⓑ지표면에 인공구조물이 존재할 경우 탐사결과 신뢰도는 떨어진다.

선진국의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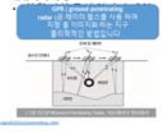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지반 함몰에 대한 제도

우리나라

- 3D를 기반으로 통합한 '3D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이다.
- 굴착 공사와 관련된 안전관리 강화, 안전기준 강화 등이 추진예정이다.

선진국

- 일반인에게 대응에 대한 홍보와 건축기준과 등급 기준 마련한 후 이 기준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규정한다.

미국의 지반 함몰 예측 기술

- 미국 항공우주국(NASA)는 항공기시스템과 인공위성에서 수집된 레이더 자료를 이용한 레이더간섭기법(ISAR, Interferometric Synthetic Aperture Radar)을 통해 싱크 홀을 예측하는 기술을 활용한다.

→실제로 이를 이용해서 싱크 홀의 발생을 한달 전에 예측한다.

지반 함몰 방지를 위한 6가지 방법 • 도시에 분포하고 있는 주요 건물 및 지하 매설 관망 밀도 교통량 등 통합 정보를 활용하여 도심지 싱크홀 위험 정도 작성한다. • IoT를 접목한 기술로 모니터링과 관리체계를 개발한다.	

4. 맺음말

글쓰기 교육이 교양교육의 영역에서 핵심역량을 함양하고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액션플랜을 활용한 교육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 수업의 방법은 도구적 실용성을 기반으로 한 글쓰기 수업이지만 모둠원들의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탐구 및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주체적인 앎으로서의 지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Sen의 잠재적 접근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지식을 강조하면서도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고 개인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성찰적 글쓰기”를 성취할 수 있는 접근법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김광민, 「역량기반(competency-based) 교육의 매력과 한계」, 『도덕교육연구』 20(2), 한국도덕교육학회, 2009, 171~197쪽.

김지현, 「대학 역량기반 교육혁신 담론의 교육학적 조건」, 『교육원리연구』 15(1), 한국교육원리학회, 2010, 87~126쪽.

손민호, 「기능주의 담론의 해체 가능성: 따뜻한 역량을 위한 교육과정 거버넌스 메타포 탐색」, 2014년 춘계학술대회, 한국교육과정학회, 2014.

손민호, 조현영, 「탈기능주의 교육과정 모형으로서의 아이덴티티 메타포: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대안적 설계」, 『교육과정연구』 32(2), 한국교육과정학회, 2016, 141~160쪽.

손종현, 「대학 교양교육체제 개편의 관점과 실천논리」, 『교육철학』 52, 한국 교육철학회, 2014, 137~170쪽.

신득렬, 『교육철학』, 서울: 학문사, 1984.

윤정일, 김민성, 윤순경, 박민정, 「인간 능력으로서의 역량에 대한 고찰: 역 량의 특성과 차원」, 『교육학연구』 45(3), 한국교육학회, 2007, 233~260쪽.

이은미, 『듀이의 경험 개념에 비추어 본 역량의 총체성』,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BK21 역량기반 교육혁신 연구사업단, BK21 핵심역량 연구센터, 역량기반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2010, 157~169쪽.

정윤경, 「아마티야 센(Amartya Sen)의 잠재가능성 접근(capability approach)과 교육」, 『교육사상연구』 29(3), 한국교육사상연구회, 2015, 129~155쪽.

Sen, A, *On ethics and economics*, Blackwell publishers, 1987.

Sen, A, *Development as freedo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도구적 실용성의 가치에 점철되어 있는 교양교육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교양교육 본연의 인간 중심 교육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서의 글쓰기 교육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교양교육에서 글쓰기 교과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시대 흐름에 맞는 교양교육과정의 수립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액션플랜(Action Plan)을 제안하였다. 전문 지식을 함양하고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주체적 앎으로서의 글쓰기 역량을 함양하고 강화하기 위한 방법이다.

액션플랜은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탐색하고 정보를 수집하여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모둠원들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이끌어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의 실험을 거쳐 기대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한다.

주제어● 교양, 교육, 글쓰기, 핵심역량 강화, 액션플랜(Action Plan)

Abstract

A Study on Writing Education for Core Competencies : Focused on Liberal education

Cha, Sun-Jeong

In this study, we tried to understand the problems of the liberal arts education which is emphasized on the value of instrumental practicality and to find a way of writing education as the purpose of recovering the human - centered education of liberal arts education.

In order to activate the writing subject in the liberal arts educa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liberal arts curriculum suitable for the current era, and proposed an action plan as an alternative. It is a method to cultivate expert knowledge and utilize expert knowledge to cultivate and strengthen writing competence as subjective knowledge.

The Action Plan utilizes expertise to navigate problems, collect information, find clues to problem solving, and communicate with the rest of the team to solve problems and then draw simulated experiments to draw out the expected effects.

Keyword ● Liberal education, Education, Writing, Core Competencies , Action Plan

▌논문투고일 : 2019. 04. 20. ▌심사완료일 : 2019. 05. 12 ▌게재확정일 : 2019. 05. 14

장애와 보조기기: 삶의 의미

오 인 근* · 김 동 기**

목차

1. 문제제기
2. 장애인보조기기 관련 건강보험제도 주요내용 및 급여지급 현황
3. 장애인보조기기 건강보험 급여 실태조사 결과
4. 결론 및 제언: 장애와 보조기기, 삶의 의미

1. 문제제기

장애인의 사회참여증가와 사회통합이 가속화되면서 장애인의 자립적인 생활 성취에 기여하는 중요한 도구 중 하나인 장애인 보조기기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이웃과 교류하고 교육과 직업훈련을 받으며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보조공학 기술의 발달에 의해 개발되는 각종 보조기기들은 장애인들로 하여금 보다 원활하게 이동을 하거나 일상생활의 신변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의사소통 능력을 획득하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환

* 침례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제1저자)
**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교신저자)

경적인 장애물을 극복하며 스스로 자립하고 생활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보조수단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이용복 외, 2010). 이처럼 보조기기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중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자립적인 삶에 매우 긍정적이면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내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그것이 내 삶에 구현되는 데 있어서 장애인보조기기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생활환경, 욕구, 장애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장애인에게 적합한 보조기기가 일차적으로 지원될 수 있어야 하며, 더 나아가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지난 2005년은 장애인보조기기 제도 역사상 매우 의미 있는 해였다. 왜냐하면, 장애인 당사자들과 장애인단체들의 연대운동에 의해 드디어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가 건강보험 보조기기 보험급여 품목으로 확대가 된 해이기 때문이다.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보험급여 품목 확대를 위해 2003년부터 추진연대를 결성 및 이끌어 온 장애인단체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하지만,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지금 장애인보조기기를 둘러싼 장애인의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 단적인 예로, 2005년에 전동휠체어의 급여기준액과 내구연한을 각각 209만원과 6년으로, 전동스쿠터는 각각 167만원과 6년으로, 수동휠체어는 각각 48만원과 5년으로 결정했는데, 이것이 15년째 동결이다. 지난 15년 동안의 물가상승률, 건강보험료, 장애인의 사회참여율, 경제상황 등은 매우 빠른 속도로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보조기기 급여기준액과 내구연한은 변동이 없다. 이와 같은 정책과 현실 간의 괴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이 보건복지부(2017)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 고스란히 드러났다. 본 조사에 의하면, 장애인보조기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구입하지 않은 주된 이유를 확인한 결과, '구입비용 때문에'가 전체의 55.0%로 가장 높아 보조기기 구입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가장 핵심적인 이유임을 알 수 있

다. 또한, 보조기기 사용 시 불만족 이유로 '내구성이 약해서'가 48.3%로 가장 높았고, '가격이 비싸서' 16.4%, '크기, 무게, 디자인이 별로라서' 15.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보조기기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확충과 보조기기의 내구성 등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강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장애인의 욕구와 정책현실 간에는 괴리가 큼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욕구와 정책현실 간의 괴리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장애인의 주체적인 자립생활과 완전한 사회참여에 일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보조기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의 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보험급여 현실화 방안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고자 한다.

2. 장애인보조기기 관련 건강보험제도 주요내용 및 급여지급 현황

1) 주요내용

(1) 개념 및 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의하면, "장애인보조기구"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義肢)·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조기기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 건강보험법 제51조에 의해, 건강보험공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보조기기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할 수 있다.

(2) 일반원칙

건강보험보조기기 보험급여기준 등에 대한 일반원칙은 건강보험시행규칙 제26조 1항에 관련된 별표 7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첫째, 보조기기로서, 의지(義肢)·보조기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의지·보조기 기사가 제조·수리한 것이어야 하고,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허가받은 것이어야 하며, 자세보조용구는 공단이 정하는 품질 및 안전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 밖의 보조기기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제조·수입 또는 판매된 것이어야 한다.

둘째, 보조기기 중 보청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자세보조용구는 공단에 등록된 품목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자세보조용구를 등록하려면 보험급여 대상으로서의 적정성, 적정가격 등에 대한 평가(이하 "급여평가"라 함)를 거쳐야 한다.

셋째, 의지·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보청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자세보조용구에 대해서는 공단에 등록한 보조기기 업소에서 구입한 경우에만 보험급여를 한다.

넷째, 보조기기는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에 관계없이 같은 보조기기의 유형별로 내구연한(耐久年限) 내에 1인당 한 번만 보험급여를 한다.

다섯째, 진료담당 의사가 훼손, 마모 또는 장애인의 성장·신체변형 등으로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내라도 보험급여를 할 수 있다. 다만, 보험급여 대상 소모품은 제외한다.

여섯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는 해당 보조기기의 기준액, 고시금액(보건복지부장관이 공단의 급여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제품별로 고시하는 금액), 실구입금액 중에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자세보조용구는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밖의 보조기기는 기준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다.

일곱째,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수동휠체어는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제한된 경우에만 보험급여를 한다.

여덟째,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는 지체, 뇌병변, 심장 및 호흡기 장애인만, 자세보조용구는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만 보험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아홉째, 보조기기 소모품 중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에 대한 보험급여는 해당 보조기기를 구입한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때부터 지급한다.

열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그 장애인 등록 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자세보조용구는 제외하며, 해당 장애와 관련하여 해당 과목 전문의가 발행한 보조기기처방전에 따라 구입한 것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도 보험급여를 한다.

(3) 보험급여대상 장애인보조기기의 유형 기준액 및 내구연한

건강보험급여 품목인 장애인보조기기 유형은 총 63개로 팔의지, 다리의지, 팔보조기, 척추보조기, 골반보조기, 다리보조기로 의지·보조기에 해당하는 유형과, 교정용 신발류, 그 밖의 보조기기 및 소모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팔의지는 미관형과 기능형으로, 다리의지는 일반형과 실리콘형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예를 들면, 팔의지는 유형에 따라 기준액이 12만원부터 147만원까지, 내구연한은 1년부터 4년까지 다양하며, 다리의지의 경우도 유형에 따라 기준액이 22만원부터 227만원까지, 내구연한은 1년부터 5년까지 다양함을 알 수 있다(건강보험 시행규칙 '제607호' 「별표 7」).

(4) 장애인전동보조기기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결정가격을 고시하게

되어있는데, 전동휠체어는 30개 제품, 전동스쿠터는 27개 제품이 고시되었다. 그런데 전동휠체어의 경우 최소 120만원에서 최대 1398만원의 가격대가 존재하며 평균 가격은 약 353만원으로 나타났고, 전동스쿠터의 경우 최소 148만원에서 최대 277만원의 가격대가 존재하며 평균 가격은 193만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동휠체어는 급여기준액이 불과 209만원, 전동스쿠터는 불과 167만원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고가의 전동보조기기를 구입함에 있어서 구입비용을 고스란히 장애인 당사자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면, 전동휠체어 평균가격 353만원은 전동휠체어 보험급여 기준 209만원의 90% 지원금액인 188만원보다 187% 높은 금액으로 장애인은 평균적으로 165만원을 고스란히 부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5) 급여비용 청구 및 사후관리

보조기기 구입가의 전액을 장애인이 부담한 후 건강보험공단에 고시가격, 기준금액, 실구입액 중 최저가의 90%를 청구하거나 또는 구입가의 10%를 본인이 부담한 후 나머지 90%를 보조기기 제작(판매)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한편, 보조기기 사후관리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보조기기 지급 후 장애인의 적정사용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규정위반 여부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수급자 및 업체를 대상으로 부당청구내역에 대해 환수조치를 실시할 수 있으며, 부당청구 업체의 경우 1차 취소예정통보, 2차 업소등록 취소의 단계를 밟을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09년부터 국립재활원을 통해 '장애인보조기구 사례관리 서비스 사업'을 실시하면서 그 일환으로 2010년 이후 대구, 부산, 대전, 광주, 경기, 충북, 인천, 경남, 제주, 전북 등 전국 10개소에 '보조기기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다. 즉, 2019년 4월 현재 국립재활원 내 중앙보조기기 센터를 포함하여 전국에 11개의 센터가 설치 및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은 보조기기센터는 정보제공, 개조 및 제작, 구매 전 체험, 보조기

구 교부사업, 보조기구 수리 등의 필수사업과 서비스 모델개발, 장애유형별 서비스 사례 발굴, 보조기구 영역별 매뉴얼 개발 등의 특화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국립재활원 홈페이지, 2019.3.20일 검색). 따라서 일차적으로 보조기구가 필요한 장애인은 이와 같은 보조기기센터를 방문하여 본인에게 필요한 그리고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를 얻고 이용할 수 있다.

2) 건강보험 평균보험료 및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지급 현황

(1) 1인당 평균건강보험료

2005년 이후 2013년까지 연도별 1인당 평균건강보험료를 분석한 결과, 2005년 대비 2013년 건강보험료가 직장은 가입자 기준으로 1.74배, 지역은 세대 기준으로 1.6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직장	가입자 기준	52,956	57,092	62,430	69,169	70,250	73,399	82,802	89,028	92,565
지역	세대 기준	46,871	49,688	55,054	61,982	61,902	67,168	72,139	75,209	77,783

[표 1]연도별 1인당 평균건강보험료 (단위: 원)

(2) 장애인보조기기 급여현황

지난 5년 동안 장애인보조기기 급여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343억원, 2010년 289억원, 2011년 272억원, 2012년 274억원, 2013년 323억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평균적으로 약 300억원 내외 정도의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가 지급됨을 알 수 있다. 한편, 2013년 기준 지급건수는 71,350건, 지급인원 수 63,743명, 지급금액 약 323억원으로 나타나, 2013년도 기준 장애인 1인당 평균 지급금액은 약 50만 6천원으로 나타났다.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장애인 보조기기	건수	77,106	66,132	68,125	64,407	71,350
	금액(A)	343	289	272	274	323

[표 2] 장애인보조기기 급여현황 (단위 : 건, 억원)

(3) 장애유형별, 품목별 급여현황

지난 5년 동안 장애유형별, 품목별 급여현황을 살펴보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휠체어, 다리의지 및 보청기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 동안 5가지 장애인보조기기가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평균비율[1]을 살펴보면, 전동스쿠터가 19.46%, 전동휠체어가 16.37%, 보청기가 15.99%, 휠체어가 15.42%, 다리의지가 11.96%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5가지 장애인보조기기가 차지하는 평균적 비율이 전체 급여에서 약 79.2% 정도로 많은 비율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구분	분류	2009		2010		2011		2012		2013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장애 유형	합계	77,106	34,287	66,132	28,902	68,125	27,180	64,407	27,362	71,350	32,306
지체, 뇌병	전동휠체어	4,078	6,830	3,236	5,438	2,601	4,366	2,197	3,621	2,578	4,312
	전동스쿠터	4,499	6,031	3,390	4,545	3,159	4,240	4,376	5,828	6,387	8,562
	휠체어	13,820	5,230	11,584	4,407	10,839	4,133	11,487	4,383	13,049	4,991

1) 5년 동안 개별 보조기기 금액의 합/5년 동안 전체 급여의 합

변	다리의지	2,753	3,563	2,690	3,413	2,766	3,511	2,811	3,617	2,939	3,853
	다리보조기	8,589	2,519	8,140	2,402	8,207	2,414	7,887	2,326	8,066	2,424
	맞춤형 교정용신발	10,948	1,928	8,881	1,566	9,821	1,731	10,094	1,779	11,147	1,969
	팔의지	1,417	569	1,319	512	1,178	435	1,148	457	1,140	426
	척추보조기	1,440	389	1,153	312	824	232	777	218	759	208
	팔보조기	784	89	637	74	655	77	696	78	686	80
	지팡이	720	11	476	7	331	5	342	5	763	13
	골반보조기	65	7	42	4	32	3	52	5	29	3
	목발	100	1	105	1	98	1	79	1	87	1
	자세보조 용구	-	-	-	-	-	-	-	-	28	29
시각	의안	2,466	593	2,297	563	2,230	553	2,102	522	2,022	501
	저시력안경	1,253	98	1,089	85	903	71	841	66	889	70
	돋보기	300	22	293	21	212	16	190	14	245	19
	콘텍트렌즈	103	6	94	5	61	4	73	4	57	3
	망원경	36	3	32	2	30	2	20	2	17	1
	흰지팡이	243	3	317	3	212	2	181	2	183	2
청각	보청기	23,323	6,327	20,176	5,478	15,866	4,308	13,709	3,716	15,368	4,174
언어	인공후두	169	68	153	61	121	49	111	45	120	48
기타	전동보조기 기전지	-	-	28	3	7,979	1,027	5,234	673	4,791	617

[표 3] 장애유형별, 품목별 급여현황 (단위 : 건, 백만원)

(4) 연도별 건강보험급여액 대비 장애인보조기기 급여 현황

지난 2005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건강보험급여액 대비 장애인보조기기가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한 결과, 최근 들어 갈수록 비율이 작아지는 경향을 보여 0.1%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강보험급여 항목증가 및 수가 향상으로 인해 건강보험 총급여액이 큰 단위로 증가하는 반면 장애인보조기기는 300억원 내외로 유사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구분	건강보험 총급여액(A)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액(B)	비율(B/A)
2005	183,659	217	0.12
2006	214,392	380	0.18
2007	245,755	615	0.25
2008	263,798	441	0.17
2009	299,697	343	0.11
2010	337,962	289	0.09
2011	361,890	272	0.08
2012	357,146	274	0.07
2013	396,328	323	0.08

[표 4] 연도별 건강보험급여액 대비 장애인보조기기 급여 현황
(단위 : 억원, %)

(5) 장애인보조기기 품목별 내구연한 내 재지급 건수 및 금액

진료담당 의사가 훼손, 마모 또는 장애인의 성장·신체변형 등으로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내라도 보험급여를 할 수 있는 데, 이처럼 내구연한 내 재지급 건수 및 금액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재지급 건수가 매우 희박함을 알 수 있다. 가장 급여량이 많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휠체어, 보청기를 대상으로 재지급 건수를 살펴보면, 전동휠체어는 2011년 19건, 2012년 26건, 2013년 10건으로 나타났고, 전동스쿠터는 각각 15건, 40건, 18건으로, 휠체어는 302건, 327건, 184건으로, 보청기는 479건, 356건, 154건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수치가 의미하는 바를 좀 더 분석해 보면, 예를 들면 전동휠체어의 경우 내구연한이 6년이기 때문에 2011년에 재지급을 받았다는 것은 2006년부터 2010년 사이에 전동휠체어를 신청 및 지급받은 장애인 중에서 재지급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표 5〉에 의하면 전동휠체어의 경우, 2009년과 2010년 각각 약

4천건과 3천건의 지급건수가 발생했는데, 자료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없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년도 별로 최소 3천건만 잡아도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약 1만 5천건의 전동휠체어 급여가 지급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 중에서 논리를 간소화시켜 간단히 말하면 2011년 19건의 재지급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현실에서 얼마나 재지급 사례가 인정받기 힘듦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를 위해서 실시된 실태조사에서는 장애인들이 전동휠체어의 경우 내구연한을 3년이 최적이라고 주장했는데, 그 사유가 잦은 고장과 이용하는 장애인의 신체변형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잦은 고장과 신체변형에 대해서 현실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분위기임을 알 수 있다.

유형	2011		2012		2013	
	지급 건수	지급금액	지급 건수	지급금액	지급 건수	지급금액
휠체어	302	116,022,800	327	125,455,120	184	1,756,000
전동휠체어	19	31,768,000	26	43,285,500	10	6,456,600
전동스쿠터 (Moped)	15	20,123,500	40	53,022,700	18	3,934,700
보청기	479	129,638,000	356	95,943,600	154	41,836,000

[표 5] 장애인보조기기 품목별 내구연한 내 재지급 건수 및 금액
(단위: 건, 원)

3. 장애인보조기기 건강보험 급여 실태조사 결과

1) 조사대상자 및 자료수집 방법

'장애인보조기기건강보험급여현실화추진연대' 참여단체 9개 단체[2)]

회원 중 조사시점에 보조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회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9개 회원단체를 통해 집합조사, e-mail 조사, 개인면접 조사 등의 방식을 활용하여 2014년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조사를 실시하여, 총 908개 설문지가 회수되었고, 이 중 응답이 불성실한 20개를 제외하고 888개의 설문지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2) 조사내용 및 자료분석 방법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제도에 대한 평가, 보조기기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보조기기 급여 현황 및 욕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통계패키지를 활용하여 빈도분석, 기술분석을 실시하였다.

3) 분석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첫째, 성별은 남성 568명(67.5%), 여성 274명(32.5%)로 남성이 약 2배 이상 많이 조사되었다. 둘째, 연령대는 30대 235명(27.4%), 40대 227명(26.4%), 50대 203명(23.6%) 순으로 조사되었다(평균 연령≒45세). 셋째, 장애유형은 지체장애가 587명(69.6%)으로 가장 많았고, 뇌병변 장애가 217명(25.7%)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장애등급은 1급이 528명(63.5%), 2급이 182명(21.9%)으로 중증장애인이 전체의 85.4%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직업은 무직이 444명(54.2%)으로 가장 많았다. 여섯째, 월평균 소득은 50만원 미

2)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 한국장애인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척수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정드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

만이 279명(37.8%)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이 227명(30.8%)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빈곤층 유형을 살펴보면, 기초수급자 278명(69.2%), 차상위 계층 124명(30.8%)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표 6〉과 같다.

변수	구분	빈도(%)	구분	빈도(%)
성별(n=854)	남성	568(67.5)	여성	274(32.5)
연령(n=859) (M≒45.3세)	20대	63(7.3)	30대	235(27.4)
	40대	227(26.4)	50대	203(23.6)
	60대	84(9.8)	70대 이상	47(5.5)
장애유형 (n=843)	지체	587(69.6)	뇌병변	217(25.7)
	시각	18(2.1)	청각	8(0.9)
	지적	6(0.7)	기타	7(0.8)
장애등급 (n=832)	1급	528(63.5)	2급	182(21.9)
	3급	86(10.3)	4급	17(2.0)
	5급	13(1.6)	6급	6(0.7)
직업 (n=819)	사회복지사	63(7.7)	사무원	58(7.1)
	소장,센터장	43(5.3)	동료상담가	49(6.0)
	운동선수	34(4.2)	학생	19(2.3)
	기타	109(13.3)	무직	444(54.2)
월평균 소득 (n=738)	50만원 미만	279(37.8)	50-100만원 미만	227(30.8)
	100-300만원 미만	195(26.4)	300-500만원 미만	24(3.3)
	500만원 이상	13(1.8)		
빈곤층	기초수급자	278(69.2)	차상위 계층	124(30.8)

유형(n=402)				

[표 6]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 건강보험 장애인 보조기기 제도의 건강권에 대한 평가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제도의 건강권에 대한 평가(5점 척도)[3]를 충분성, 접근성, 수용성 및 서비스 질 차원에서 분석한 결과, 충분성, 접근성, 수용성 및 서비스 질 모두 2.5점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평균≒2.35점). 즉, 조사대상자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보험 장애인 보조기기 제도가 수급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개별 문항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충분성의 경우,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 서비스 종류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해 2.40점으로 나타났고, 접근성의 경우, "서비스를 원하는 장애인이 공평하고 차별 없이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비차별성)는 2.47점, "서비스를 원하는 장애인이 불편하지 않고 이해하는데 어려움 없이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서비스 이용 할 때의 신청서류, 신청방법, 문의 등)"(물리적 접근성)는 2.44점, "서비스를 원하는 장애인이 적당한 가격에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비스 이용 할 때의 본인부담금 등)"(경제적 접근성)는 2.14점, "서비스를 원하는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 서비스와 보조기기 업체에 대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보접근성)는 2.36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접근성의 경우, 경제적 접근성에 대해서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수용성의 경우, "장애인들이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 서비스를 이용

3) 1점= 전혀 아니다, 2점= 아니다, 3점= 그저 그렇다, 4점= 그렇다, 5점=매우 그렇다

할 때, 장애인의 생활 환경과 욕구 및 의견을 충분히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는 2.29점, 마지막 서비스 질의 경우, "서비스를 원하는 장애인의 생활환경권과 건강권을 담보할 정도의 질적으로 우수한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는 2.29점으로 나타나 수용성과 서비스 질 또한 충분성과 접근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요컨대, 현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대상자들이 전반적으로 현 제도가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표 7〉과 같다.

영역		문 항	평균	표준편차
충분성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 서비스 종류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조기기 종류 등)	2.40	1.03
접근성	비차별성	서비스를 원하는 장애인이 공평하고 차별없이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47	1.03
	물리적 접근성	서비스를 원하는 장애인이 불편하지 않고 이해하는데 어려움 없이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서비스 이용 할 때의 신청서류, 신청방법, 문의 등)	2.44	1.04
	경제적 접근성	서비스를 원하는 장애인이 적당한 가격에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비스 이용할 때의 본인부담금 등)	2.14	1.08
	정보 접근성	서비스를 원하는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 서비스와 보조기기 업체에 대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36	1.00
수용성		장애인들이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 서	2.29	.99

	비스를 이용할 때, 장애인의 생활환경과 욕구 및 의견을 충분히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비스 질	서비스를 원하는 장애인의 생활환경권과 건강권을 담보할 정도의 질적으로 우수한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29	.97
전 체		2.35	.83

[표 7]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제도의 건강권에 대한 평가 (n=886)

(3)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제도의 인권기반 접근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가 장애인의 인권에 기반하여 설계 및 실행되고 있는지에(5점 척도[4])에 대해 분석한 결과, 전체 평균이 2.69점으로 나타나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제도가 장애인의 인권에 기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 서비스가 장애인당사자들이 정책 개발에 같이 참여하여 만들어진 제도라고 생각하십니까?"가 2.43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그 다음이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 서비스는 정책개발 단계에서 학계 및 관련 장애계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투명성 있는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제도라고 생각하십니까?"가 2.50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조사대상자들은 건강보험제도 정책 개발단계에서 장애인 당사자, 학계, 관련 단체 등 이해당사자들의 참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 서비스가 장애인에 대한 건강권과 자립생활 보장을 인식하고 이를 확대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라고 생각하십니까?"가 2.8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이 또한 낮은 수치로서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제도가 인권에 기반하여 접근한 정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즉, 현재 건

4) 1점= 전혀 아니다, 2점= 아니다, 3점= 그저 그렇다, 4점= 그렇다, 5점=매우 그렇다

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제도가 장애인의 건강권과 자립생활을 보장하고 확대하는 데 있어서 별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표 8〉과 같다.

문 항	평균	표준 편차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 서비스가 장애인 생활환경을 반영하여 취약집단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만들어진 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2.71	1.05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 서비스가 장애인에 대한 감수성과 존엄성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2.63	1.02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 서비스가 장애인당사자들이 정책 개발에 같이 참여하여 만들어진 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2.43	1.06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 서비스는 제도 전반에 대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는 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2.79	1.09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 서비스가 보조기기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건강과 사생활에 대한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2.84	1.09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 서비스가 장애인 건강권 및 자립생활 보장의 국가책임과 장애인 개인의 건강권 및 자립생활 보장의 균형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진 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2.70	1.06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 서비스가 장애인에 대한 건강권과 자립생활 보장을 인식하고 이를 확대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2.85	1.07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 서비스가 장애인의 보조기기 건강보험급여에 대한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의 책임을 법으로 확고하게 보장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2.71	1.04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 서비스는 정책개발단계에서 학계 및 관련 장애계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투명성 있는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2.50	1.02
전 체	2.69	.83

[표 8]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n=888)

(4) 장애인보조기기 건강보험 급여현황 및 욕구

① 주로 이용하는 보조기기 유형

주로 이용하는 보조기기 유형(1개 선택)을 분석한 결과, 전동휠체어 323명(37.8%), 수동휠체어 265명(31.0%), 전동스쿠터 115명(13.5%)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대상자가 대부분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구분	빈도(%)	구분	빈도(%)
전동휠체어	323(37.8)	전동스쿠터	115(13.5)
수동휠체어	265(31.0)	의지(팔/다리)	24(2.8)
보조기 (척추,골반,다리)	21(2.5)	교정용신발	20(2.3)
목발	26(3.0)	저시력 보조안경	5(0.6)
의안	3(0.4)	흰지팡이	23(2.7)
보청기	9(1.1)	자세보조용구	5(0.6)
기타	15(1.8)		

[표 9] 주로 이용하는 보조기기 유형(n=854)

② 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의 정보의 충분성

위에서 응답한 주로 이용하는 보조기기의 건강보험급여 기준 및 내구연한 정보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충분히 받았는지 여부를 분석한 결과, '아니오'가 588명(73.9%), '예'가 208명(26.1%)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부분의 조사대상자들은 평상시 보조기기의 급여기준 및 내구연한 정보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충분히 전달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분	빈도(%)	구분	빈도(%)
충분히 받았음	208(26.1)	충분히 받지 못했음	588(73.9)

[표 10] 정보의 충분성(n=796)

③ 주로 이용하는 보조기기의 건강보험 급여 기준 및 내구연한에 대한 인식

주로 이용하는 보조기기의 건강보험 급여기준 및 내구연한을 알고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알고 있다'가 360명(42.8%), '모른다'가 481명(57.2%)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절반 이상의 조사대상자들이 자신이 주로 이용하는 보조기기의 급여기준 및 내구연한에 대해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빈도(%)	구분	빈도(%)
알고 있다	360(42.8)	모른다	481(57.2)

[표 11] 주로 사용하는 보조기기 급여기준 및 내구연한 인식유무(n=841)

한편, 주로 이용하는 보조기기 중 가장 응답비율이 높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수동휠체어를 대상으로 급여기준 및 내구연한 인식유무에 대해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하였다. 즉,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 급여기준액과 내구연한을 직접 작성하도록 개방형 질문으로 묻고, 이를 분석하였다. 전동휠체어의 경우 급여기준액 209만원, 내구연한 6년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응답자 중 급여기준액은 84명(62.2%), 내구연한은 113명(80.7%)이 정확히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동스쿠터의 경우 급여기준액 167만원, 내구연한 6년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응답자 중 급여기준액은 5명(20.8%), 내구연한은 21명(75.0%)이 정확히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

막으로 수동휠체어의 경우 급여기준액 48만원, 내구연한 5년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응답자 중 급여기준액은 54명(60.0%), 내구연한은 85명(88.5%)이 정확히 알고 있다고 나타났다. 〈표 11〉에서 '알고 있다'고 응답한 42.8% 조차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낮은 수치의 응답자들만 자신이 주로 이용하는 보조기기의 급여기준액과 내구연한을 정확히 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조기기 유형	변수	구분	빈도(%)	구분	빈도(%)
전동 휠체어	급여기준액 (209만원)	정확히 알고 있음	84(62.2)	부정확하게 알고 있음	51(37.8)
	내구연한 (6년)	정확히 알고 있음	113(80.7)	부정확하게 알고 있음	27(29.3)
전동 스쿠터	급여기준액 (167만원)	정확히 알고 있음	5(20.8)	부정확하게 알고 있음	19(79.2)
	내구연한 (6년)	정확히 알고 있음	21(75.0)	부정확하게 알고 있음	7(25.0)
수동 휠체어	급여기준액 (48만원)	정확히 알고 있음	54(60.0)	부정확하게 알고 있음	36(40.0)
	내구연한 (5년)	정확히 알고 있음	85(88.5)	부정확하게 알고 있음	11(11.5)

[표 12] 보조기기별 급여기준액 및 내구연한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

④ 주로 이용하는 보조기기 사용기간

주로 이용하는 보조기기의 사용기간을 분석한 결과, 3년 이상 5년 미만이 284명(33.7%)으로 가장 많았고, 1년 이상 3년 미만 196명(23.3%), 5년 이상 7년 미만 155명(18.4%)으로 나타났다. 또한 7년 이상인 경우도 153명(18.1%)으로 나타났다. 현재 건강보험 급여 대상 장애인보조기기의 내구연한이 최대 6년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7년 이상인 경우가 18.1% 존재한다는 것은 위에서도 드러났듯이 대상자들이 내구연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또는 보조기기 구입 시 본인

부담금이 부담스러워서 나타난 결과로도 일정부분 해석할 수 있다고 보인다.

구분	빈도(%)	구분	빈도(%)
1년 미만	55(6.5)	1년 이상 3년 미만	196(23.3)
3년 이상 5년 미만	284(33.7)	5년 이상 7년 미만	155(18.4)
7년 이상	153(18.1)		

[표 13] 주로 이용하는 보조기기 사용기간(n=843)

⑤ 보조기기 구입 시 본인부담금

주로 이용하는 보조기기를 구매할 때 얼마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했는지를 분석한 결과, 50만원 미만이 303명(37.9%), 250만원 이상 151명(18.9%),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31명(16.4%)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0만원 이상 부담하는 경우도 전체의 약 25.9%, 100만원 이상 부담하는 경우는 전체의 45.8% 정도로 나타났다.

구분	빈도(%)	구분	빈도(%)
50만원 미만	303(37.9)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31(16.4)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98(12.3)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61(7.6)
2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56(7.0)	250만원 이상	151(18.9)

[표 14] 보조기기 구입 시 본인부담금(n=800)

한편, 보조기기 유형별 본인부담금을 분석한 결과, 전동휠체어의 경우 200만원 이상이 27.8%, 전동스쿠터는 200만원 이상이 3.8%, 수동휠체어는 200만원 이상이 42.7%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동휠체어와 수동휠체어에 대해 상당히 높은 수준의 본인부담을 부담하고 있는 대상자들이 현실에서 많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형	구분	빈도(%)	구분	빈도(%)
전동 휠체어 (n=309)	50만원 미만	102(33.0)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50(16.2)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41(13.3)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30(9.7)
	2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35(11.3)	250만원 이상	51(16.5)
전동 스쿠터 (n=104)	50만원 미만	55(52.9)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26(25.0)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12(11.5)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7(6.7)
	2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4(3.8)	250만원 이상	-
수동 휠체어 (n=253)	50만원 미만	55(21.7)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37(14.6)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34(13.4)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9(7.5)
	2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16(6.3)	250만원 이상	92(36.4)

[표 15] 보조기기유형별 보조기기 구입 시 본인부담금

그리고 빈곤계층(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보조기기 구입 시 본인부담금을 분석한 결과, 전동휠체어는 200만원 이상 부담한 경우가 전체의 24.9%, 전동스쿠터는 4.3%, 수동휠체어는 28.9%로 나타났다. 따라서 빈곤계층마저도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수동휠체어를 구입할 때 상당히 많은 규모의 본인부담을 추가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형	구분	빈도(%)	구분	빈도(%)
전동 휠체어 (n=173)	50만원 미만	64(37.0)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29(16.8)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26(15.0)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1(6.4)
	2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23(13.3)	250만원 이상	20(11.6)
전동 스쿠터 (n=69)	50만원 미만	39(56.5)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7(24.6)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7(10.1)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3(4.3)
	2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3(4.3)	250만원 이상	-
수동 휠체어 (n=83)	50만원 미만	29(34.9)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4(16.9)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11(13.3)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5(6.0)
	2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4(4.8)	250만원 이상	20(24.1)

[표 16] 빈곤계층 보조기기유형별 보조기기 구입 시 본인부담금

지금까지 분석한 주로 이용하는 보조기기의 본인부담금 정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지를 분석한 결과, '매우 그렇다' 374명(44.3%), '그렇다' 248명(29.3%)로 나타나, 전체의 약 73.6% 정도가 본인부담금 정도가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빈도(%)	구분	빈도(%)
전혀 아니다	30(3.6)	아니다	75(8.9)
그저 그렇다	118(14.0)	그렇다	248(29.3)
매우 그렇다	374(44.3)		

[표 17] 보조기기 구입 시 본인부담금이 높다고 생각한 정도(n=845)

⑥ 주로 이용하는 보조기기 내구연한의 적절성 및 적절한 내구연한

주로 이용하는 보조기기의 내구연한이 적절한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 '전혀 아니다' 204명(24.0%), '아니다' 300명(35.3%)으로 나타나 전체의 약 59.3%가 현재 자신이 주로 사용하는 보조기기의 내구연한이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구분	빈도(%)	구분	빈도(%)
전혀 아니다	204(24.0)	아니다	300(35.3)
그저 그렇다	229(26.9)	그렇다	96(11.3)
매우 그렇다	21(2.5)		

[표 18] 주로 이용하는 보조기기 내구연한의 적절성(n=850)

'전혀 아니다'와 '아니다'로 응답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내구연한을 분석한 결과, 3년이 231명(46.9%)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4년 92명(18.7%)으로 나타났다.

구분	빈도(%)	구분	빈도(%)
5년	56(11.4)	4년	92(18.7)
3년	231(46.9)	2년	69(14.0)
1년	20(4.1)	기타	25(5.0)

[표 19] 적절한 보조기기 내구연한(n=493)

한편, 보조기기별 적절한 보조기기 내구연한을 분석한 결과, 전동휠체어 3년(44.3%), 전동스쿠터 3년(49.2%), 수동휠체어 3년(57.1%)으로, 3개 보조기기 모두 3년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기기 유형	구분	빈도(%)	구분	빈도(%)
전동휠체어	5년	18(7.8)	4년	59(25.7)

(n=230)	3년	102(44.3)	2년	34(14.8)
	1년	5(2.2)	기타	12(5.2)
전동스쿠터 (n=63)	5년	10(15.9)	4년	15(23.8)
	3년	31(49.2)	2년	5(7.9)
	1년	2(3.2)	기타	-
수동휠체어 (n=140)	5년	19(13.6)	4년	15(10.7)
	3년	80(57.1)	2년	17(12.1)
	1년	3(2.1)	기타	6(4.3)

[표 20] 보조기기 유형별 적절한 보조기기 내구연한

마지막으로, 3년이라고 응답한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 개방형질문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대부분 3년 정도가 지나면 잔고장과 마모가 심해져서 수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체형이 변형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 정해져 있는 내구연한이 장애인들의 신체적 상태 그리고 보조기기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결론 및 제언: 장애와 보조기기, 삶의 의미

지금까지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주요 내용, 지급현황 및 이용자 실태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위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정책과 장애인의 욕구 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장애인보조기기 급여기준액, 내구연한의 비현실성이 가장 시급한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2005년도 전동휠체어 급여기준액과 내구연한이 거의 10년이 지난 2014년 현재 동일하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오히려 문제의 차원을 떠나서 일종의 직무유기라고 말해도 크게 틀리지 않다.

장애인 보조기기제도가 존재하는 목적은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그리고 일상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

능케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목적에 합치하는 건강보험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현실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및 조치에 대해 살펴보았다. 첫째, 일차적으로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제도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 및 장애인당사자 참여를 기반으로 한 정책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장애인보조기기 이용자를 대상으로 현재 보조기기 제도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과 장애인의 욕구를 실태조사를 통해 진단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를 기반으로 적정 급여기준액, 내구연한 및 대상품목 등에 대한 연구결과를 도출하여 향후 장애인보조기기 제도 개선방안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이와 같은 기초자료를 토대로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제도의 급여기준액, 내구연한 및 대상품목 등에 대한 확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정확한 소요예산 추계와 실효성 있는 재정확보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장애인보조기기 급여기준액을 평균구입 비용으로 인상하고, 내구연한을 보조기기 마모 및 고장특성, 장애인의 신체적 변형 등을 고려하여 단축시킬 때 예산이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더 소요되며, 이것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이와 같은 실태조사, 소요예산 추계 및 재정확보방안 마련 등은 현실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전에 현재의 제도를 일부분 수정함으로써 장애인보조기기 제도의 기능을 현실화시키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현재 장애인의 소득수준에 따라서 보조기기 본인부담 비율을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대상자로만 이원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접근방법을 좀 더 장애인의 소득수준에 맞춰서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장애인 활동지원제도가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을 세분화시킨 것처럼 통상적인 본인부담율 20%

를 20%이하 0%초과 사이에서 좀 더 세분화시켜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좀 더 본인부담율을 낮춰주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건강보험제도 내에도 내구연한 내 재지급제도가 실행되고 있지만, 현실에서 이와 같은 제도를 이용하는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내구연한 내 재지급 제도에 대한 기준을 완화시켜 보조기기 훼손, 마모 및 장애인의 성장 및 신체변형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보조기기를 교체할 필요가 발생한 대상자에게 좀 더 접근권을 넓게 열어주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사례관리 시스템과 보조기기 센터의 확대·구축이 필요하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현재 보조기구서비스 관련 장애인의 가장 큰 욕구는 개인별 특성에 맞는 상담 또는 안내서비스이다. 보조기기 센터는 사용자 개개인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보조기기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공급자 중심으로 보조기구를 공급해주는 방향으로만 흘러가고 있다. 장애인의 입장에서는 본인에게 적합한 보조기구의 유형 및 종류, 그리고 지원받을 수 있는 경제적 수준, 제품의 품질 향상 및 고장으로 인해 필요한 사후관리 등 보조기구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 및 관리를 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김지해 외, 2017).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와 같은 체계적인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물론 전국에 10개 보조기기 센터가 설치 및 운영되고 있지만, 이와 같은 전달체계는 접근성 측면에서 제약이 있으므로 광역자치단체 17개소로 확대·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향후 기초자치단체에서 체계적인 사례관리가 실시될 수 있는 별도의 전달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보조기구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중앙부처로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및 국가보훈처, 이상 5개 부처가 있으며, 이들은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 장애인고용

공단, 정보화진흥원, 보훈병원 등 산하기관들을 통해 개별적으로 보조기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유사 또는 동일한 대상자에게 보조기구 지급 및 지원이라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들 5개 부처 간에는 업무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비효율적인 서비스 제공, 예산의 낭비, 대상자의 누락 및 중복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이들 5개 부처들 간의 역할과 기능을 조정해 줄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없기 때문이다. 중앙부처간의 업무연계 및 협조가 원활하지 않다면 일선 전달체계에서의 연계단절, 대상자 누락 및 중복, 공급자 위주의 서비스 제공 등의 문제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무총리 산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실무위원회 성격으로 가칭 '장애인보조기구 위원회'를 조직 및 상설화시켜서 장애인보조기구서비스를 통합 및 연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케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건강보험법 법률, 제16366호.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07호.

국립재활원 홈페이지(www.nrc.go.kr. 2019년 3월 20일 검색).

김동아, 정승민, 손소희, 『2017년 보조기기 실태조사』,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 2017.

김지해·채승진·권오성, 「장애인 보조기기 디자인 관련 법률, 규격 및 지침 비교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3권 1호, 2017, 123~133쪽.

보건복지부,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이용복 외, 『2009 장애인보조기구 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기구·서비스 기초실태 및 수요 추계 연구(Ⅱ)』, 2010.

장애인복지법 법률, 제162586호.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욕구와 정책현실 간의 괴리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장애인의 주체적인 자립생활과 완전한 사회참여에 일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보조기기에 대한 심층분석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양적조사를 병행하였다. 분석결과, 건강보험 보조기기 사업의 경우 지난 15년 동안 지원기준과 내구연한이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양적조사 결과,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제도의 건강권에 대한 평가를 충분성, 접근성, 수용성 및 서비스 질 차원에서 분석한 결과, 충분성, 접근성, 수용성 및 서비스 질 모두 2.5점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보험 보조기기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건강보험 보조기기가 장애인의 삶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장애, 보조기기, 건강보험

Abstract

Disability and ancillary equipment: Meaning of life

Oh, In-Geun · Kim, Dong-Ki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practical alternative that minimizes the gap between the need for assistive devic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 reality of the policy, and to contribute to the independent living and full social participation of persons with disabled. To do this, we conducted an in - depth analysis of the health insurance aids and quantitative survey of persons with disabl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health insurance subsidiary program showed little change in the support criteria and persisting period over the past 15 years. As a result of the quantitative survey, it was found that the sufficiency, accessibility, acceptability, and quality of service did not exceed 2.5 points in terms of sufficiency, accessibility, acceptability and service quality. Therefore, satisfaction with health insurance subsidy business is very low.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ed policy alternatives for health insurance assistive devices to improve the meaning of lif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KeyWords: Disability, Ancillary Equipment, Health Insurance

논문투고일 : 2019. 04. 20. 심사완료일 : 2019. 05. 12 게재확정일 : 2019. 05. 14

완비격자를 이용한 형식개념의 소개

연 용 호*

목차
1. 서론
2. 완비격자와 형식개념
3. 완비격자와 쌍대 갈루아 커넥션
4. 맺음말

1. 서론

형식개념(Formal Concept)은 어떤 대상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위해 이용되는 외연(extent)과 내포(intent)의 개념을 논리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형식 논리의 한 도구이다. 외연이란 어떤 대상들의 집합이고, 내포는 그 대상들이 지니고 있는 특징이나 속성들의 집합을 의미 한다. 어떤 대상을 분류하거나 그에 합당한 용어를 정의할 때 유사한 속성들을 갖는 대상들을 하나의 범주로 묶어 분류하거나 그들에 합당한 용어를 설정을 하게 된다. 외연과 내포는 서로 반대로 증감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어떤 범주의 대상이 많아지면 그들이 갖는 속성들은 적어지고, 반대로 적

* 목원대학교 교양교육원 교수

용시키려는 속성이 많아지면 그 속성들을 모두 갖는 대상들은 오히려 적어지는 특징을 갖는다.

형식개념은 순수수학 문야의 흥미로운 예들을 제공할 뿐 아니라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공학, 정보이론 등 다양한 컴퓨터 응용과학의 연구 방법에 응용되고 있다. 따라서 형식개념을 생성하는 효율적인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 특히, Ko J. M. et al.과 Lai H.et al.은 퍼지, L-퍼지 및 러프집합에서의 퍼지 형식개념을 정의하고 그들의 성질에 대해 연구하였고, Jabin S.와 Kuznetsov S. O.는 기계학습법에 대한 연구에 형식개념분석기법을 이용하였다.

형식개념은 집합으로 해석될 수 있어 집합의 개념을 일반화한 격자론 및 갈루아 커넥션에 의해 매우 적절하게 표현될 수 있다. 격자이론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많이 진행되어 있는 바, 형식개념의 특성과 성질에 대한 이론을 유도하고 파악하는데 격자이론이 매우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컨텍스트와 형식개념의 정의와 이론 및 이를 일반화한 완비격자와 쌍대 갈루아 커넥션을 소개한다. 또한 쌍대 갈루아 커넥션을 갖는 완비 격자가 갖는 성질들을 조사하고, 컨텍스트 및 형식개념이 갖는 성질들과 비교하여 이들의 구조파악에 일반화된 논리적 개념이 이용될 수 있음을 알아보았다.

2. 완비격자와 형식개념

1) Chunduri R. K., Cherukuri A. K., Scalable formal concept analysis algorithms for large datasets using Spark. J. Ambient Intell. Human. Comput., 2018, pp. 1-21: Kuznetsov S. O., Obiedkov S. A., Comparing performance of algorithms for generating concept lattices, Journal of Experimental & Theoretical Artificial Intelligence, Vol 14, No. 2-3, 2002, pp. 189-216.

공집합이 아닌 부분순서집합 L 의 임의의 부분집합 $S \subseteq L$ 에 대하여 S 의 최소상계 $\vee S$와 최대하계 $\wedge S$가 L 안에 존재할 때 L 을 **완비격자** (complete lattice)라 한다.

집합 L이 완비격자이면 정의에 의해 L은 최대원소 $\vee L$과 최소원소 $\wedge L$를 갖는다. 일반적으로 완비격자 L의 최대원소를 1 또는 $\top$, 최소원소를 0 또는 $\perp$로 나타낸다.

임의의 집합 X에 대하여 X의 멱집합 2^X는 최대원소 X, 최소원소 $\varnothing$를 갖고, 임의의 $S = \{A_i \mid i \in I\} \subseteq 2^X$에 대하여 S의 최소상계와 최대하계가 각각

$$\vee S = \vee \{A_i \mid i \in I\} = \cup_{i \in I} A_i, \quad \wedge S = \wedge \{A_i \mid i \in I\} = \cap_{i \in I} A_i$$

인 완비격자이다.

집합 K가 완비격자 L의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이고, 임의의 부분집합 $S \subseteq K$에 대하여 S의 최소상계 $\vee S$와 최대하계 $\wedge S$가 K 안에 존재할 때, K를 L의 완비부분격자(complete sublattice)라 한다.

집합 K가 완비격자 L의 완비부분격자이고, $S \subseteq K$이면 S의 K에서의 최소상계 $\vee_K S$, 최대하계 $\wedge_K S$와 L에서의 최소상계 $\vee_L S$, 최대하계 $\wedge_L S$는 다음의 관계를 갖는다.

$$\vee_L S \leq \vee_K S, \quad \wedge_K S \leq \wedge_L S$$

공집합이 아닌 부분순서집합 L이 완비격자이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L이 다음의 두 성질을 만족하는 것이다.

(1) L이 최대원소 1을 갖는다,

(2) 모든 공집합이 아닌 $S \subseteq L$에 대하여 $\wedge S$가 L안에 존재한다.

완비격자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와 성질은 Davey B. A. et al.과 Gierz G. et al.에서 찾아볼 수 있다.

컨텍스트(context)는 객체들(objects)과 그들이 갖는 속성들(attributes)로 구성된다. 다음의 표1은 과일과 그들이 갖는 속성들로 구성된 한 컨텍스트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과일들과 그들이 관련된 속성

들을 각각 첫 번째 열과 첫 번째 행에 나열하고, 어떤 과일이 어떤 속성을 갖는 경우에 그 과일의 행과 그 속성의 열이 교차하는 지점에 ×로 나타내었다. 여기에 나열된 모든 과일들과 모든 속성들을 각각 집합 X와 Y로 나타낼 수 있으며, 과일과 그들이 갖는 속성을 X에서 Y로의 관계 R로 나타낼 수 있다. 즉, 관계 R은 (사과, 시다), (사과, 달다), (사과, 얇다), …, (대추, 적다)라는 순서쌍들로 구성된 곱집합 $X\times Y$의 부분집합이고, (사과, 두껍다), (배, 시다) 등은 R의 원소가 아니다. 이러한 종류의 예들은 컨텍스트라는 수학적 구조로 표현될 수 있다.

[표 1] 과일과 그들에 관련된 속성들의 관계

속성 / 객체	맛		껍질			수분	
	시다	달다	두껍다	얇다	없다	많다	적다
사과	×	×		×			×
배		×		×		×	
귤		×	×			×	
레몬	×		×			×	
딸기		×			×		×
수박		×	×			×	
대추		×		×			×

집합 X와 Y, 그리고 X에서 Y로의 관계 R로 구성된 (X, Y, R)을 컨텍스트라 하고, 집합 X의 원소를 객체, Y의 원소를 속성이라 한다.

컨텍스트의 정의에서 관계 R은 곱집합 $X\times Y$의 부분집합이고 객체 $x\in X$가 속성 $y\in R$를 가질 때 $(x, y)\in R$이다.

(X, Y, R)가 컨텍스트일 때 각각의 $A\subseteq X$와 $B\subseteq Y$에 대하여

$$A^{*}=\{y\in Y\mid (x,y)\in R \text{ for } all\ x\in A\},$$
$$B^{+}=\{x\in X\mid (x,y)\in R \text{ for } all\ y\in B\}$$

라 하면, X의 멱집합(power set) 2^{X}와 Y의 멱집합 2^{Y}사이의 함수 $*: A\mapsto A^{*}$와 $+: B\mapsto B^{+}$를 정의할 수 있다. 특히 각각의 $x\in X$와

$y \in Y$에 대하여

$$\{x\}^* = \{y \in Y \mid (x,y) \in R\},\ \{y\}^+ = \{x \in X \mid (x,y) \in R\}$$

이고, 임의의 $A, A_i \subseteq X$와 $B, B_i \subseteq Y$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한다.[2)]

(P1) $A^* = \cap_{x \in A}\{x\}^*,\ B^+ = \cap_{y \in B}\{y\}^+$,

(P2) $A_1 \subseteq A_2 \Rightarrow A_2^* \subseteq A_1^*$,

(P3) $B_1 \subseteq B_2 \Rightarrow B_2^+ \subseteq B_1^+$,

(P4) $A \subseteq A^{*+},\ B \subseteq B^{+*}$,

(P5) $A^* = A^{*+*},\ B^+ = B^{+*+}$,

(P6) $(\cup_{i \in I} A_i)^* = \cap_{i \in I} A_i^*,\ (\cup_{i \in I} B_i)^+ = \cap_{i \in I} B_i^+$,

(P7) $A \subseteq B^+ \Leftrightarrow B \subseteq A^*$.

집합 X의 멱집합의 부분집합 $\mathcal{L} \subseteq 2^X$이 다음의 성질 (I1, I2)를 만족할 때 집합 $\mathcal{L}$을 최댓값을 갖는 $\cap$-구조(topped intersection structure)라 한다.

(I1) 공집합이 아닌 $\{A_i \mid i \in I\} \subseteq \mathcal{L}$에 대하여 $\cap_{i \in I} A_i \in \mathcal{L}$

(I2) $X \in \mathcal{L}$

위에서 정의된 최댓값을 갖는 $\cap$-구조 $\mathcal{L}$은 임의의 $\{A_i \mid i \in I\} \subseteq \mathcal{L}$에 대하여 최소상계(the least upper bound)

$$\vee\{A_i \mid i \in I\} = \cap\{B \in \mathcal{L} \mid \cup_{i \in I} A_i \subseteq B\}$$

와 최대하계(the greatest lower bound)

$$\wedge\{A_i \mid i \in I\} = \cap_{i \in I} A_i$$

를 갖는 완비격자(complete lattice)이다. 여기에서 최대하계는 주어진 집합들의 교집합으로 멱집합 2^X내의 최대하계와 같지만, 최소상계

2) Davey B. A., Priestley H. A., Introduction to Lattices and Order, 2nd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pp. 68.

$\vee\{A_i \mid i\in I\}$는 2^X내의 최소상계인 $\cup_{i\in I} A_i$와 일반적으로 같지 않다.

컨텍스트 (X, Y, R)에 대하여 $A^* = B$, $B^+ = A$를 만족하는 $2^X \times 2^Y$의 원소 (A, B)를 컨텍스트 (X, Y, R)의 개념(concept)이라 하고, 개념 (A, B)의 A를 (A, B)의 외연(extent), B를 (A, B)의 내포(intent)라 한다.

컨텍스트 (X, Y, R)의 모든 개념들의 집합을 Γ라 하면

$$\Gamma = \{(A,B) \in 2^X \times 2^Y \mid A^* = B,\ B^+ = A\}$$

이고, $(A,B)\in\Gamma$이면 $B = A^*$이고 $A = B^+ = (A^*)^+ = A^{*+}$이므로 컨텍스트 (X, Y, R)의 모든 외연들의 집합 Γ_X와 모든 내연들의 집합 Γ_Y는 다음과 같다.

$$\Gamma_X = \{A\in 2^X \mid A^{*+} = A\},\ \Gamma_Y = \{B\in 2^Y \mid B^{+*} = B\}$$

또한 위의 성질 (P5)에 따르면 $A^{*+*} = A^*$, $B^{+*+} = B^+$ 이므로

$$\Gamma_X = \{B^+ \mid B \in 2^Y\},\ \Gamma_Y = \{A^* \in 2^Y \mid A\in 2^X\}$$

이고 개념의 집합 Γ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Gamma = \{(A^{*+}, A^*) \mid A\in 2^X\} = \{(B^+, B^{+*}) \mid B\in 2^Y\}$$

컨텍스트 (X, Y, R)의 모든 개념들의 집합 Γ에서 이항관계 $\leq$을

$$(A_1,B_1) \leq (A_2,B_2) \Leftrightarrow A_1 \subseteq A_2 \text{ 그리고 } B_1 \supseteq B_2$$

로 정의하면 $\leq$는 Γ에서의 부분순서관계(partial order)가 되고 $(\Gamma, \leq)$는 부분순서집합(partially ordered set)이 된다. 특히, 부분순서집합 $(\Gamma, \leq)$의 외연 집합 Γ_X는 최댓값을 갖는 $\cap$-구조로 완비격자이고 임의의 $\{A_i \mid i\in I\}\subseteq \Gamma_X$에 대하여 최소상계와 최대하계는 각각 다음과 같다.

$$\vee\{A_i \mid i\in I\} = (\cup_{i\in I} A_i)^{*+},\ \wedge\{A_i \mid i\in I\} = \cap_{i\in I} A_i$$

따라서 성질 (P6)에 의해 Γ도 완비격자이며 임의의 부분집합 $\{(A_i, B_i) \mid i\in I\}\subseteq \Gamma$에 대한 최소상계와 최대하계는 다음과 같다.

(P8) $\vee\{(A_i, B_i) \mid i\in I\} = \left((\cup_{i\in I} A_i)^{*+},\ \cap_{i\in I} B_i\right)$

(P9) $\wedge\{(A_i, B_i) \mid i\in I\} = \left(\cap_{i\in I} A_i,\ (\cup_{i\in I} B_i)^{+*}\right)$

컨텍스트와 개념에 관한 정의 및 성질들은 Davey B. A. et al.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형식논리에서의 컨텍스트와 개념은 완비격자라는 수학적 구조의 한 예이다. 또한 두 함수 $*$, $+$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특성이 이들 함수들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특히 성질 (P7)은 갈루아 커넥션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으며, 이들의 성질은 원소를 갖는 집합에 관련된 이론뿐 아니라 완비격자와 갈루아 커넥션의 이론으로 해석될 수 있다.

3. 완비격자와 쌍대 갈루아 커넥션

완비격자 L에서의 함수 $\varphi : L \to L$가 다음의 성질을 만족할 때 함수 φ를 클로저 작용소(closure operator)라 한다.

(1) φ는 증가함수이다. 즉, $x \le y$이면 $\varphi(x) \le \varphi(y)$이다.

(2) $x \le \varphi(x)$.

(3) $\varphi\varphi = \varphi$.

완비격자 L에서의 함수 $f : L \to L$에 대하여

$$Im(f) := \{f(x) \mid x \in L\},\ Fix(f) := \{x \in L \mid f(x) = x\}$$

로 정의하면 클로저 작용소 $\varphi : L \to L$에 대하여 $\varphi\varphi(x) = \varphi(x)$이므로 $Im(\varphi) = Fix(\varphi)$이다. 또한 $Im(\varphi)$는 다음의 정리에서와 같이 완비격자 L의 완비부분격자이다.

정리 3.1. 함수 $\varphi : L \to L$가 완비격자 L에서의 클로저 작용소이면 $Im(\varphi) = Fix(\varphi)$는 완비격자이고, 임의의 $X \subseteq Im(\varphi)$에 대하여 최대하계와 최소상계는 다음과 같다.

$$\wedge_{Im(\varphi)} X = \wedge_L X,\quad \vee_{Im(\varphi)} X = \varphi(\vee_L X)$$

증명. 함수 $\varphi : L \to L$가 클로저 작용소라 하자. 클로저 작용소의 정의에

의해 $1 \leq \varphi(1)$이므로 $1 = \varphi(1) \in Im(\varphi)$이다.

$X \subseteq Im(\varphi) = Fix(\varphi)$이고 $X \neq \varnothing$라 하면 $\wedge_L X \leq \varphi(\wedge_L X)$이다. 또한, 모든 $x \in X \subseteq Im(\varphi) = fix(\varphi)$에 대하여 $\wedge_L X \leq x$이고 $\varphi(\wedge_L X) \leq \varphi(x) = x$이므로 $\varphi(\wedge_L X) \leq \wedge_L X$이다. 따라서 $\wedge_L X = \varphi(\wedge_L X) \in Im(\varphi)$이다. $l \in Im(\varphi)$이 X의 하계이면 l은 또한 L안에서 X의 하계이므로 $llewedge_L X$이다. 따라서 $\wedge_L X$는 $Im(\varphi)$안에서 X의 최대하계이므로 $\wedge_{Im(\varphi)} X = \wedge_L X$이다. $1 \in Im(\varphi)$이고 $\wedge_{Im(\varphi)} X$가 존재하므로 $Im(\varphi)$는 완비격자이다.

임의의 $X \subseteq Im(\varphi)$에 대하여 $\vee_{Im(\varphi)} X = \varphi(\vee_L X)$임을 보이기 위해 $z := \vee_L X$라 하면 $\varphi(z) \in Im(\varphi)$이다. 또한 모든 $x \in X$에 대하여 $x \leq z$이고 $x \in Im(\varphi) = Fix(\varphi)$이므로 $x = \varphi(x) \leq \varphi(z)$이다. 즉 $\varphi(z)$는 $Im(\varphi)$안에 있는 X의 상계이다. u를 $Im(\varphi)$안에 있는 X의 상계라 하면 u는 또한 L안에 있는 X의 상계이므로 $z \leq u$이고 $\varphi(z) \leq \varphi(u) = u$이다. 따라서 $\varphi(z)$는 $Im(\varphi)$안에 있는 X의 최소상계로 $\vee_{Im(\varphi)} X = \varphi(z) = \varphi(\vee_L X)$이다.

완비격자 L, K에 대하여 함수 $f : L \to K$, $g : K \to L$가 감소함수이고

$$y \leq f(x) \Leftrightarrow x \leq g(y)$$

를 만족할 때 (f, g)를 L과 K의 쌍대 갈루아 커넥션(dual Galois connection)이라 한다.

일반적인 갈루아 커넥션은 조건 $y \leq f(x) \Leftrightarrow g(y) \leq x$를 만족하는 증가함수의 순서쌍 (f, g)로 정의되어 쌍대 갈루아 커넥션과 크기관계가 역인 부분순서관계를 갖게 된다. 갈루아 커넥션의 정의와 성질은 Davey B. A. et al.과 Gierz G. et al.에서 찾아볼 수 있다

위에서 정의한 갈루아 커넥션은 2절에서 다룬 성질 (P7)와 같은 성질로 함수 $f : 2^X \to 2^Y$를 $f(A) = A^*$로, 함수 $g : 2^Y \to 2^X$를

$g(B) = B^+$로 정의하면 성질 (P7)로 부터

$$B \subseteq f(A) \Leftrightarrow A \subseteq g(B)$$

가 성립한다. 이와 같이 완비격자에 쌍대 갈루아 커넥션을 적용하면 2절에서 다룬 컨텍스트의 성질과 유사한 성질들을 얻을 수 있다.

함수의 순서쌍 (f, g)가 완비격자 L과 K에서의 쌍대 갈루아 커넥션이면 f와 g는 감소함수이므로 임의의 $x_1, x_2 \in L$, $y_1, y_2 \in K$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한다.

(1) $x_1 \leq x_2$이면 $f(x_2) \leq f(x_1)$,

(2) $y_1 \leq y_2$이면 $g(y_2) \leq g(x_1)$.

위의 성질 (1), (2)는 각각 성질 (P2), (P3)와 같다.

정리 3.2. 함수 $f : L \to K$, $g : K \to L$에 대하여 (f, g)가 완비격자 L과 K의 쌍대 갈루아 커넥션이면 임의의 $x \in L$, $y \in K$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한다.

(1) $x \leq gf(x)$, $y \leq fg(y)$,

(2) $(fgf)(x) = f(x)$, $(gfg)(y) = g(y)$.

증명. (1) 임의의 $x \in L$에 대하여 $f(x) \leq f(x)$이므로 쌍대 갈루아 커넥션의 정의에 의해 $x \leq g(f(x))$이다. 같은 방법으로 $y \leq f(g(y))$임을 보일 수 있다.

(2) 이 정리의 (1)에 의해 임의의 $x \in L$에 대하여 $x \leq g(f(x))$이고 f가 감소함수이므로 $f(g(f(x))) \leq f(x)$이다. 또한 이 정리의 (1)에 의해 $f(x) \leq (fg)(f(x)) = f(g(f(x)))$이다. 따라서 $(fgf)(x) = f(x)$이다. 같은 방법으로 $(gfg)(y) = g(y)$임을 증명할 수 있다. □

정리 3.3. 함수 $f : L \to K$, $g : K \to L$에 대하여 (f, g)가 완비격자 L과 K의 쌍대 갈루아 커넥션이면 임의의 $S \subseteq L$과 $T \subseteq K$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한다.

(1) $f(\vee S) = \wedge\{f(s) \mid s \in S\}$,

(2) $g(\vee T) = \wedge\{g(t) \mid t \in T\}$.

증명. (1) 임의의 $s \in S$에 대하여 $s \leq \vee S$이고, f가 감소함수이므로 $f(\vee S) \leq f(s)$이다. 따라서 $f(\vee S)$는 집합 $\{f(s) \mid s \in S\}$의 하계이다. $v \in K$을 집합 $\{f(s) \mid s \in S\}$의 한 하계라 하면, 모든 $s \in S$에 대하여 $v \leq f(s)$이다. 쌍대 갈루아 커넥션의 정의에 의해 $s \leq g(v)$가 성립하므로 $\vee S \leq g(v)$이고 $v \leq f(\vee S)$이다. 따라서 $f(\vee S)$는 집합 $\{f(s) \mid s \in S\}$의 최대하계이다.

(2) (1)과 같은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다.

정리 3.2와 3.3의 성질들은 2절의 성질 (P4-P6)과 같은 성질이다. 이와 같이 컨텍스트에서 정의한 함수 *와 +는 집합의 개념과 관계없이 쌍대 갈루아 커넥션을 갖는 완비격자의 성질만을 이용하여 해석될 수 있다.

함수 $f : L \to K$와 $g : K \to L$에 대하여 (f, g)가 완비격자 L과 K의 쌍대 갈루아 커넥션이면 그들의 합성함수

$$gf : L \to L,\ fg : K \to K$$

는 각각 완비격자 L과 K에서 정의된 함수이고 이 함수들에 대해 다음의 정리가 성립한다.

정리 3.4. 함수 $f : L \to K$, $g : K \to L$에 대하여 (f, g)가 완비격자 L과 K의 쌍대 갈루아 커넥션이면 다음이 성립한다.

(1) 함수 $gf : L \to L$과 $fg : K \to K$는 클로저 작용소이다.

(2) $Im(gf) = Fix(gf)$. $Im(fg) = Fix(fg)$

(3) $Im(gf)$와 $Im(fg)$는 쌍대 동형이다.

증명. (1) 임의의 $x_1, x_2 \in L$에 대하여 $x_1 \leq x_2$이면 $f(x_2) \leq f(x_1)$이고, $g(f(x_1)) \leq g(f(x_2))$로 gf는 증가함수이다. 임의의 $x \in L$에 대하여 $f(x) \leq f(x)$이므로 $x \leq g(f(x))$이다. 또한 정리 3.1(3)에 의해

$(gf)((gf)(x)) = (gfg)(f(x)) = g(f(x))$이므로 $(gf)(gf) = gf$이다. 따라서 gf는 클로저 작용소이다. 함수 fg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다.

(2) $z \in Fix(gf)$이면 $z = (gf)(z) \in Im(gf)$이므로 $Fix(gf) \subseteq Im(gf)$이다. 또한 $z \in Im(gf)$이면 $x \in L$이 존재하여 $z = (gf)(x)$이다. $(gf)(z) = (gf)((gf)(x)) = (gf)(x) = z$이므로 $z \in Fix(gf)$이고, $Im(gf) \subseteq Fix(gf)$이다. 따라서 $Im(gf) = Fix(gf)$이다. 같은 방법으로 $Im(fg) = Fix(fg)$임을 보일 수 있다.

(3) 함수 $f^* : Im(gf) \to Im(fg)$와 $g^* : Im(fg) \to Im(gf)$를 임의의 $x \in L$, $y \in K$에 대하여

$$f^*(gf(x)) = f(gf(x)), \quad g^*(fg(y)) = g(fg(y))$$

로 정의하면 f^*와 g^*는 올바르게 정의된 함수이다. 또한 f와 g가 감소함수이므로 f^*와 g^*도 감소함수이고,

$$(g^*f^*)(gf(x)) = g(f((gf)(x))) = g((fgf)(x)) = (gf)(x),$$
$$(f^*g^*)(fg(y)) = f(g((fg)(y))) = f((gfg)(y)) = (fg)(y)$$

이므로 $g^*f^* = 1_{Im(gf)}$, $f^*g^* = 1_{Im(fg)}$이다. 따라서 f^*와 g^*는 전단사함수이고, $Im(gf)$와 $Im(fg)$는 쌍대 동형이다.

완비격자 L, K와 함수 $f : L \to K$, $g : K \to L$에 대하여 (f, g)가 쌍대 갈루아 커넥션이면, 함수 f와 g를 이용하여 컨텍스트의 형식개념과 유사한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즉 쌍대 갈루아 커넥션 (f, g)을 갖는 완비격자 L과 K에서

$$x = g(y), \quad y = f(x)$$

를 만족하는 $(x, y) \in L \times K$를 개념(concept)이라 정의하면, $L \times K$의 모든 개념들의 집합 C는 다음과 같다.

$$C = \{(x, y) \mid x = g(y),\ y = f(x)\}$$

정리 3.5. 함수 $f : L \to K$, $g : K \to L$에 대하여 (f, g)가 완비격자 L과 K의 쌍대 갈루아 커넥션이면 $L \times K$의 모든 개념들의 집합 C는 다음과 같다.

$$C = \{(x, f(x)) \mid x \in Fix(gf)\} = \{(g(y), y) \mid y \in Fix(fg)\}$$

증명. $(x,y) \in C$라 하면 $y = f(x)$, $x = g(y) = g(f(x))$이다. 따라서 $(x, y) = (x, f(x))$이고 $x \in Fix(gf)$이다. 역으로 $x \in Fix(gf)$에 대하여 $y = f(x)$라 하면 $x = (gf)(x) = g(f(x)) = g(y)$이고 $y = f(x)$이므로 $(x, f(x)) = (x, y) \in C$이다. $C = \{(g(y), y) \mid y \in Fix(fg)\}$도 같은 방법으로 보일 수 있다.

완비격자 L과 K의 곱집합 $L \times K$에서 부분순서관계 $\leq$를

$$(x_1, y_1) \leq (x_2, y_2) \Leftrightarrow x_1 \leq x_2 \text{ 그리고 } y_1 \geq y_2$$

로 정의하면 $(L \times K, \leq)$는 부분순서집합이다. 부분순서집합 $L \times K$내의 개념들의 집합 C는 정리 3.5에 의해

$$C = \{(x, f(x)) \mid x \in Fix(gf)\} = \{(g(y), y) \mid y \in Fix(fg)\}$$

이므로 $C \subseteq Fix(gf) \times Fix(fg)$이다. 또한 정리 3.4와 3.1에 의해 $Fix(gf)$, $Fix(fg)$는 완비격자이고, 임의의 $X \subseteq Fix(gf) = Im(gf)$와 $Y \subseteq Fix(fg) = Im(fg)$에 대하여

$$\vee_{Im(gf)} X = (gf)(\vee_L X), \ \wedge_{Im(gf)} X = \wedge_L X$$
$$\vee_{Im(fg)} Y = (fg)(\vee_K Y), \ \wedge_{Im(fg)} Y = \wedge_K Y$$

이다. 따라서 개념들의 집합 C도 완비격자이고 $\{(x_i, y_i) \mid i \in I\} \subseteq C$에 대하여 최소상계와 최대하계는

$$\begin{aligned}
\vee\{(x_i, y_i) \mid i \in I\} &= (\vee_{Im(gf)}\{x_i \mid i \in I\}, \ \wedge_{Im(fg)}\{y_i \mid i \in I\}) \\
&= ((gf)(\vee_L\{x_i \mid i \in I\}), \ \wedge_K\{y_i \mid i \in I\}) \\
\wedge\{(x_i, y_i) \mid i \in I\} &= (\wedge_{Im(gf)}\{x_i \mid i \in I\}, \ \vee_{Im(fg)}\{y_i \mid i \in I\}) \\
&= ((\wedge_L\{x_i \mid i \in I\}), \ (fg)(\vee_K\{y_i \mid i \in I\}))
\end{aligned}$$

이다. 이 성질은 2절의 성질 (P8)과 (P9)를 일반화한 성질이다.

4. 맺음말

본 연구에서는 집합에 관련된 형식개념의 이론을 소개하고 그들을 완비격자로 일반화하여 논리적 사고 체계를 단순화하려 하였다. 2절에서 컨텍스트와 형식개념의 정의를 알아보고 그들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성질들을 소개하였다. 3절에서 컨텍스트와 개념을 일반화한 쌍대 갈루아 커넥션을 갖는 완비격자를 소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컨텍스트와 형식개념의 유사한 성질들을 조사하였다. 또한 이들의 수학적 구조를 비교하여 형식 개념의 성질과 특성들을 조사하는데 쌍대 갈루아 커넥션을 갖는 완비격자라는 일반화된 논리적 개념을 이용할 수 있음을 알아보았다.

▮참고문헌

Chunduri R. K., Cherukuri A. K., *Scalable formal concept analysis algorithms for large datasets using Spark. J. Ambient Intell. Human. Comput., 2018, pp. 1-21.*

Davey B. A., Priestley H. A., *Introduction to Lattices and Order, 2nd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Gierz G., Hofmann K. H, Keimel K., Lawson J. D., Misolve M., Scott D. S., *"A Compendium of Continuous Lattices", Springer-Verlag,1980.*

Jabin S., *"Machine Learning methods and applications using Formal Concept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New Technologies in Science and Engineering, Vol. 2, No. 3 (2015), pp. 152-163.*

Ko J. M., Kim Y. C., *"Antitone Galois Connections and Formal Concepts", International Journal of Fuzzy Logic and Intelligent System, Vol. 10, No. 2 (2010), pp. 107-112.*

Kuznetsov S. O., "*Machine Learning on the Basis of Formal Concept Analysis", Autom. Remote Control, Vol. 62, No. 10 (2001), pp. 1543-1564.*

Kuznetsov S. O., Obiedkov S. A., "*Comparing performance of algorithms for generating concept lattices, Journal of Experimental & Theoretical Artificial Intelligence", Vol 14, No. 2-3 (2002), pp. 189-216.*

Lai H., Zhang D., *"Concept lattices of fuzzy contexts: Formal concept analysis vs. rough set theory", International Journal of Approximate Reasoning, Vol 50 (2009), pp. 695 - 707.*

▌국문초록

형식개념은 어떤 대상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위해 이용되는 외연과 내포의 개념을 분석하기 위한 논리적 도구이다. 이는 최근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공학, 정보이론 등 다양한 컴퓨터 응용과학의 연구 방법에 응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컨텍스트 및 형식개념의 정의와 이론 및 이를 일반화한 수학적 구조로 쌍대 갈루아 커넥션을 갖는 완비격자를 소개한다. 또한 쌍대 갈루아 커넥션을 갖는 완비 격자가 갖는 성질들을 조사하고, 컨텍스트 및 형식개념이 갖는 성질들과 비교하여 이들의 구조분석에 완비격자와 쌍대 갈루아 커넥션이 이용될 수 있음을 알아보았다.

주제어 ● 컨텍스트, 개념, 부분순서관계, 부분순서집합, 완비격자, 쌍대 갈루아 커넥션

Abstract

Introduction to Formal Concept using Complete Lattices

Yon, Yong-Ho

Formal concept is a logical tool to analyse the extent and the intent using for defining objects. Recently, formal concept is applied to the research methods of various computer science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software engineering, and information theory etc.

In this paper, we introduce the notion and some properties of context and formal concept, and complete lattices with dual Galois connection which is a mathematical structure to generalize context. Also we research the properties of the complete lattice with a dual Galois connection, and compare with properties of context and concept. So we research that the complete lattice and the dual Galois connection can be used to understand the structure of context and formal concept.

Keyword ● Context, Concept, Partial order, Partially ordered set, Complete lattices, Dual Galois connections

▌논문투고일 : 2019. 04. 17. ▌심사완료일 : 2019. 05. 09 ▌게재확정일 : 2019. 05. 14

논문투고 규정

2018년 3월 1일 제정

제1조(학술지 명칭)

1) 본 학술지는 〈지식과 교양〉이라 칭한다.
2) 본 학술지는 교양교육과 융복합, 지식의 대중화, 학문간 통섭 등에 관한 논문을 발간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목원대학교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의 학술지 〈지식과 교양〉의 투고·편집 및 발간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발간회수 및 시기)

1) 본 학술지는 연 2회 발행한다.
2) 본 학술지의 발행일은 5월 30일, 11월30일로 정하되, 편집위원회와 학술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발간회수를 조정할 수 있다.
3) 학술지의 논문 접수 마감일은 매년 1호 학술지는 4월 20일까지, 2호 학술지는 10월 20일까지로 한다.
4) 본 학술지에 게재가 결정된 논문은 투고일자(접수일자), 심사

(수정)일자, 게재확정일자를 논문 마지막에 명기한다.

제4조(투고자의 연구윤리규정 준수)

논문투고자는 〈지식과 교양〉의 연구윤리규정을 숙지,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에 의거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5조(게재불가논문)

본 학술지에 투고할 수 없는 원고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항에 속하는 논문이 투고되었을 경우 심사과정 이전에 투고를 제한할 수 있다.

1) 본 학술지의 논문주제 영역에 부합하지 않은 논문
2) 기존에 이미 게재 되었던 논문과 이와 유사한 논문
3) 외국저서, 논문, 저널의 단순한 번역 논문
4) 석·박사 학위 논문을 단순 축약한 논문

※ 석·박사 학위 논문의 전체 또는 일부를 보완, 발전시킨 논문의 경우 투고 가능하다. 단, 각주를 통해 그 사실을 반드시 사전에 적시해야 한다. 적시하지 않은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투고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5) 이전 학술지 논문심사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을 제목이나 내용의 수정을 가하지 않고 투고한 논문
6) 이전 호에서 '게재철회'를 요청한 논문은 제목이나 내용을 수정했다고 하더라도 〈지식과 교양〉에 재투고할 수 없다.
7) 부득이하게 게재확정 이후 이상이 확인된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투고자의 논문투고자격을 향후 5년간 박탈할 수 있다.

제6조(논문투고 방법)

투고자는 원고 마감일 이전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1) 이메일 접수는 kl@mokwon.ac.kr로 투고한다.
2) 온라인 논문투고는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홈페이지(http://liberalarts.mokwon.ac.kr)의 '논문투고 안내'에 따라, 투고 논문을 직접 업로드한다.
3) 모든 투고자는 〈지식과 교양〉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논문투고신청서'를 작성하여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4) 원고마감 일자를 경과한 논문은 해당 투고자의 동의하에 다음 호의 투고 대상으로 삼는다.

제7조(투고자 논문작성 양식)

논문 투고자는 다음의 논문작성 요령에 따라 논문을 작성해야 한다.

1) 논문은 〈지식과 교양〉 논문편집양식(제6조 6항 참조) 기준 10매~ 20매(국・영문 초록, 그림・각주 포함) 내외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논문의 총 매수는 〈지식과 교양〉 논문편집양식 기준 30매를 초과할 수 없다. 기준 매수를 초과할 경우 장당 1만원의 추가 게재료를 부과한다.
2) 원고 작성 시 사용할 소프트웨어는 '한글2007' 이상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논문은 한국어・영어・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다. 단, 영어 이외의 외국어를 사용해 작성한 원고는 한국어 번역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논문 투고자의 국적이 외국일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외국어의 전문가에게 한국어 번역본을 의뢰하여 작성한다. 이때 편집위원회는 소정의 번역료를 지불한다.

4) 원고는 논문제목, 성명과 소속 및 직책, 목차, 본문, 참고문헌, 국문초록 및 주제어, 영문초록, 영문제목, 영문성명, 영문 키워드, 부록(외국어 논문인 경우 국문요약문 등)의 순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5)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주저자(제1저자)와 부저자(교신저자, 참여저자 등)를 구분하여 주저자가 첫 번째로, 부저자는 두 번째 이후로 표기한다.
6) 논문의 세부 편집양식은 아래와 같다.

(1) 작성 용지 설정
① 용지 종류 : A4용지(210×297mm)
② 용지 여백 : 위쪽 46, 아래 42.5 왼쪽, 오른쪽 각 50, 머리말, 꼬리말 각 10

(2) 글자 모양
① 글꼴 : 나눔명조(논문제목, 소제목, 필자이름 및 소속은 진한 글자로)
② 크기 : 논문제목 18, 성명 9.5, 소속 9, 목차 9, 본문 10.5, 각주번호 9, 각주본문 9, 참고문헌 9.5, 국문초록 10.5, 주제어 9.5, 영문(외국어)초록 10.5
③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각 항목별 작성 방식을 참조한다.

(3) 문단모양
① 본문 : 줄간격 160, 들여쓰기 2
② 각주 : 줄간격 130, 들여쓰기 2
③ 참고문헌 : 줄간격 130, 왼쪽여백 6, 내어쓰기 6
④ 국문 및 영문초록 : 줄간격 130, 왼쪽여백 2, 오른쪽여백 2

(4) 각 항목별 작성 방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논문제목 : 글자크기 18, 진하게, 가운데 정렬

② 성명 : 글자크기 9.5, 진하게, 가운데 정렬(논문제목과 이름 사이 한줄 띔)

③ 소속 : 글자크기 9, 진하게, 가운데 정렬, 괄호 안에 소속을 명기

④ 소제목 : 글자크기 10.5, 정렬방식 왼쪽, 진하게

⑤ 본문 : 글자크기 10.5, 정렬방식 양쪽정렬

(5) 원고의 번호 붙임은 아래와 같이 한다.

- 1단계 : Ⅰ. Ⅱ. Ⅲ.....(2줄 띄고, 14p, 중고딕, 가운데, 진하게)
- 2단계 : 1. 2. 3.....(1줄 띄고, 1칸에서 시작, 11p, 중고딕, 진하게)
- 3단계 : 1) 2) 3).....(4칸에서 시작, 10p, 신명조, 진하게)
- 4단계 : (1) (2) (3).....(4칸에서 시작, 10p, 신명조)
- 5단계 : ① ② ③.....(4칸에서 시작, 10p, 신명조)

(6) 논문에서 사용되는 기호는 아래와 같이 한다.

① 영화/영상/웹툰 작품의 경우는 〈 〉를, 문학작품인 경우는 『 』를, 음악관련 작품인 경우는 ≪ ≫를 사용한다.

② 강조 및 간접인용의 경우에는 홑따옴표 ' '를, 직접인용의 경우에는 겹따옴표 " "를 사용한다.

(7) 논문의 각주 작성 요령

① 각주는 본문의 하단에 저자명, 저서명, 출판사명, 출판사 소재지(외국어일 경우), 출판연도, 인용쪽수 등의 순서로 표기한

다.

② 각주는 각 언어권 학술문헌의 일반적인 예를 따른다.

-한국어 저서인 경우 다음의 순서로 작성한다.

저자, 『저서명』,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쪽수

예) 홍길동, 『교양교육의 역사』, 한바퀴, 2005, 78쪽.

-한국어 논문(학술지 및 학위)인 경우 다음의 순서로 작성한다.

저자, 「논문명」, 『학술지』권/호,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쪽수.

예) 홍길동, 「교육연구의 궤적」, 『교양연구』 24집, 2009, 21쪽.

-번역서인 경우 다음의 순서로 작성한다.

저자, 번역자, 『저서명』,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쪽수.

저자, 번역자, 「논문명」, 『저서명/학술지』권/호,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쪽수.

예) 잭 우드 저, 홍길동 역, 『교양교육』, 한바퀴, 2005, 81쪽.

-영문(외국어)인 경우 저서는 이탤릭체로, 논문은 " "로 표기한다.

Jack Wood, Social effectiveness: on some Asian College's education in the 1980s, trans. Celia Britton. Annwyl Williams, Ben Brewster, and Alfred Guzzetti (London: HumanArts, 1982), p.23.

Kimberly Woods, "Social effectiveness: on some Asian College's education in the 1980s", Education, vol. 30, no. 3 (1989), pp.51-65.

Michael Woods, Social effectiveness: on some Asian College's education in the 1980s, Liberal Arts and Society (Bloomington and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1995), pp.106-121.

-신문기사의 경우 작성자, "기사명", ≪신문/잡지명≫, 기사날짜 순으로 작성한다.

예) 홍길동, "2000년대 대학교육 현황", ≪교양일보≫, 2011.05.21.

- 인터넷 사이트를 참조할 경우 사이트 명, 사이트 주소, 자료 확인 날짜순으로 표기한다.

예) 〈지식과 교양〉, www.mokwon.or.kr, 2011.05.21.

③ 중복된 참고문헌을 인용할 경우 다음 표기의 예를 따른다.

-한국어인 경우 바로 위의 주(註)에서 인용한 참고문헌을 다시 인용할 때는 위의 책, 위의 논문 이라 표기한다.

예) 위의 책(위의 논문), 21쪽. 또한 바로 앞이 아닌 그 앞의 주(註)에서 인용된 참고문헌을 다시 인용할 경우는 저자명을 먼저 명기한 후 앞의 책, 앞의 논문 이라 표기한다.

예) 홍길동, 앞의 책(앞의 논문), 21쪽.

- 영문(외국어)인 경우 바로 위의 주(註)에서 인용한 참고문헌을 다시 인용할 때는 Ibid., 로 표기한다.

예) Ibid., pp.20-21. 또한 바로 앞이 아닌 그 앞의 주(註)에서 인용된 참고문헌을 다시 인용할 경우는 저자명을 먼저 명기한 후 op. cit.,로 표기한다. 예) Michael, op. cit., p.21.

④ 참고문헌 작성요령: 글자크기 9.5 (단, 제목은 10, 진하게)

-참고문헌은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 정보를 수록하되,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되지 않은 문헌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또한 본문과 각주에서 인용된 쪽수 및 페이지 수는 명기하지 않고 생략한다.

-참고문헌은 국내문헌을 먼저 표기하고 영어, 외국어 순으로 작성하되, 단행본, 논문, 신문기사, 인터넷 사이트로 나누어 표기한다. 국내문헌은 저자 이름에 따라 가나다 순서로, 영어 및 외국어 문헌은 저자 이름에 따라 알파벳 순서로 배열한다.

-영문(외국어) 서적의 경우는 이탤릭체로 하고, 국문 서적은『 』

를 사용하고 학술지의 경우는 권, 쪽 수 순으로 작성한다.

-참고문헌 작성 시 다음의 예를 참고한다.

홍길동, 『교양교육의 역사』, 교양과 교육사, 2005.

Bergstrom, Johns. ed. Human Arts: Culture and Society, Arts Histories. Berkel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9.

Donald, Stephen. Questions of Liberal Arts.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9.

Lacan, Jacques. "The mirror stage as formative of the function of the 'I'." In Ecrits: a selection. Trans. Alan Sheridan. New York : Norton, 1977.

Silverman, Kaja. The Subject of Semiotic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3.

Walker, Janet. Couching resistance : women, art, and psychoanalytic psychiatry.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3.

⑤ 국문·영문(외국어)초록 및 국문요약문 작성요령: 글자크기 10.5(단, 제목은 진하게)

-국문초록은 논문의 전체요지를 최소 1,000자 이상, A4 1매 내외의 분량으로 작성하고 국문으로 된 5개 이상의 주제어를 국문초록 다음에 반드시 첨부한다. 영문(외국어) 논문의 경우에도 국문 논문과 동일하게 국문 초록 및 국문 주제어를 명기한다.

-영문(외국어)초록은 논문의 마지막에 본문과 다른 영문(외국어)으로 최소 1,000자 이상, A4 1매 내외의 분량으로 작성하고 영문(외국어)로 된 5개 이상의 주제어(Keyword)를 반드시 첨부한다.

-영어 이외의 외국어를 사용해 작성한 원고는 본문의 언어 종류에 관계없이 영문 초록을 반드시 첨부한다. 단, 이때의 영문 초록은 국문 논문의 영문 초록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또한 최소 1,000자 이상, A4 2매 내외의 분량의 한국어 번역본을 함께 제출한다.

제8조(투고자 논문심사)

투고된 논문은 본 연구소의 논문심사 규정에 따라 심사과정을 거친다. 단, 편집위원회가 기획, 의뢰한 논문의 경우 게재의 우선권을 부여하되, 일반논문과 동일한 심사과정을 거친다.

제9조(논문 수정)

1)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따라 투고자에게 논문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정 요구 후 10일이 지나도록 저자로부터 회신이 없으면 해당호의 논문게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2) 논문 심사를 통과한 논문은 편집규정에 근거하여 그 편집형식을 편집위원회에서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
3) 논문제목 및 내용 수정은 1차 수정본 제출 이후로는 변경할 수 없다.

제10조(논문 책임) 게재 논문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해당 논문의 저자가 진다.

제11조(심사료와 게재료)

투고자는 논문투고와 동시에 본인의 논문에 대한 심사비를 납부한다.

1)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비는 6만원으로 한다. 논문 심사료는 일

반논문과 연구지원논문 모두 동일하게 부과된다.

2) 심사 후 원고 게재가 확정된 경우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구체적인 게재료는 아래와 같다.

- 일반 논문: 전임 10만원 / 비전임 5만원
- 연구비 수혜논문: 전임 30만원 / 비전임 20만원

※ 논문편집양식(제7조 6항 참조) 기준보다 분량이 초과될 경우 소정의 추가 게재료를 부과할 수 있다(제7조 1항 참조).

※ 투고자가 해당 논문에 대해 '게재철회'를 요청한 경우라도 심사 후 원고 '게재가 확정'된 경우 투고자는 '게재철회'와 관계없이 해당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12조(저작권)

1) 게재된 모든 논문은 〈지식과 교양〉홈페이지(kl.mokwon.ac.kr)를 통한 원문 공개 등 기타 학술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2) 투고자는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을 다른 공동연구자와 함께 〈지식과 교양〉에 위임할 것을 '논문투고신청서'를 통해 사전에 서약하여야 한다. 단 12조 1)항을 제외한 목적으로 논문을 사용할 경우 편집위원회는 저자의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 한다.

제13조(기타)

본 세부 규정에 미비된 사항은 사안별로 본 편집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한다.

제13조(개정)

본 규정은 〈지식과 교양〉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부 칙

제14조 본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논문심사 규정

2018년 3월 1일 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지식과 교양〉에 투고할 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집위원회 구성 및 연구윤리규정 심사)

1) 본 〈지식과 교양〉의 논문 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주관한다.
2)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편집위원 10인 내외로 구성됨을 원칙으로 한다.
3)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을 구성하기 전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투고 논문의 영역과 게재의 적합성, 연구윤리규정의 준수 여부, 논문투고규정의 준수 여부 등을 검토, 해당 투고 논문의 심사여부를 결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3조(심사 및 판정)

1) 편집위원회를 통해 심사대상으로 확정된 투고 논문은 편집위

원회와 편집위원이 위촉한 2인의 전문 심사위원의 심사를 받는다.

2)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의 성명 및 소속을 삭제한 심사용 논문과 심사서 양식을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심사위원에게 발송한다.

3) 투고자와 동일한 소속기관인 경우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4) 심사위원은 심사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초심인 경우 10일 이내, 재심인 경우 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한다.

5)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을 심사서에 제시된 논문 평가항목을 참조하여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의 4등급으로 판정한다.

6) 심사위원의 판정은 80점 이상 '게재', 70점 이상 '수정 후 게재', 60점 이상 '수정 후 재심', 59점 이하 '게재 불가'로 한다.

7)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의 판정을 내렸을 경우, 심사위원은 심사서에 평가 항목에 따른 구체적인 수정요구사항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8) 심사위원 2인의 판정을 종합한 결과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당 호의 〈지식과 교양〉에 게재한다.

9) 기타 판정에 관한 결정은 편집위원회의 의견에 따른다.

제4조(이의 심사)

1) 논문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논문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는 '게재불가'로 판정이 난 논문 투고자에 한해서만 할 수 있다.

3) 이의 제기는 결과 통지 후 1달 이내에 접수되어야 한다.
4) 접수된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편집위원 전체가 검토하도록 하며 편집위원회에서 이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해당 논문의 저자에게 통지한다.
5) 편집위원회가 이의를 인정하게 되었을 경우 변경된 평가 결과를 논문 투고자에게 1주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제반 절차를 바로 진행하도록 한다.

제5조(기타)
1)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지식과 교양〉이 소유한다.
2) 논문의 심사 및 편집・출판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기타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논의를 거친 후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결정한다.
3)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6조(개정)
본 규정은 〈지식과 교양〉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부 칙

제7조 본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연구윤리 규정

2018년 03월 01일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지식과 교양〉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218호)을 준수한다. 본 규정은 목원대학교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에서 발행하는 〈지식과 교양〉에 수록되는 학술발표와 논문 등 저작물의 투고, 심사윤리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본 규정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우선한다.

제2조(적용대상 및 서약)

1) 〈지식과 교양〉의 편집위원 및 학술운영위원, 논문 심사위원, 투고자는 본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하여야 한다.
2) 〈지식과 교양〉의 편집위원회는 원고모집을 공고할 때 본 규정을 함께 공고하여야하고, 심사자는 심사를 승낙할 때 본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하여야 한다.

제3조(저자의 투고윤리기준)

1) 독창성을 갖는 저작물이어야 하며, 다른 정기학술지나 단행본에 이미 발표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2) 타인의 저작물을 표절한 내용이 담겨져서는 아니 된다. 타인의 저작물은 문서를 포함한 이미지 자료도 포함된다. 표절의 기준은 국가기관 혹은 이에 준하는 기관이 정한 표절의 기준을 따른다.
3) 타인의 저작물의 일부를 재인용하는 경우 반드시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이미지 자료 인용 역시 문서의 재인용과 동일한 방법으로 그 출처를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
4) 자신이 이미 발표한 저작물을 부분적으로 활용하며 새로운 학술적 논점을 추가시켜 분석하고 있는 저작물은 〈지식과 교양〉에 수록될 수 있다. 단, 이때 그 작성경과를 반드시 저작물에 적시하여야 한다.
5) 단행본이나 정기학술지에 출간되지 않은 자신의 석, 박사 학위 논문의 일부를 활용하여 작성된 저작물에 대하여도 제4항과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6) 연구자료나 연구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한 저작물이어서는 아니 된다.
7) 타인의 외국어 간행물의 번역을 투고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서면동의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8) 수록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 저작물을 〈지식과 교양〉을 포함한 여러 정기학술지에 중복 투고하는 경우, 최초의 수록 통지를 받아 이를 수락한 즉시 필자는 중복 게재를 방지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

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 저자의 역할을 표시하여야 한다. 연구와 논문작성에 있어서 가장 많은 기여를 한 저자를 "주저자"로, 논문의 투고, 심사, 출간 과정에서 〈지식과 교양〉 편집위원회, 혹은 학술운영위원회 등과 연락을 담당한 저자를 "교신저자"로 표시한다.

제4조(편집위원의 편집윤리기준)

1) 편집위원은 투고된 저작물에 대하여 지체 없이 심사에 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하며, 투고된 저작물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진다.

2) 편집위원은 투고된 저작물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저작물의 질적 수준과 투고규정 및 심사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3) 편집위원은 투고된 저작물의 심사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능력을 지닌 심사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4) 편집위원은 투고된 저작물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저작물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되고, 저자의 인격과 학문의 자유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자의 심사윤리기준)

1) 심사자는 편집위원회가 심사 의뢰하는 저작물을 심사기준이 정한 바에 따라 성실하게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신이 해당 저작물의 내용을 평가하는 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실을 편집

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2) 심사자는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관계를 떠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저작물을 심사하여야 한다. 심사자는 저자의 인격과 학문의 자유를 존중해야 하고,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또는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게재불가 또는 수정 후 게재로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3) 심사자가 투고된 저작물이 제3조의 각항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편집위원회 및 제6조에 의한 윤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4) 심사자는 심사를 의뢰받은 사실, 심사대상 저작물의 모든 사항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저작물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 2 장 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6조(윤리위원회의 설치, 구성)

1) 본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식과 교양〉의 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2) 윤리위원회는 목원대학교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편집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여 5인 내외의 인사로 구성한다.

제7조(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

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1)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3 장 위반행위의 조사

제9조(위반행위의 조사 개시)

1)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본 규정 위반행위(이하 '위반행위'라고 한다)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편집위원장과 협의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1) 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2)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1)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 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제보자의 신원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2) 위반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제보, 조사, 심의, 의결 등 조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제척, 기피, 회피)

1) 당해 조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조사 및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신청이 인용된 경우에는 당해 안건의 조사 및 심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3)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이의제기 및 진술기회의 보장)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반론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4조(판정)

1) 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반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한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피조사 사실과 관련한 피조사자의 행위가 위반행위임을 확인하는 판정을 한다.

제 4 장 조사 이후의 조치

제15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1) 윤리위원회가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재를 부과하여야 한다.
 (1) 본 규정에 위반된 저작물이 〈지식과 교양〉에 게재된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의 게재의 소급적 무효화 및 논문목록에서 삭제
 (2) 향후 10년 이상 〈지식과 교양〉 투고 금지
 (3) 본 규정의 위반 사실을 〈지식과 교양〉 및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홈페이지에 공지
 (4) 본 규정의 위반 사실을 한국연구재단에 통보
 (5) 기타 윤리의 준수를 위해서 필요한 사안으로서 윤리위원회가 정하는 제재사항
2) 전항 제3호의 공지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의 수록 권·호수, 취소일자, 취소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6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보자 및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이를 통지한다.

제17조(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16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명예회복 등 후속조치)

조사결과 위반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 혹은 혐의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9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1)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판정이 끝난 이후 결과는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지식과 교양〉 학술운영위원회와 편집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다만, 제보자, 조사위원,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위원회의 결의로 그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 5 장 보 칙

제20조(개정)

본 규정은 〈지식과 교양〉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부 칙

제21조 본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편집위원회 규정

2018.3.1. 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학술지 〈지식과 교양〉 편집위원회 업무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제2조(업무)

편집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학회지 투고논문 심사와 편집
2) 학술도서 기획과 편집
3) 각종 학술자료 수집 및 정리
4) 기타 학회의 편집 관련 업무

제3조(구성 및 임기)

편집위원회 구성 및 임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센터장이 위촉하며,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센터장이 위촉한다.
2) 편집위원회는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3) 편집위원은 각 분야에서 대내외적 지명도가 높고 학술적 성과가 우수한 이로 하며,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연구자들이

고루 선임될 수 있도록 한다.

4) 심사 및 편집 실무를 위해 약간 명의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5)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회의 개최)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투고 마감 이후 심사위원 선정과 위촉을 위한 편집회의를 개최하며, 심사가 일단락된 후 심사결과 판정과 학회지 편집을 위한 편집회의를 개최한다. 편집회의는 필요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5조(결정 사안)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편집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1) 학회지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 위촉

2) 투고 논문 심사결과의 검토와 판정

◇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장 : 현승훈
◇ 편집위원장 : 서정일
◇ 편집 위원 :
구진희(목원대), 김요한(영남대), 김혜정(경인교대), 문성호(중앙대),
서유석(경상대), 송석랑(목원대), 유경아(목원대), 정옥희(목원대),
최혜진(목원대), 홍태한(전북대)

지식과 교양 *Knowledge & Liberal Arts*

2019년 5월 30일 / 30 May 2019
통권 제3호 / Vol.3

발행인 현승훈
발행처 목원대학교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발행일 2019년 5월 30일

(우편번호 35349)
대전시 서구 도안북로 88 목원대학교 캠퍼스타운 1층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042-829-8198
kl@mokwon.ac.kr
http://kl.mokwon.ac.kr

인쇄처 씨앤피
042-824-0701